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5. 12. (수요일), 14:00 ~ 17: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운, 김명선, 김우철, 김충식, 서동철, 윤주,
이승용, 이승호, 최태선, 홍보식(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공 개)
2	공주 석장리 유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 개)
3	부여 가림성 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공 개)
4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탐방지원센터 신축	(공 개)
5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도로 개선	(공 개)
6	수원 화성 내 열린관광지 조성	(공 개)
7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8	화순 운주사지 주변 건축물 양성화 및 태양광 시설물 설치	(공 개)
9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외 도로 정비	(공 개)

【검토사항】

10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11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 개)
12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 개)
13	용인 보정동 고분군 편의시설 공사 계획(안) 검토	(공 개)
14	공주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 검토	(공 개)
15	공주 공산성 내(은개골) 화장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기본 계획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6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관계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	(공 개)
17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1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1-05-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III권역에 속하는 1필지 109m²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 제3차 회의(2021. 3. 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 고 일 : 2021. 03. 23.(문화재청 공고 제2021-127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449필지 401,384.4m²
 - 해제 : 1필지 109m² (풍납동 227-18)
 - 해제 후 면적 : 1,448필지 401,275.4m²
- (4) 해제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III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27-18번지/'21.02.03.)
 - 풍납동 토성 안의 해당 지번에 대한 사적 지정의 해제(또는 철회)는 문화재 보호법 제31조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15.1./문화재청)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바,

- 현재 해당 지번(풍납동 227-18)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15.1./문화재청)에 따른 3권역 사적 적정성 여부 검토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해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18	대	109	109		

2. 공주 석장리 유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동측의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등에 속하는 30필지 18,243m²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 제2차 회의(2021.2.17.)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예 고 일 : 2021. 3. 23.(문화재청 공고 제2021-125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 1990.10.31. 지정)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8 일원
- (3) 신청내용<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m²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m²
 - 추가 지정 면적 : 보호구역 30필지 18,243m²
 - 추가 지정 후 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m² / 보호구역 130필지
- (4) 신청사유
 - '19년 '공주 석장리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지표조사결과,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20년 5월에 유물 산포지를 중심으로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회 추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蹟)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정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12.22(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蹟)의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蹟)의 보호구역 추가지정으로 명칭 변경 없음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공주 석장리 유적은 「고도(古都) 공주」의 동측에 위치해 있고, 시가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으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 인접 대도시의 여가·휴양 배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장군산 남측 기슭의 표고 약 15~45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남측에 인접하여 금강이 통과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금강과 양호한 산림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음.
- 공주 석장리 유적 남측에는 금강이 흐르고, 북측에는 국도 제32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도로 너머에 석장리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공주 석장리 유적은 공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금강변에 위치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1964년에 국내 최초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선사시대 유적으로서의 상징성이 높은 장소이며, 찻개·굽개·주먹도끼·새기개 등의 다양한 석기류가 출토되었음.
- 발굴조사 과정에서 후기 구석기층의 집자리에서 숯이 발견되었는데, 연대측정을 한 결과, 약 2만5천년에서 3만년 전으로 확인되었고,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 또한, 꽃가루 조사를 통하여 일대에 소나무·전나무·목련·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구석기시대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진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0년 10월 31일에 사적 제334호로 지정되었음.
- 국내에서 처음(1964) 발굴된 선사유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연한을 선사시대로 크게 끌어올렸고, 다양한 층위를 지닌 공주 역사의 시발점이자, 우리나라 첫 구석기 발굴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 집터와 더불어, 찻개·굽개·주먹도끼·새기개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고, 꽃가루, 소나무·전나무·목련·백합 등 고대 식생환경의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및 역사적 변화과정의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음.

- 전면에 금강이 흐르고 있고, 양호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나타내고 있어 공주10경 중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경관적 가치 또한 높음.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보호구역 추가지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의 보호구역을 ①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②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19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 되었으며, 2020년 5월에 유물 산포지를 중심으로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금회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2020년 5월에 지정한 보호구역과 함께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일 뿐 아니라,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어 유적과 연관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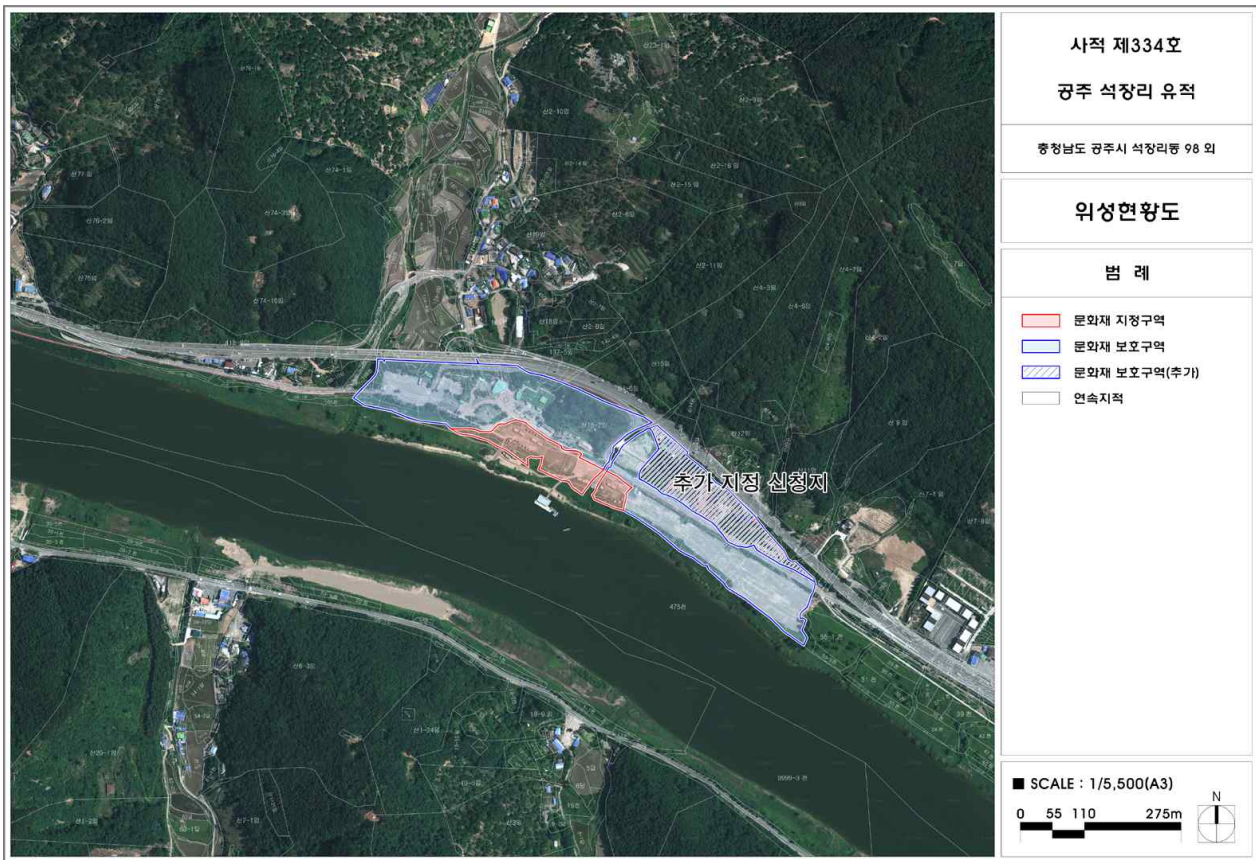
□ 보호구역 추가지정

- 기존 지정현황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
- 보호구역 추가지정 : 18,243㎡(30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성명	주소
1	석장리동	65	전	824	824		
2	"	67-1	대	544	544		
3	"	68	대	543	543		
4	"	76	전	106	106		
5	"	77-2	도	76	76		
6	"	77-3	전	405	405		
7	"	77-5	전	2,539	2,539		
8	"	78	대	704	704		
9	"	78-1	전	420	420		
10	"	78-2	도	106	106		
11	"	79	전	912	912		
12	"	81-2	답	246	246		
13	"	83-1	전	371	371		
14	"	84	전	585	585		
15	"	85	답	536	536		
16	"	86	전	777	777		
17	"	86-2	도	7	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8	"	86-3	잡	310	310		
19	"	86-6	잡	1,394	1,394		
20	"	87-1	잡	456	456		
21	"	87-2	도	43	43		
22	"	92-5	임	1,899	1,899		
23	"	92-11	임	206	206		
24	"	92-12	임	724	724		
25	"	92-13	임	620	620		
26	"	산12-2	임	1300	1300		
27	"	475	천	391,960	409		
28	"	480	도	731	731		
29	"	481	도	714	286		
30	"	483	도	426	164		
계	30필지			410,484	18,243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범위



○ 공주 석장리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2019)

- 공주 석장리 유적 지표조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호구역 확장의 필요성을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시 추가 토지매입 대상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

까지이고, 1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던 (재)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음.

- 조사범위는 금강의 북측 약 825,268㎡와 남측 약 164,068㎡ 등 금강을 제외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체(약 989,336㎡)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지역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2구역에서 약 6,567㎡의 유물산포지1, 약 2,500㎡의 유물산포지2 등 2곳의 조선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음.
- 특히, 4구역의 단구 원지형이 남아있는 곳에서 약 25,283㎡의 구석기시대, 조선시대 유물산포지3이 확인된 바, 유물산포지3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굴조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울러, 공주 석장리 유적과 주변 석기 원산지에 대한 연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자료: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9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유적구분		조사의견			비고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면적	사유	
1	유물산포지1	석장리동 192-1	6,567㎡	조선	유물산포지	-	○	시굴조사	6,567㎡	조선시대 유물수습	-
2	유물산포지2	석장리동 186-1	2,500㎡	조선	유물산포지	-	○	시굴조사	2,500㎡	조선시대 유물수습	-
3	유물산포지3	석장리동 86	25,283㎡	구석기 조선	유물산포지	○	○	시굴조사	25,283㎡	구석기/조선시대 유물수습	-



▲ 2구역 · 4구역 유물산포지(상) 및 발견 유물(하)

-자료: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9

○ 사진자료



▲ ① 남측 상공에서 촬영한 공주 석장리 유적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 원경



▲ ② 서측 상공에서 촬영한 공주 석장리 유적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 원경



▲ ③ 남측 상공에서 촬영한 공주 석장리 유적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 근경



▲ ④ 서측 상공에서 촬영한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와 주변 근경

○ 기존 시설물 현황

주차장



화장실



진입광장



매표소



상징조형물



진입게이트



야외 선사공원



파른 손보기 기념관



석장리박물관



체험학습관



구석기테마동산



밭굴지(1지구)



밭굴지(2지구)



막집(복원)



세계의 막집 전시장



임시주차장



○ 보호구역 추가 신청지



▲ ⑤ 유적 동측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 내 건축물(주유소)과 주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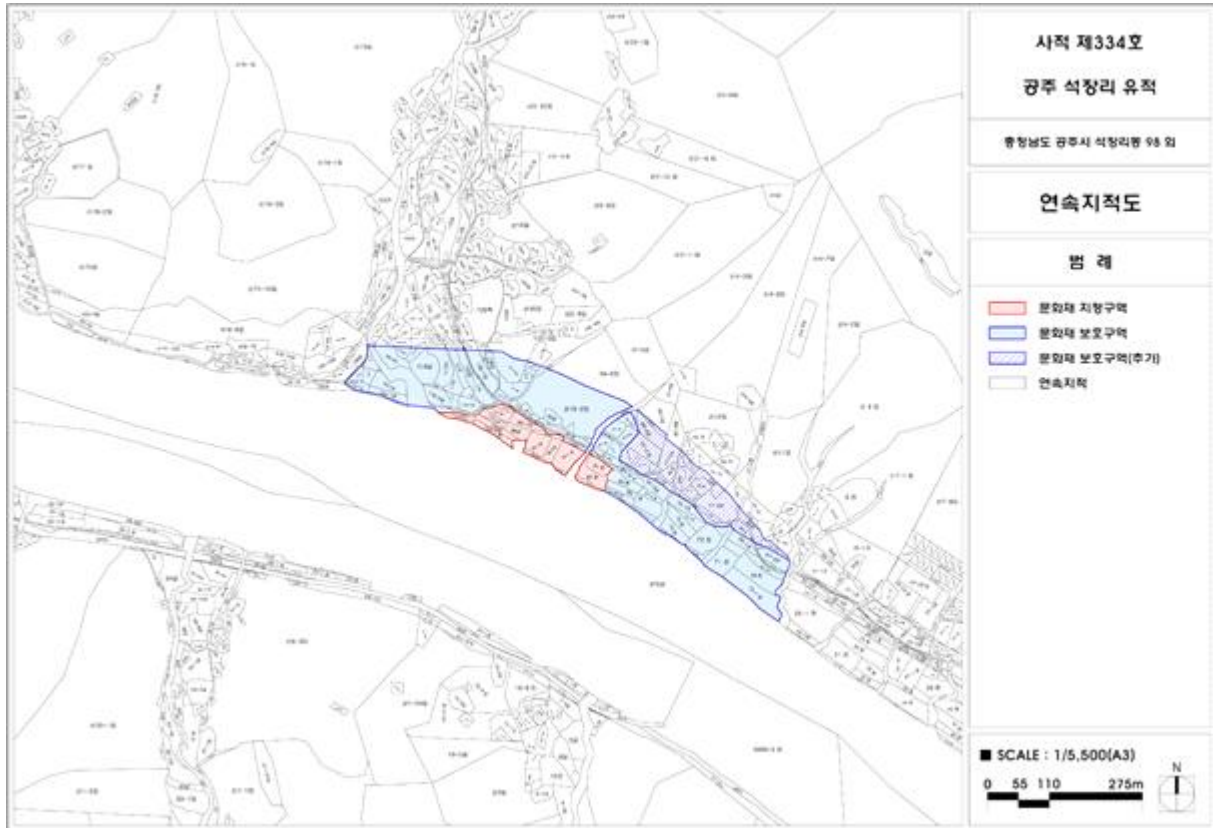
▲ ⑥ 남측 도로변에서 바라본 보호구역 추가 신청지 근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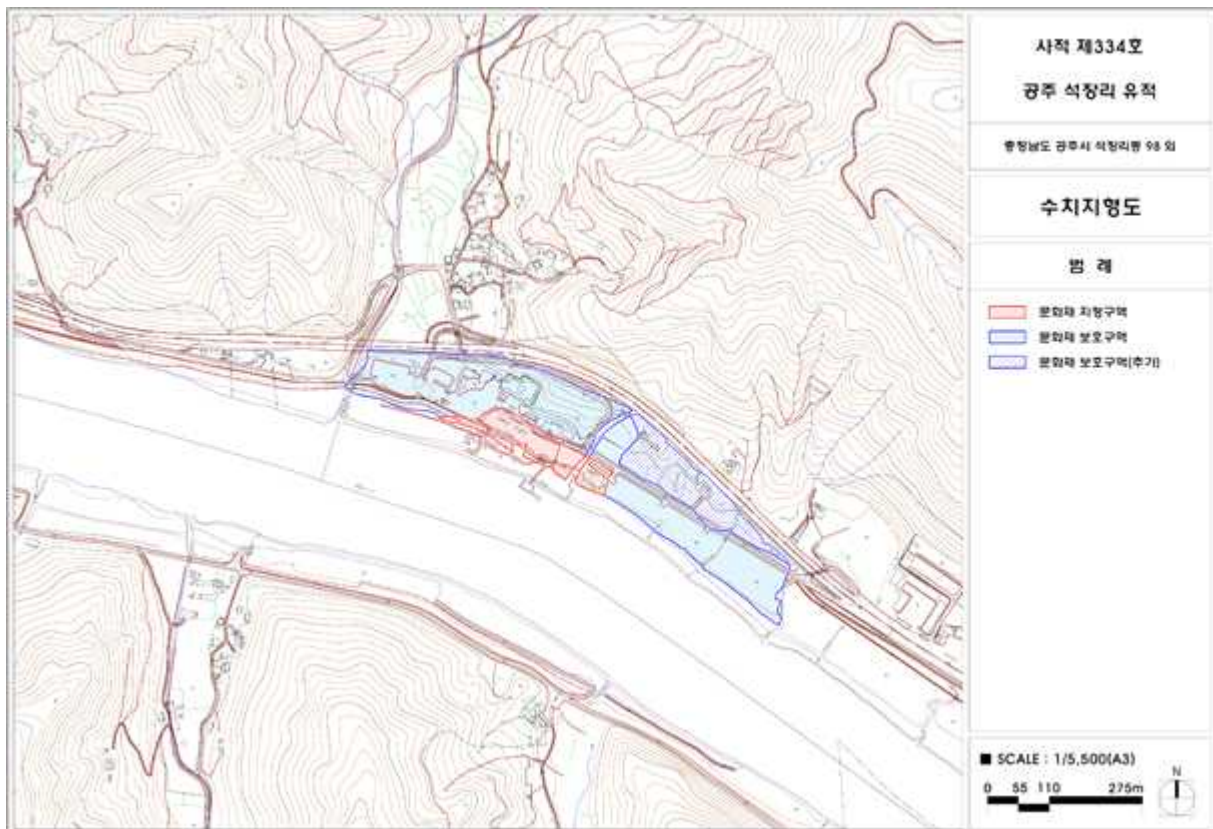
▲ ⑦ 남측 도로변에서 바라본 바라분 보호구역 추가 신청지 근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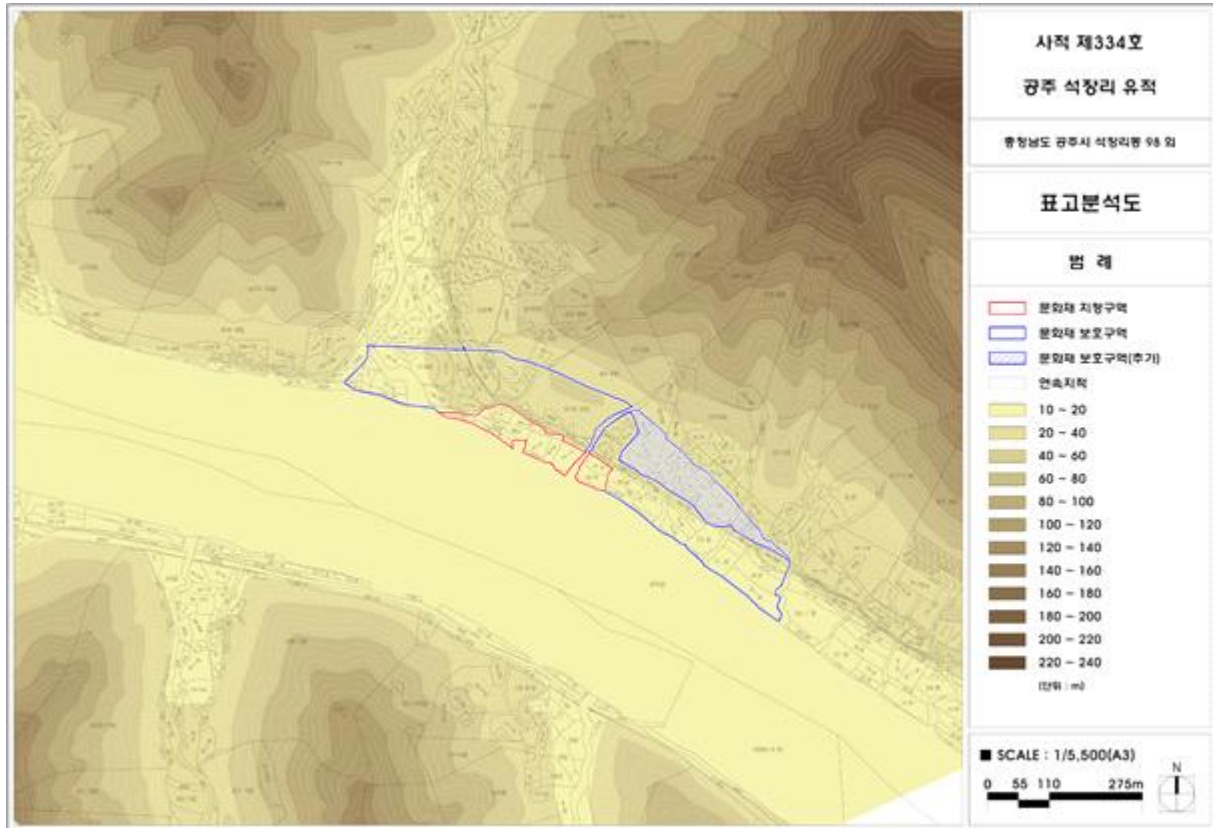
○ 연속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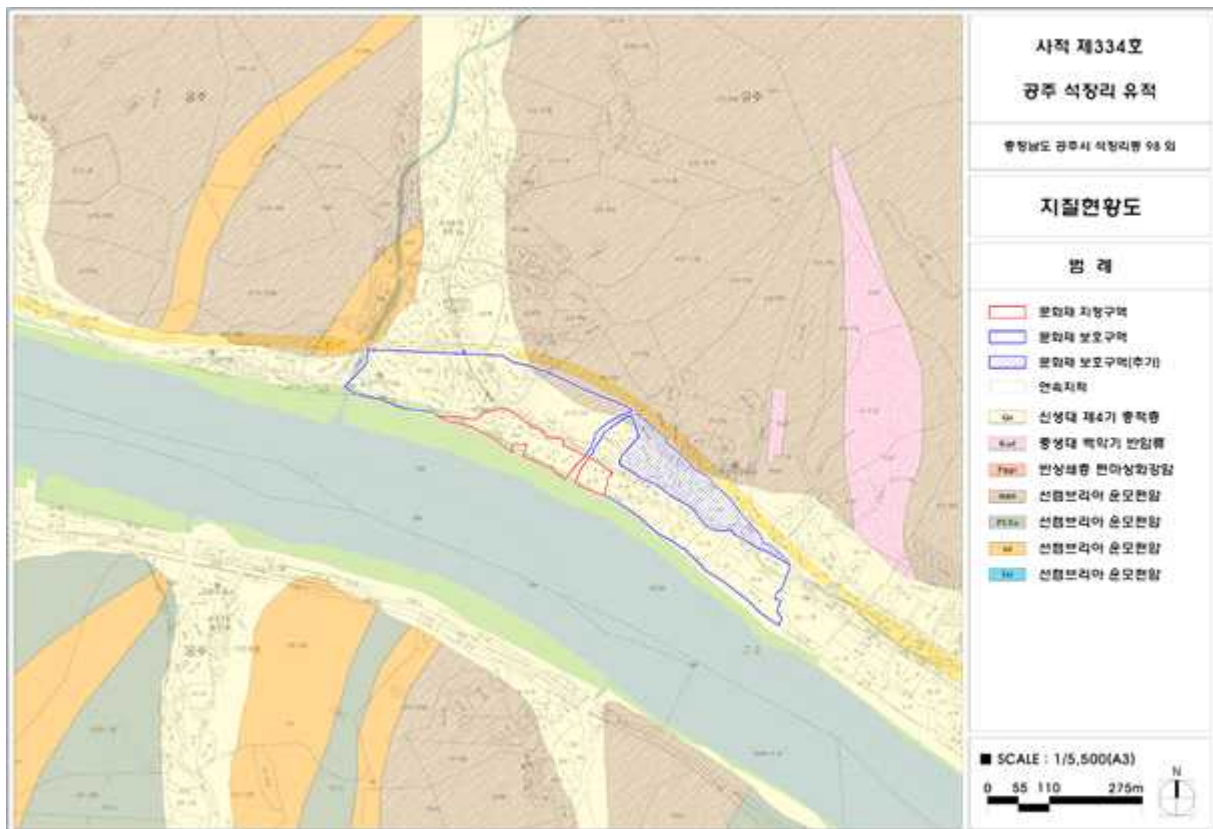
○ 수치지형도



○ 표고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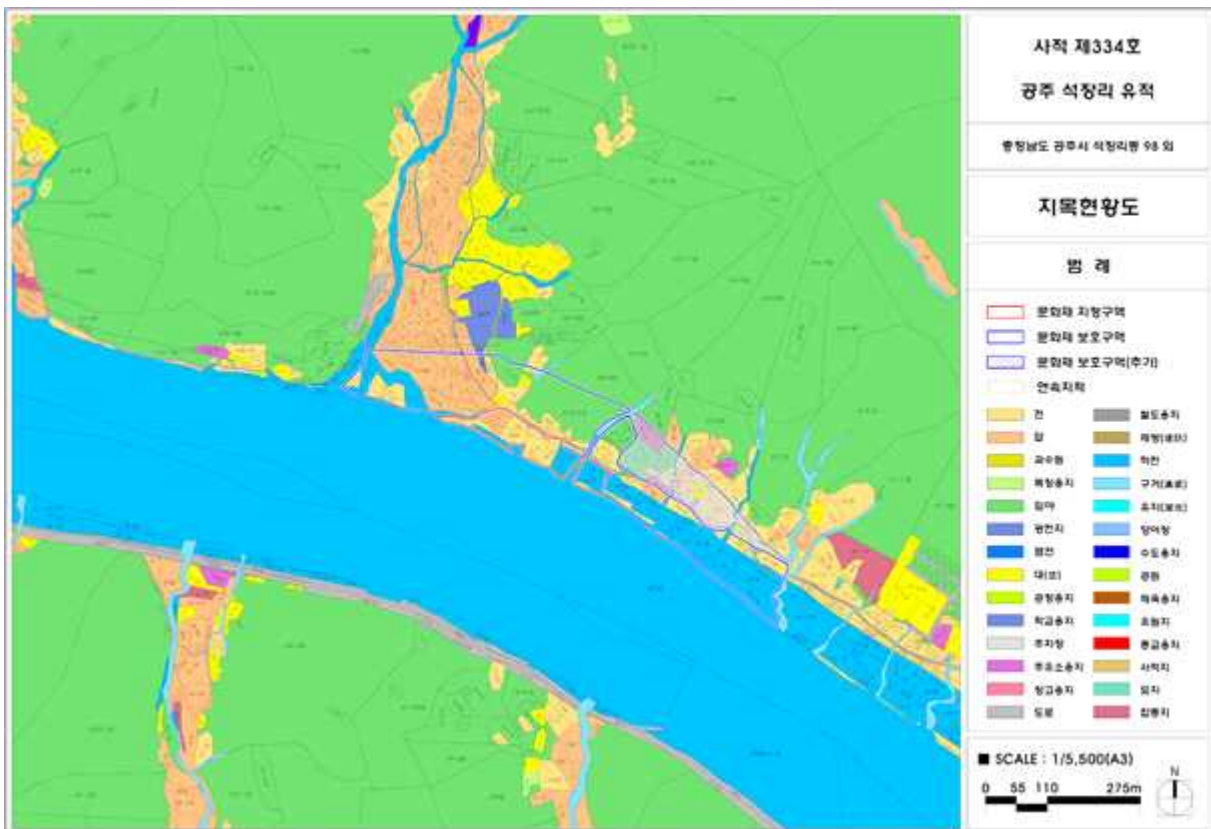
○ 지질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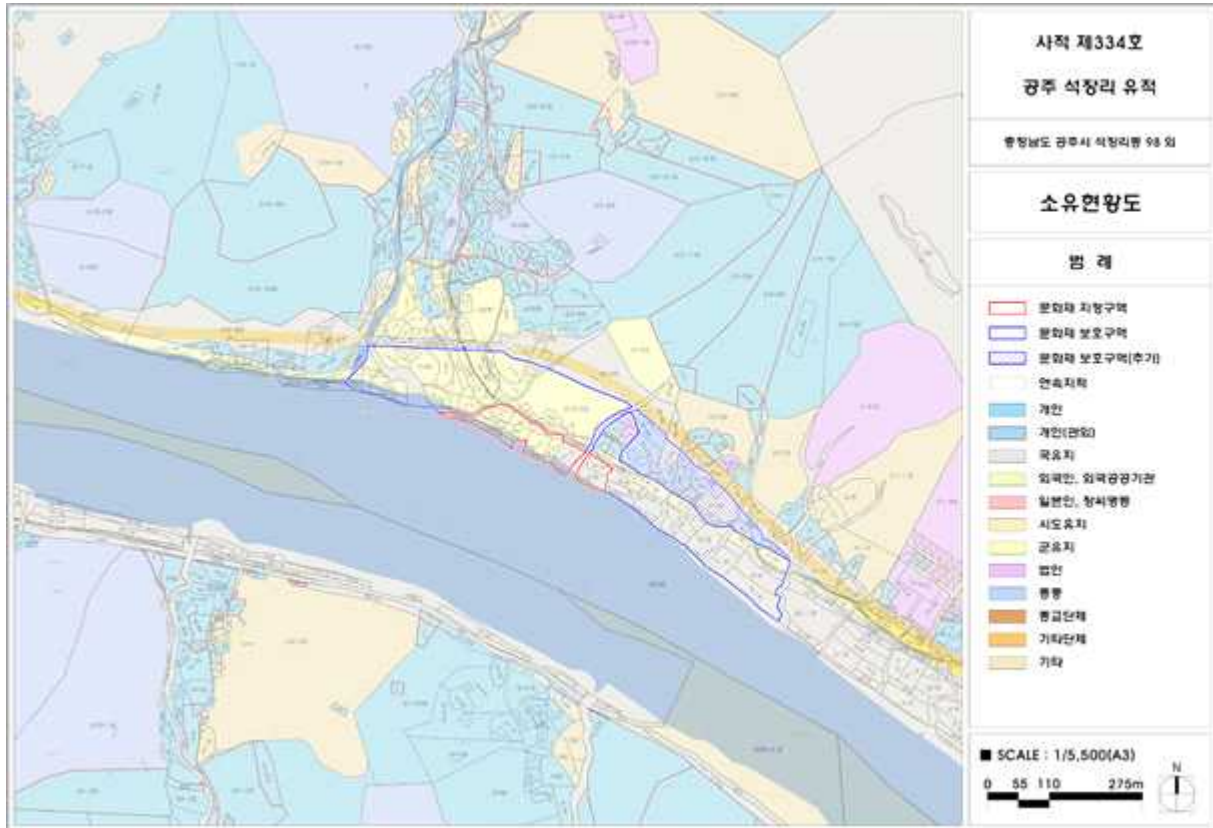
○ 식생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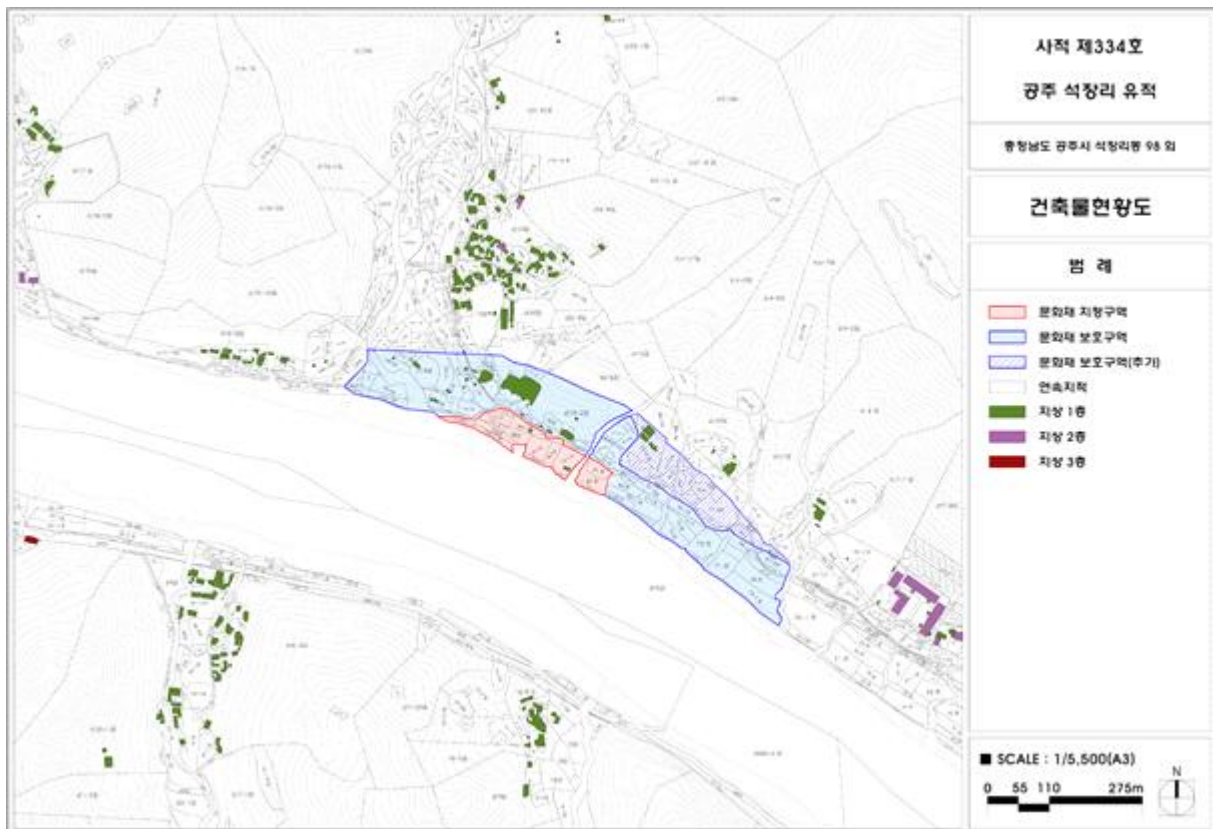
○ 지목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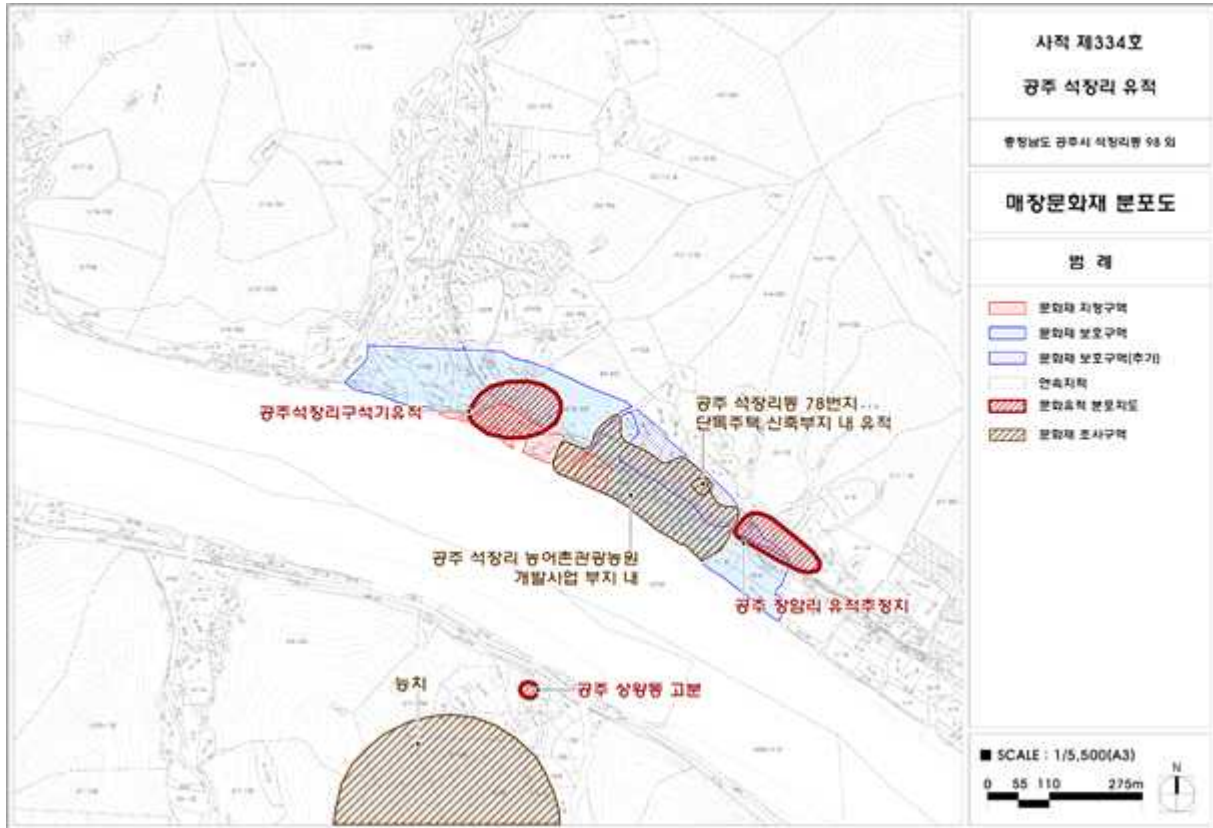
○ 소유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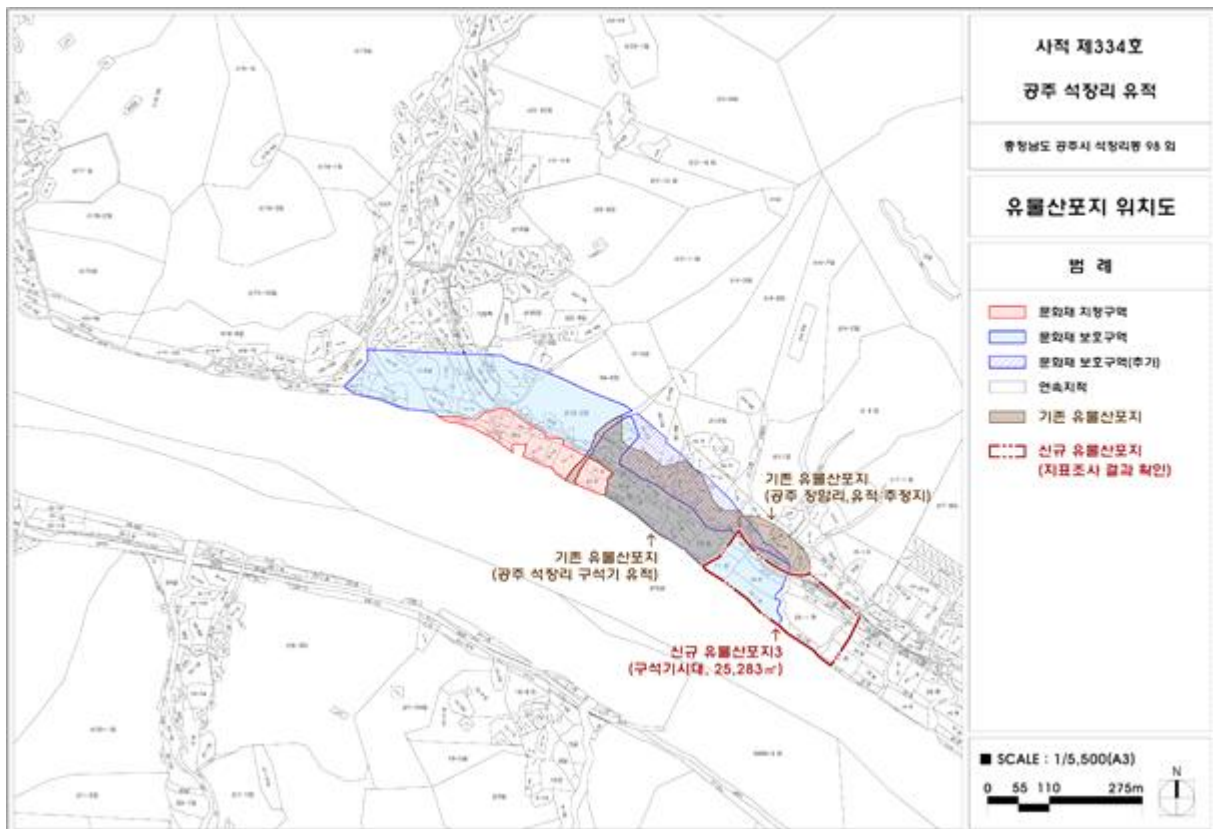
○ 건축물현황도



○ 매장문화재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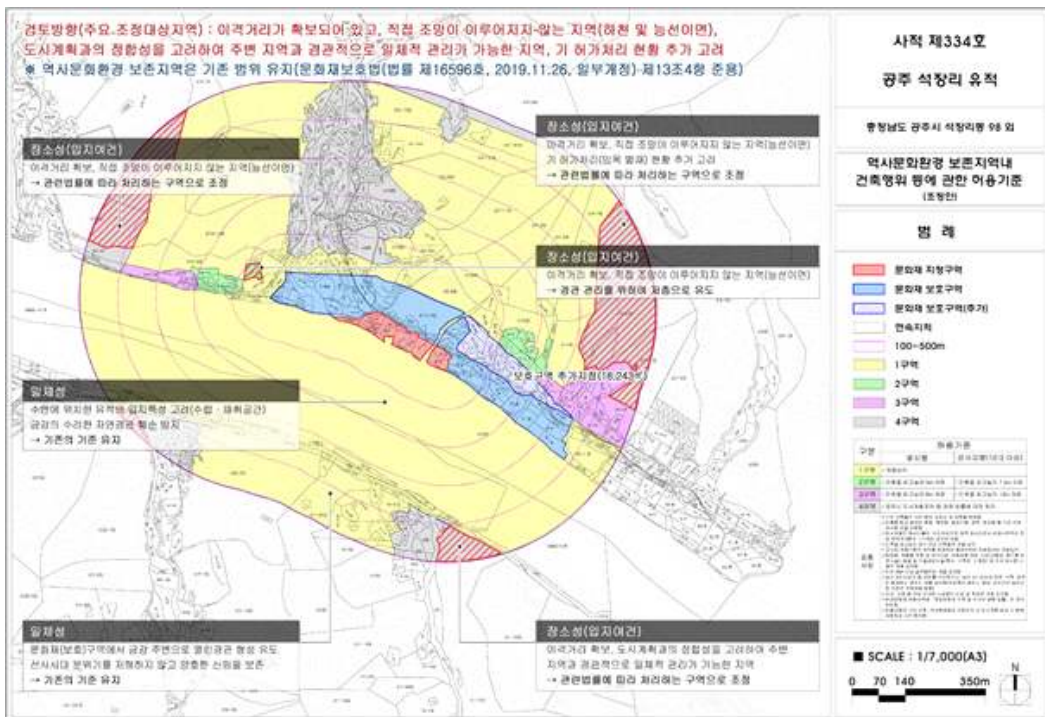
○ 유물산포지 위치도



8.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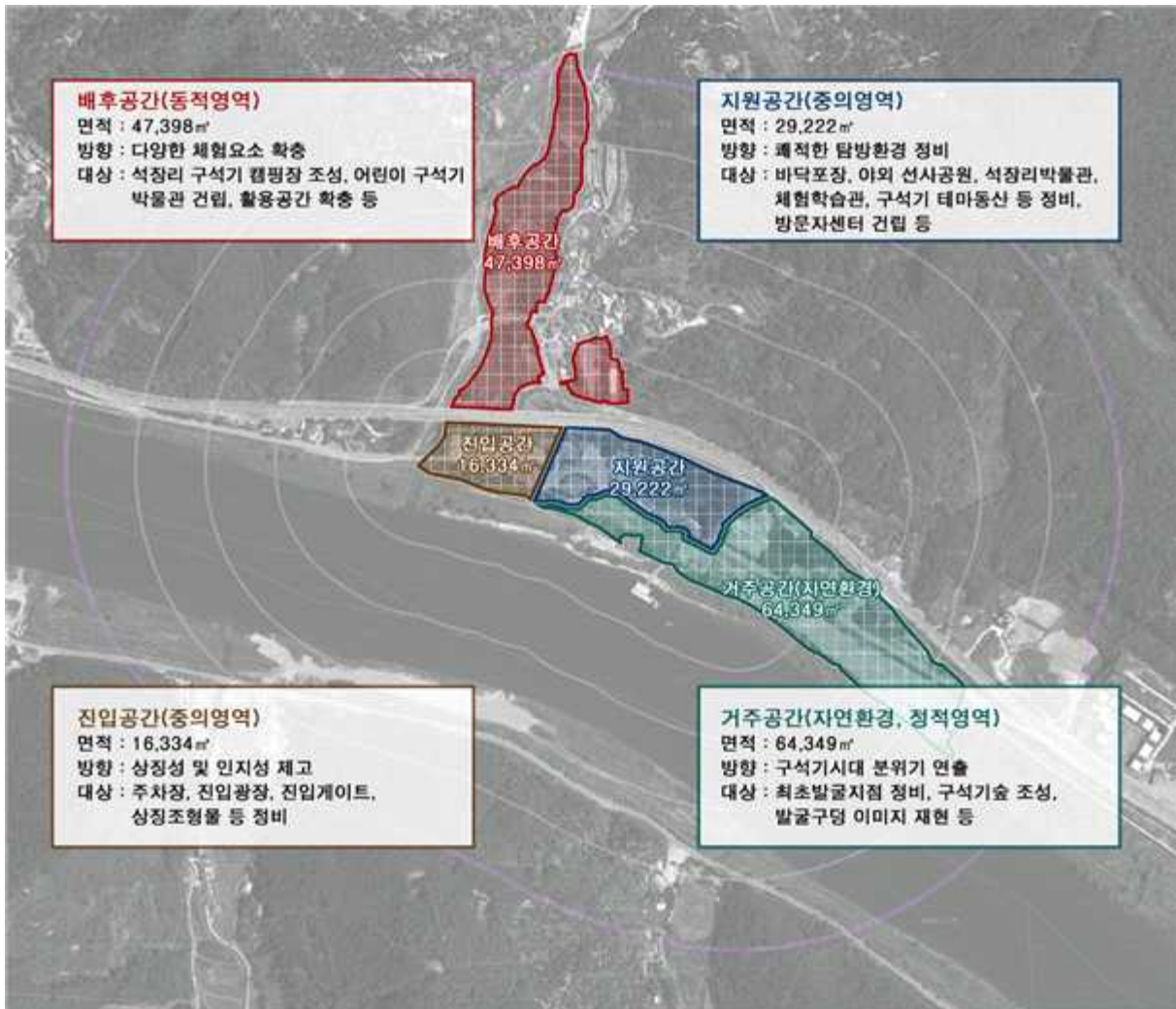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조망성과 주변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함

구분	허용기준(2020.11.20. 고시)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9.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상지 토지매입
- 유적에 어울리는 생태환경 등 구석기유적에 적합한 정비사업 추진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10. 종합의견

- 2019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 되었으며, 2020년 5월에 유물 산포지를 중심으로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금회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2020년 5월에 지정한 보호구역과 함께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일 뿐 아니라,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어 유적과 연관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

3. 부여 가림성 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부여 가림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가림성의 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 제3차 회의(2021.3.10.) 검토를 거쳐 지정 예고
 - 예고 일 : 2021. 3. 31.(문화재청 공고 제2021-141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가림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 (3) 신청내용<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지정>
 - 기존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8필지 182,526㎡ / 보호구역 없음
 - 추가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10,548㎡ / 보호구역 5필지 116,665㎡
 - 추가 지정 후 면적 :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 / 보호구역 5필지 116,665㎡
- (4) 신청사유
 - 가림성 내성과 함께 축성되었던 외성 영역이 오랫동안 사적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적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문화재구역 조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12.15(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의 문화재구역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의 문화재구역 조정으로 명칭 변경 없음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사적 제4호인 부여 가림성은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와 장암면 지토리에 걸쳐 위치함
- 이곳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차령산맥 서남지맥의 가운데 부분이며, 부여 읍 일대에서 서쪽으로 크게 반원을 이루고, 만곡한 금강이 남쪽에서 반대쪽 동쪽으로 더 크게 만곡한 부분의 거의 가운데 지점에 해당함
- 이 지맥의 동쪽으로는 논산평야, 북서쪽으로는 금천벌판이 각각 펼쳐져 있고, 가림성이 위치하는 성흥산(해발 260.1m)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어서 북쪽으로는 사비도성 남쪽으로는 익산지역, 남서쪽으로는 금강하구의 군산지역까지 멀리 조망 할 수 있음
- 또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륙의 요충지로서 금강 일대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는 교통로에서 주요 길목의 역할을 하였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사비천도를 염두 해두고 축조된 가림성은 사비도성의 외곽방어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오늘날 사비도성 주변으로 30개소 이상의 백제성이 알려져 있지만, 대형에 해당하는 산성은 초대형인 청마산성(전체 둘레 9,581m)과 사비도성 내의 부소산성(둘레 2,200m)을 제외하고, 가림성과 석성산성(둘레 1,537m)밖에 없으며, 그 외 둘레길이가 624m인 증산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 산성들임
- 가림성과 석성산성, 청마산성은 상호간의 거리가 각각 약 8.1km(가림성 동문지-석성산성 서쪽 모서리)와 약 4.3km(석성산성 북쪽 모서리-청마산성 남벽 중간부분)이며, 사비도성의 남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의 방어를 책임진 관방유적이었음
- 학계에서 오랫동안 성흥산성으로 지칭되어 온 이 유적은 2011년부터 백제 때 사용되었던 가림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어지게 되었음
- 서기 501년(동성왕 23)에 처음 축조된 가림성은 이후 백제 부흥운동기에 백제 부흥군의 한 거점이 되었으며,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쳐 계속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림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성벽에 대한 수축과 보축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성벽의 구조는 성흥산의 정상 둘레 8부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내성과 성흥산의 동쪽 사면에 축조되어 있는 외성이 함께 붙어있는 이중성 혹은 사슬모양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가림성의 내성은 일반적으로 테피식 산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산 정상부뿐만 아니라 방사선 모양으로 아래로 뻗어있는 크고 작은 등성이들의 사이에도 넓은 평탄지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피식과는 약간 다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가림성 내성의 성벽 전체 둘레길이는 1,342m이며, 외성은 성흥산의 동쪽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등성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포곡식 산성임
- 하지만 서벽 부분이 내성의 동벽에 의해 잘리어져 있고, 또한 산의 정상부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성 자체로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서벽 부분을 제외한 외성 성벽의 길이는 724m이고, 가림성의 전체 성벽 외곽 둘레 길이는 1,875m임
- 가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지와 성벽 위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 1996년 1차 조사 때에는 동문지와 남문지¹⁾, 2011년에는 동벽의 중간 바로 남쪽 일부구간(32.5m)²⁾, 2015년에는 동벽의 중간 및 북쪽 부분(107m)³⁾, 2016년에는 북벽의 중간 동쪽 일부구간(62m)⁴⁾, 2017년에는 동문지 북측 구간(100m)⁵⁾, 2018년에는 성흥산 정상부 일대(1,275m²)⁶⁾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가림성의 내성에 대한 식생환경 및 현황조사도 실시된 바 있음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가 모두 가림성 내성의 문지와 성벽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성문의 구조가 확인되었고, 성벽의 면적을 드러내어 축조, 수축 및 증축한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성 내부의 시설의 경우 성흥산 정상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음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문화재구역 조정)

- 2017년 가림성 기초조사를 통해 가림성의 내성 및 외성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성의 북측과 동측의 경우 성벽이 기존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정구역 범위를 벗어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외성의 경우에는 기존 지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존관리가 전혀 이루

1) 안승주·서정석, 1996, 성흥산성 문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

2) 백제고도문화재단, 2013, 부여 성흥산성 성곽정비복원 사업 성흥산성Ⅱ

3)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가림성 I 동성벽노출조사

4)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가림성Ⅱ 북성벽조사

5)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 5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6)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가림성 6차 발굴(정밀)조사 약보고서

어지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기존 지정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외성 영역을 가림성의 지정구역에 포함시켜 향후 성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할 계획으로서 성벽 라인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성곽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도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 구역 조정이 필요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구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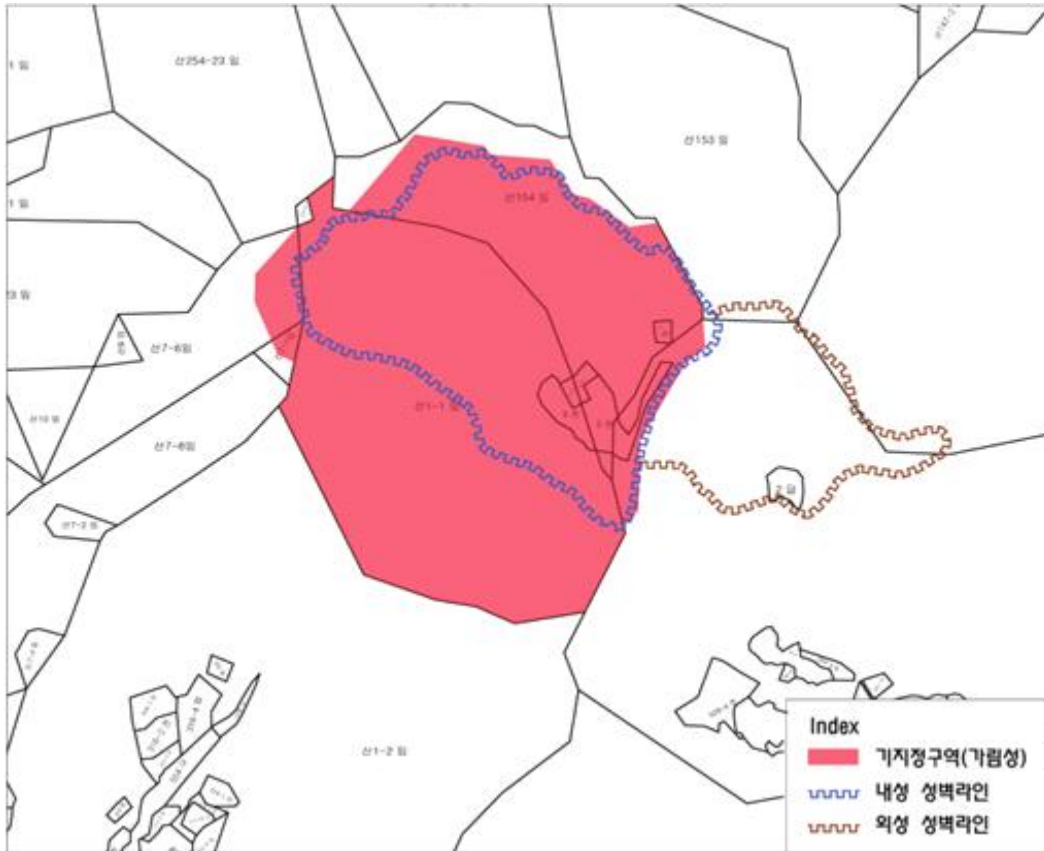
- 기존 : 문화재구역 8필지 182,526㎡
- 신청 : 문화재구역 14필지 309,739㎡(증 127,2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성명	주소
1	군사리	1	전	413	413		
2	군사리	3	전	5,332	5,332		
3	군사리	4	대	939	939		
4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5	군사리	산7-1	임	883	883		
6	군사리	산8	임	397	397		
7	군사리	산7-9	임	767	767		
8	군사리	산7-10	임	4,140	4,140		
9	지토리	산144-24	임	7,053	7,053		
10	지토리	산154	임	59,008	59,008		
11	지토리	산145-1	임	301,038	27,255		
12	지토리	산144-1	임	824,640	73,194		
13	지토리	산153	임	73,983	14,483		
14	군사리	2	답	1,230	1,230		
계	14필지			1,394,468	309,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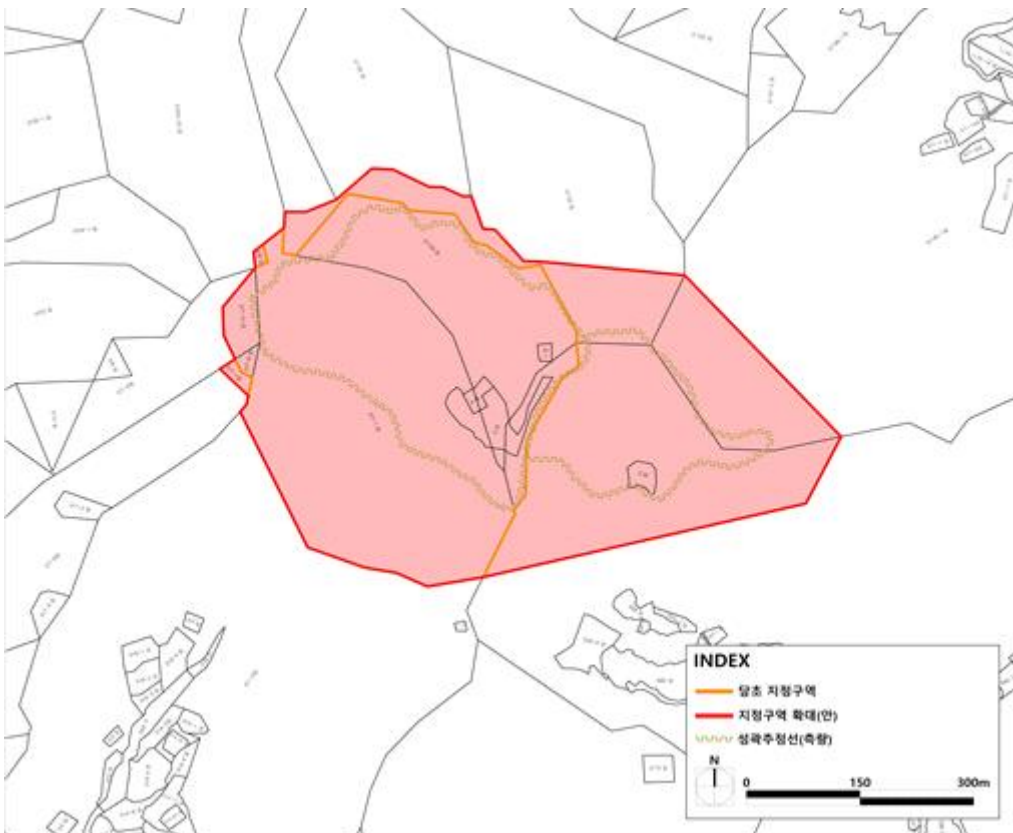
* 당초 고시 지번 변동, 오류사항 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비고
1	지토리	산154	임	59,008	46,950	* 2017.7.5. 면적정정 : 831,693㎡ * 2017.11.29. 분할 - 산144-1번지 : 824,640㎡, 산144-24번지 : 7,053㎡
2	지토리	산144-1	임	845,608	6,550	* 장암면 지토리 1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 임천면 군사리 1번지(413㎡)로 추정됨
3	지토리	1	전	3,203	3,203	
4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5	장암면	4	대	939	939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6	장암면	3	전	5,332	5,332	* 2017.1.23. 분할 - 산7-1번지 : 883㎡, 산7-9번지 : 767㎡
7	군사리	산7-1		1,650	767	* 임천면 군사리 산7-3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 임천면 군사리 산7-10번지(4,140㎡)로 추정됨
8	군사리	산7-3		10,481	4,140	
계	8필지			1,040,866	182,526	

○ 문화재구역 신청 범위



부여 가림성 지정구역 및 내성·외성 성벽라인(부여 가림성 기초조사 보고서(2017))



부여 가림성 문화재구역 조정안

○ 조정(현지조사 의견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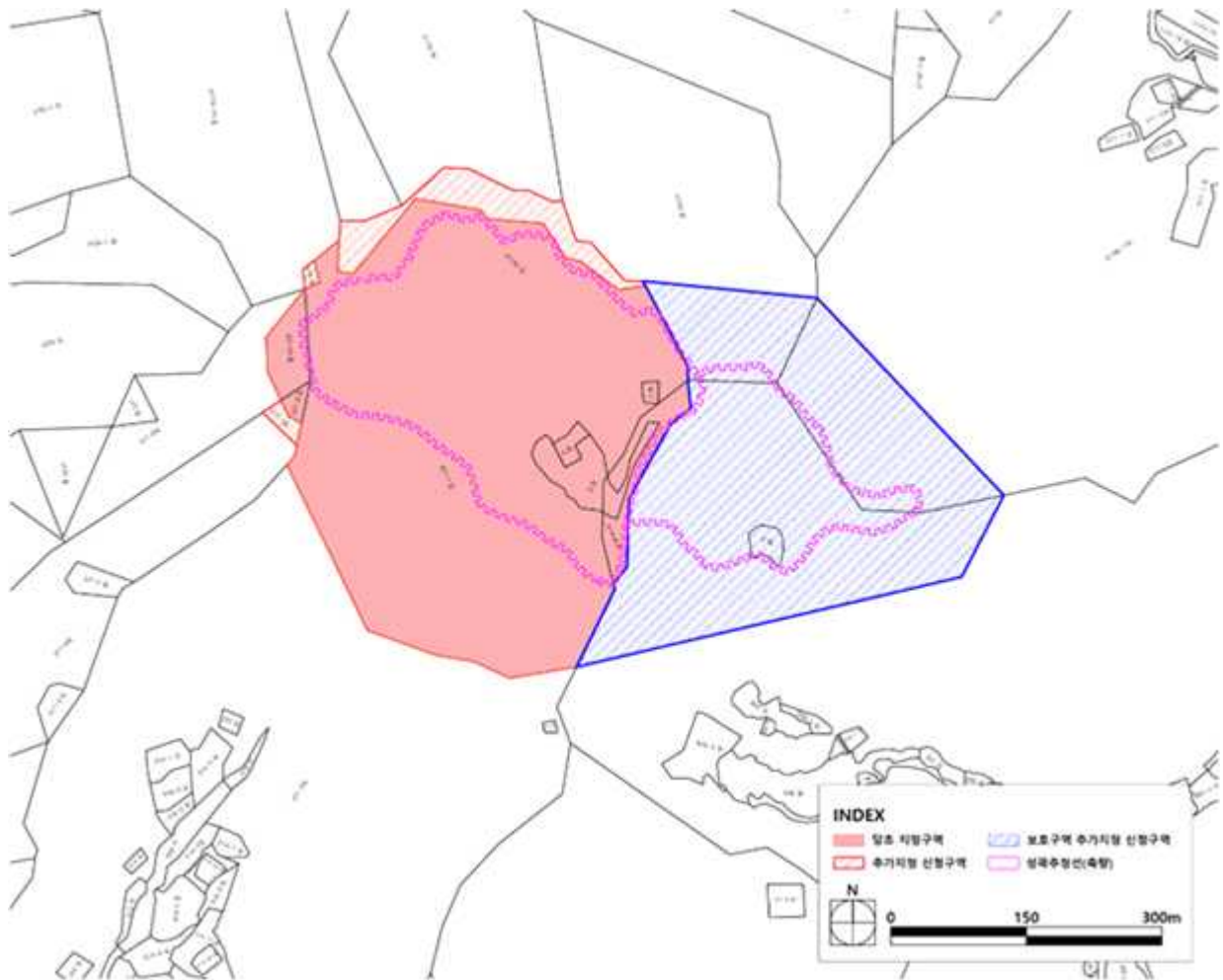
-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m²(증 10,548m²)
- 문화재보호구역 5필지 116,665m²(순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지정(m ²)	소유자		구역
						성명	주소	
1	임천면 군사리	1	전	413	413			지정 구역
2	임천면 군사리	3	전	5,332	5,332			지정 구역
3	임천면 군사리	4	대	939	939			지정 구역
4	임천면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지정 구역
5	임천면 군사리	산7-1	임	883	883			지정 구역
6	임천면 군사리	산8	임	397	397			지정 구역
7	임천면 군사리	산7-9	임	767	767			지정 구역
8	임천면 군사리	산7-10	임	4,140	4,140			지정 구역
9	장암면 지토리	산154	임	59,008	59,008			지정 구역
10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6,550			지정 구역
11	장암면 지토리	산144-24	임	7,053	503			보호 구역
12	장암면 지토리	산145-1	임	301,038	27,255			보호 구역
13	장암면 지토리	산144-1	임	824,640	73,194			보호 구역
14	장암면 지토리	산153	임	73,983	14,483			보호 구역
15	임천면 군사리	2	답	1,230	1,230			보호 구역
계	14필지			1,401,521	309,739			

* 당초 고시 지번 변동, 오류사항 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비 고
1	장암면 지토리	산154	임	59,008	46,950	* 2017.7.5. 면적정정 : 831,693㎡ * 2017.11.29. 분할 - 산144-1번지 : 824,640㎡, 산144-24번지 : 7,053㎡
2	장암면 지토리	산144-1	임	845,608	6,550	* 장암면 지토리 1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 임천면 군사리 1번지(413㎡)로 판단됨
3	장암면 지토리	1	전	3,203	3,203	
4	임천면 군사리	산1-1	임	114,645	114,645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5	장암면	4	대	939	939	* 장암면 지토리로 판단됨
6	장암면	3	전	5,332	5,332	* 2017.1.23. 분할 - 산7-1번지 : 883㎡, 산7-9번지 : 767㎡
7	임천면 군사리	산7-1		1,650	767	* 임천면 군사리 산7-3번지는 지정구역과 관계없는 번지 - 임천면 군사리 산7-10번지(4,140㎡)로 판단됨
8	임천면 군사리	산7-3		10,481	4,140	
계	8필지			1,040,866	182,526	

○ 문화재구역 조정 범위



○ 외성 기초조사 현황

- 외성은 내성의 동쪽에 위치한다. 외성 북벽은 내성 동문지 북편에서 시작되며, 남벽은 내성 동벽 남쪽부분과 연결된다. 외성은 북서-동남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등성이, 다시 말해서 제2등성이와 제3등성이 바깥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있어 남벽과 북벽은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동쪽으로 길게 뿔 모양으로 뻗어있는 구간으로 인해 동벽은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서벽은 내성 동벽으로 인해 따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내성 동문지의 북쪽에서 시작되는 북벽은 사실 처음에는 서-동쪽으로 진행되지만, 곧 지형에 의해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며, 다시 뿔 모양으로 돌출한 부분에서는 서-동 방향으로 진행된다. 굳이 따지자면, 동벽은 돌출한 부분의 동단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부여 가림성 배치도(부여 가림성 기초조사 보고서(2017))



가림성 내성 동문지 인근의 외성 북벽 모습 가림성 내성 동문지 인근의 외성 남벽 모습

- 남벽은 상대적으로 작은 동쪽의 곡부와 상대적으로 큰 서쪽의 곡부를 각각 지난다. 뿔 모양으로 돌출한 부분에서는 성벽이 대체로 동-서 방향을 진행되다가 동쪽의 곡부를 지나면서 남서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며, 동쪽과 서쪽 두 곡부 사이의 등성이 부분에서 대체로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되어 내성 동벽과 만난다. 외성 성벽은 길이가 724m이다. 북벽과 남벽 동편의 내·외 협축 추정 구간에서는 성벽의 높이가 대체로 2.5~3.5m사이이며, 성벽 위 부분의 너비는 1.2~1.5m사이이다.
- 외성 성벽은 지금까지 토축 성벽인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¹⁾ 실제로 성벽 대부분의 구간은 외견상 토축으로 보인다. 다만 북벽의 뿔 모양 돌출부 이전 부분, 동쪽 작은 곡부 동편과 서쪽 큰 곡부 일대의 남벽, 그리고 내성 동벽과 이어지는 곳 가까이의 남벽 등에서는 토축 성벽 외면으로 석축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림성 외성 북벽 석축 모습



가림성 외성 뿔 모양 돌출부의 남벽 석축 모습



가림성 외성 남벽 서쪽 부분의 석축 모습 가림성 외성 남벽 서쪽 곡부 석축 및 추정 수구 모습



- 하지만 이 석축은 내성의 석축 성벽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고 엉성하다. 북벽 동쪽 뿔 모양의 돌출부가 시작되기 전 부분의 성벽이 약간 절단된 지점에는 석축면이 토축 성벽의 기저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서 시작되고 있고 뒤채움돌도 거의 없다. 남벽 동쪽 작은 곡부 동편의 석축은 약간 길게 남아있는데, 현재 노출된 높이는 모두 1m이하이다. 내성 동벽 가까이의 남벽에는 석축이 0.5m이하의 높이로 확인된다. 또한 외성 성벽 밖으로는 붕괴된 성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외성 성벽은 기본적으로 토축 성벽으로 파악할 수 있

1) 유원재, 1996, 백제 가림성 연구, 백제논총 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외면을 석축으로 보강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서쪽 큰 곡부 일대에는 석축으로 편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성 성벽에서는 남벽 서쪽 큰 곡부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등성이 부분에는 안쪽으로 내황으로 생각되는 골이 형성되어 있고, 평탄지 부분에는 성벽 안쪽이 더 낮기 때문에 위 부분을 내·외 협축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현재 남벽의 동쪽 작은 곡부에는 성벽 단절부가 있어 출입시설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바로 이웃하는 서쪽의 상대적으로 큰 곡부 일대에 남문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곳 서쪽 곡부의 석축부분에서는 수구로 보이는 지점도 확인된다.
- 외성의 내부에는 상당히 넓은 평탄지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뿔 모양으로 돌출한 부분의 내부와 남벽 동쪽 부분의 단절부 안쪽부터 서쪽 곡부 사이의 공간이 바로 그러하다. 이 평탄지들에는 다수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벽 서쪽 곡부의 성벽 석축 바로 안쪽에는 지금도 갈대가 자라고 있는데, 연못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림성 외성 남벽 동쪽 부분 단절부 모습



가림성 외성 동편 뿔 모양 돌출부 내의 평탄지 모습



가림성 외성 남벽 동쪽 단절부와 서쪽 곡부 사이의 평탄지 일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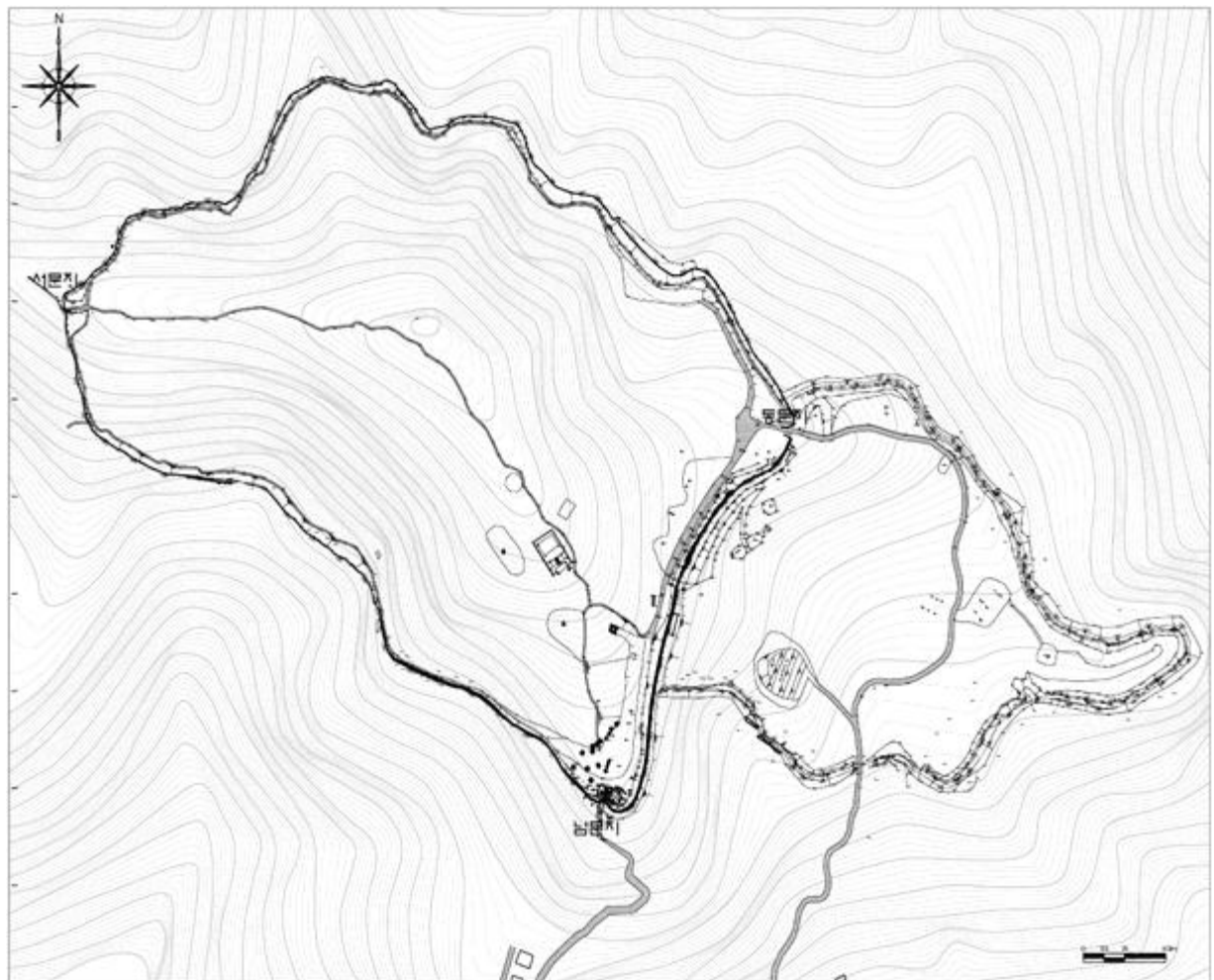


가림성 외성 남벽 서쪽 곡부 안쪽의 추정 연못지 모습

○ 위성사진 현황(현재 문화재구역)



○ 가림성 전체 배치도



○ 현황 사진



부여 가림성 전체 전경 (2017)



내성 남벽 전경 (2017)



내성 북벽 전경 (2017)



내성 동벽 전경 (2017)



외성 전경1 (2017)



외성 전경2 (2017)



외성 현황1 (2017)



외성 현황2 (2017)



내성 동문지 현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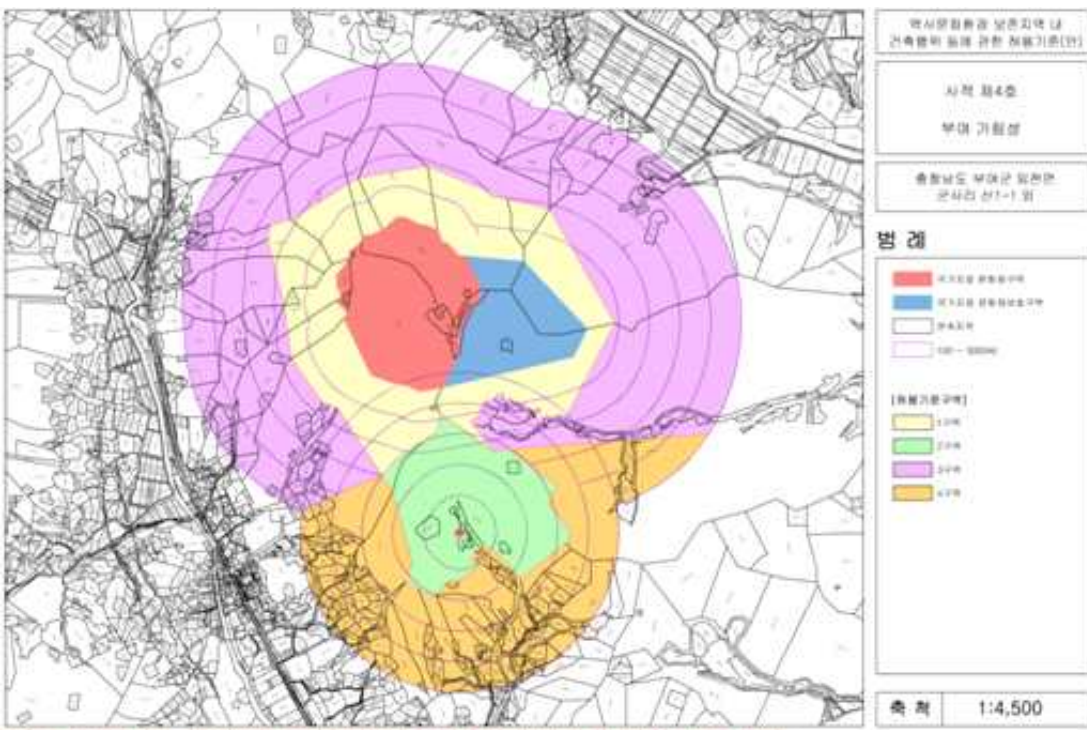


유태사지묘 전경 (2017)

8.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영역 확장에 따른 조망성 등 고려 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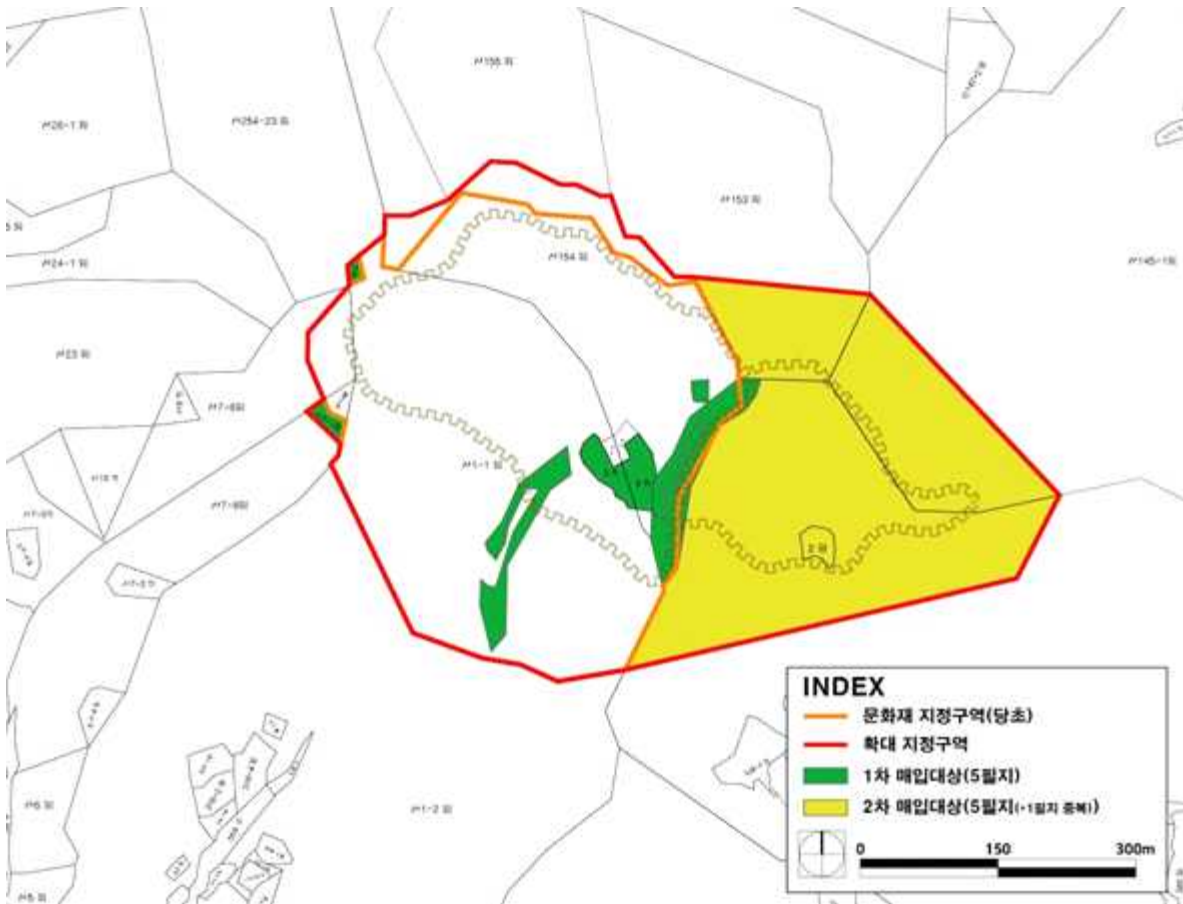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가림성 기준 심의)	
2구역	○ 개별심의(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가림성 기준 심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반후 유자하여 최종확인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및 발효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9.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 토지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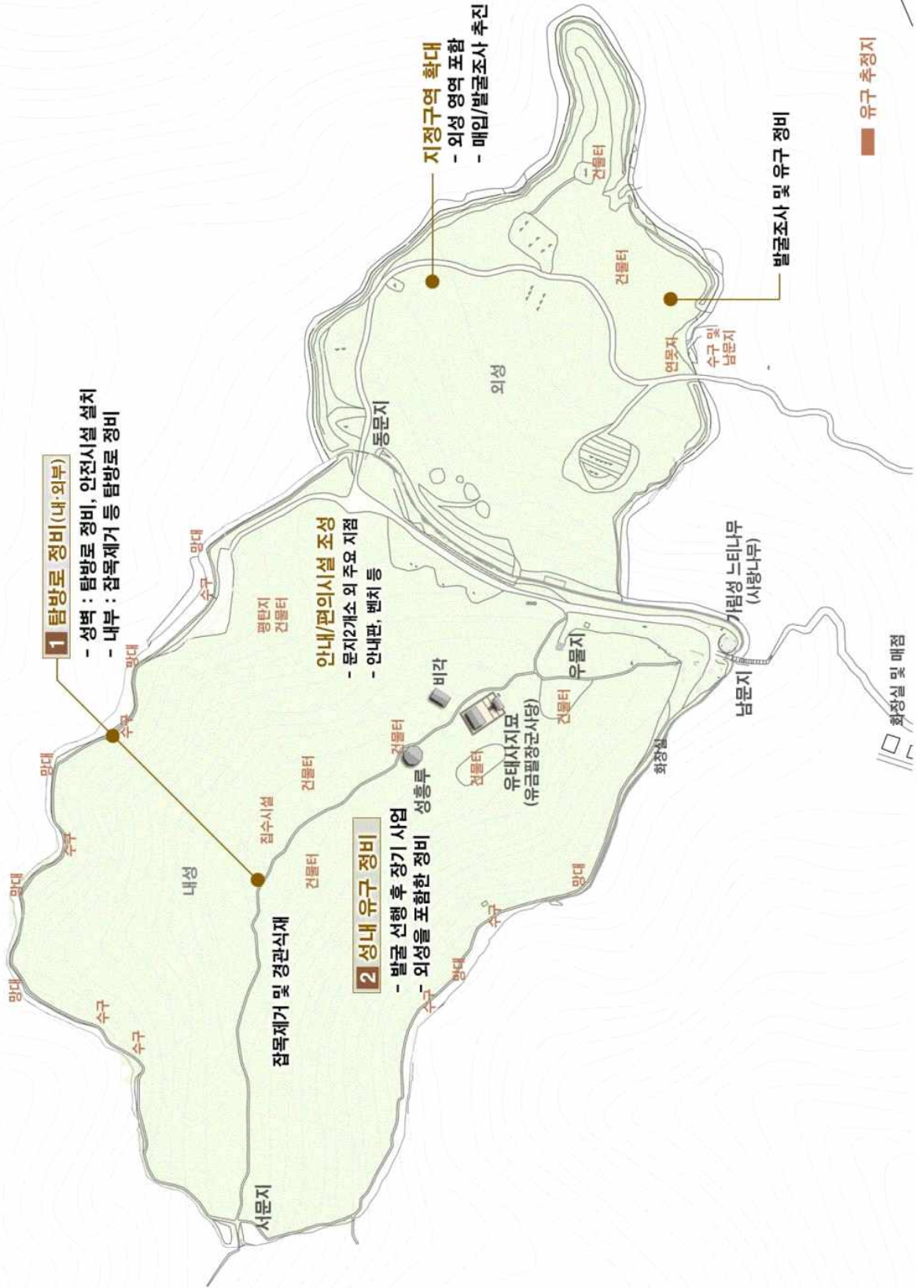


○ 발굴조사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

가림성 종합정비계획도



10. 종합 의견

- 2017년 가림성 기초조사를 통해 가림성의 내성 및 외성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내성의 북측과 동측의 경우 성벽이 기존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지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 지정구역 범위를 벗어나 위치하고 있음
- 이에 지정구역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은 문화재구역에 포함시켜 향후 성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외성은 2017년 지표조사 되었지만 역사성, 학술성이 확실치 않으므로 보호구역으로 하고 발굴 등을 통해 역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할 계획으로서 성벽 라인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성곽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도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구역 조정이 필요함

4.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탐방지원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탐방지원 센터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 탐방지원센터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 1973.06.11. 지정)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07번지
- (3) 신청내용<탐방지원센터 신축>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29(문화재구역)
 - 사업 목적 : 이순신 순국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물 신축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연 면 적 : 24m²
 - 최고높이 : 3.29m
 - 기 타 : 데크 설치 16m² , 수목이식 2주
- (4) 신청인 의견
 - 이순신순국공원 내 탐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탐방서비스 강화로 저지대 탐방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및 경제활성화 기여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5.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도로 개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회암사지」 보호구역 내 회암사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회암사지 회암사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

(3) 신청내용<회암사 진입도로 개선>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가) 1구역

- 도로확폭(0.5~1.5m): 기존 도로폭 3.0~5.5m → 계획도로폭 3.5~7.5m
- 석축찰쌓기(H0.5~2.5m) : 38.09m(103.91㎡)

나) 2구역

- 도로확폭(0.5~2.2m): 기존 도로폭 3.0~4.8m → 계획도로폭 3.5~7.0m
- 석축찰쌓기(H0.5~2.5m) : 21.53m(33.59㎡)

다) 3구역

- 도로 경사도 조정
- 기존 아스콘 포장 해체 후 재설치 : 139.5㎡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0.9./**(전)문화재전문위원 ○○○**)

- 회암사 진입로 정비를 위한 현황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진입로 정비는 회암사 일주문부터 사찰에 이르는 구간 중 차량 운행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함
 - 일주문을 지나 도로가 협소한 구간, 계곡을 횡단하는 도로 암거설치 구간, 사찰입구 주차장 주변 급커브구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의 폭 및 선행, 경사도를 개선하도록 함
 - 진입로 정비로 인하여 석축 등을 쌓을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자연석 등을 사용토록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6. 수원 화성 내 열린관광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수원 화성」 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4차 위원회('21.04.14.)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 (3) 신청내용<열린관광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위 치	현 황	'2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부결)	금회신청
연무대 구간 (내탁부)	- 흙(경화)포장 61.0m(L), 2.0m(W) - 철제로프난간 64.5m(L), 1.2m(H)	- 흙(경화)포장 : 85.1m(L), 1.2m(W) - 로프난간 : 57경간(1.5m(W), 0.9m(H)) - 로프난간 : 33경간(1.5m(W), 0.3m(H)) - 경사 안내판 : 2개소(0.3×1.5)	- 제외
창룡문 구간 (내탁부)	- 흙(경화)포장 31.0m(L), 1.5m(W) - 로프난간 21.0m(L), 1.1m(H)	- 야자매트 : 161.0m(L), 1.8m(W) - 흙(경화)포장 : 44.5m(L), 1.2m(W) - 로프난간 : 31경간(1.5m(W), 0.9m(H)) - 경사 안내판 : 2개소(0.3×1.5)	- 제외
창룡문 외성 구간 (외탁부)	- 비포장 12.0m(L), 1.8m(W)	- 흙(경화)포장 : 26.9m(L), 1.5m(W) - 로프난간 : 19경간(1.5m(W), 0.9m(H)) - 침목계단 : 17개소(1.2m(W))	- 흙(경화)포장 : 26.9m(L), 1.5m(W) - 로프난간 : 19경간 (1.5m(W), 0.9m(H)) - 침목계단 : 17개소(1.2m(W))

위 치	현 황	'2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부결)	금회신청
장안문 구간 (내탁부)	- 흙(경화)포장 37.5m(L), 1.2m(W) - 로프난간 37.5m(L), 1.1m(H)	- 흙(경화)포장 : 4.6m(L), 1.8m(W) - 데크설치 : 43.3m(L), 1.8m(W) - 로프난간 : 322경간(1.5m(W), 0.9m(H)) - 경사 안내판 : 2개소(0.3×1.5)	- 제외
화서문 구간 (내탁부)	- 흙(경화)포장 24.0m(L), 1.2m(W) - 로프난간 22.5m(L), 1.1m(H)	- 흙(경화)포장 : 6.5m(L), 1.8m(W) - 데크설치 : 35.0m(L), 1.8m(W) - 로프난간 : 5경간(1.5m(W), 0.9m(H)) - 경사 안내판 : 2개소(0.3×1.5)	- 제외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로프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7.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따라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 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제2021-17호(2021.2.26.))
 - ※ 적정성 검토에 따른 추가, 해제, 축소 지정
 - 당초 지정면적 : 216필지 407,660㎡(문화재구역)
 - 추가지정, 축소 및 해제
 - 추가지정 : 11필지 14,612㎡(문화재구역), 9,020㎡(보호구역)
 - 축 소 : 축소 전) 2필지 4,502㎡(문화재구역) → 축소 후) 2필지 810㎡ (△ 3,692㎡, 문화재구역)
 - 해 제 : 22필지 29,318㎡(문화재구역)
 - 조정 후 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 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제2021-42호(2021.4.12.))
 - ※ 우산리 428 외 4필지는 1997년 해제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으로 남아있어 금회 정정(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
 -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
 -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민청취 의견수렴기간 : 2021.03.24.~04.13(20일간)

- 제출의견(1건) : 곤지암리 산467-1 외 1번지는 문화재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제 요청(의견제출자 : ○○○(산47-1번지 주변 토지 소유자))

※ 제출의견 <붙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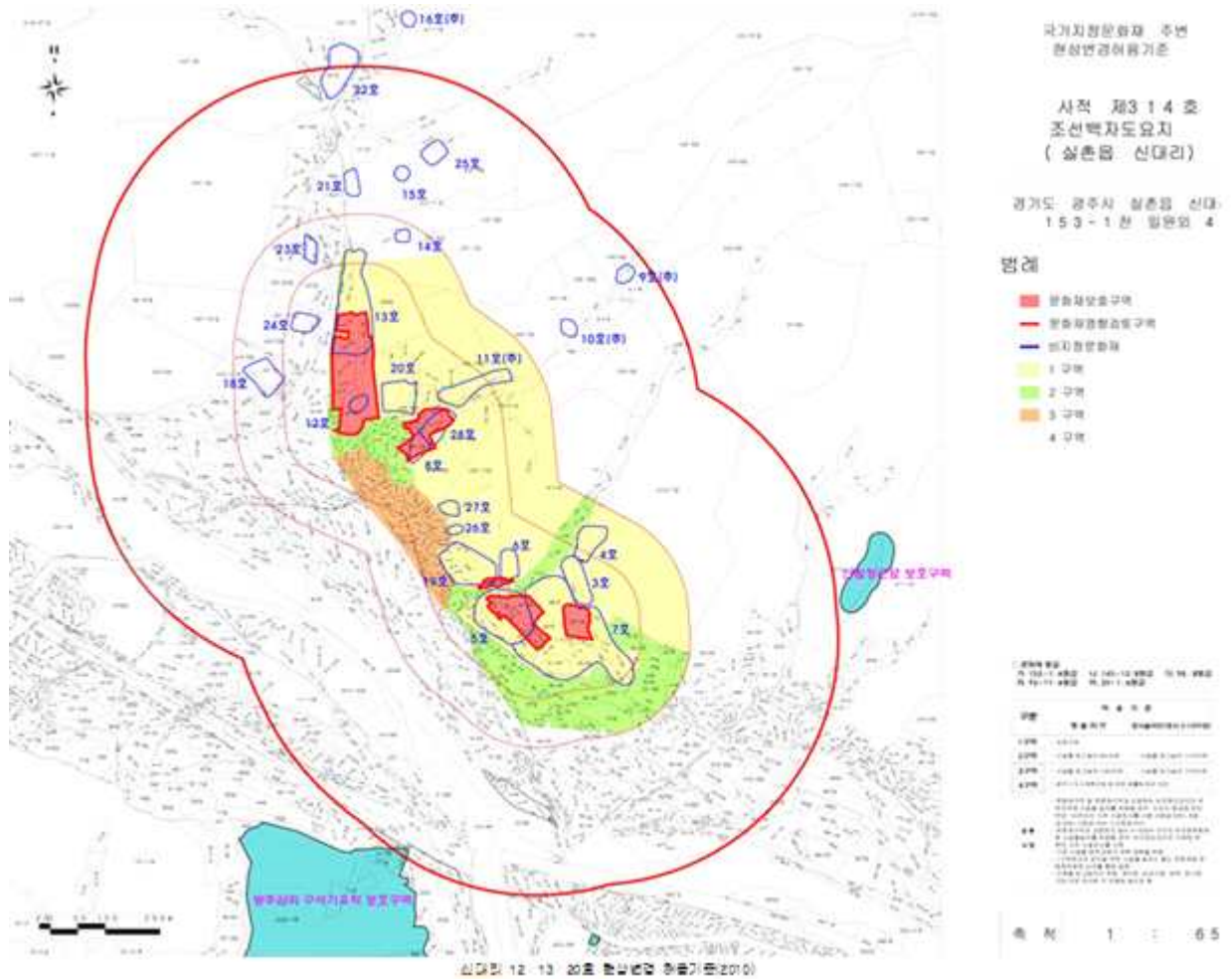
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허용기준 조정안

1) 허용기준 번호 22) 실촌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4건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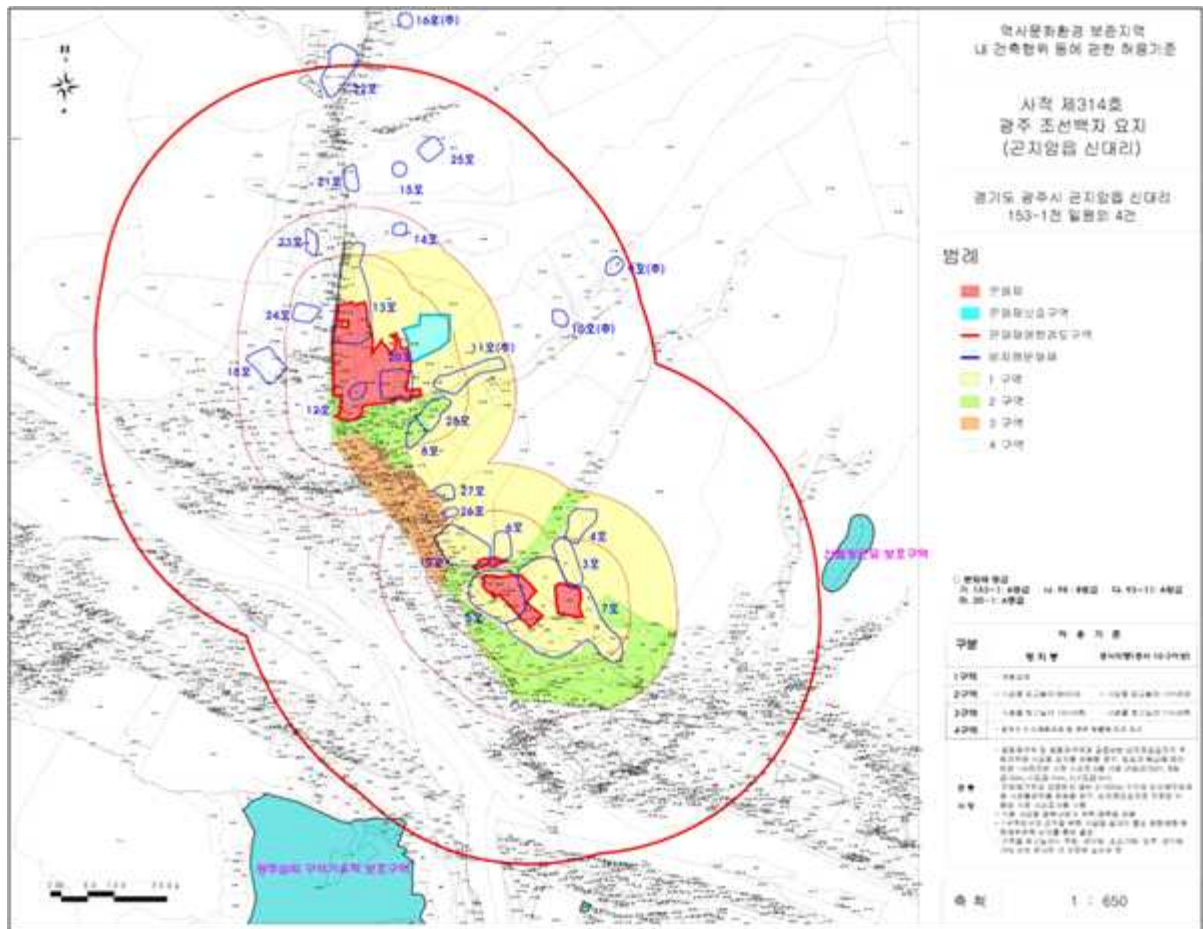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153-1 : A
 ② 145-12 : B
 ③ 98 : B
 ④ 93-11 : A
 ⑤ 20-1 : A



- 광주시 제출(안) (유형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 22) 실촌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3건
 - 추가지정 : 신대리 산 8-19 외 7필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8,335㎡, 보호구역 추가지정 6,514㎡)
 - 해제 : 신대리 145-1외 8필지(문화재구역 해제 5,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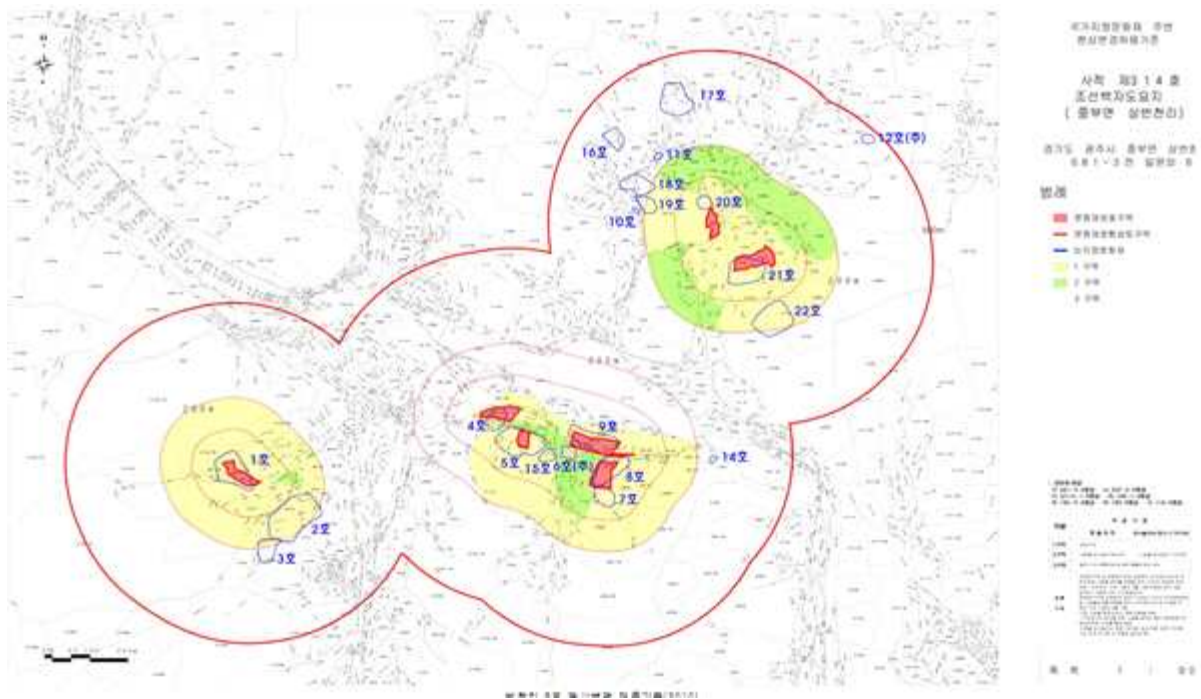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153-1 : A ② 98 : B ③ 93-11 : A ④ 20-1 : A



2) 허용기준 번호 23) 중부면 상변천리 114 일원 외 6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 도요지등급 ① 681-3 : A ② 522-2 : A ③ 산113-1 : A ④ 188-1 : B ⑤ 186-9 : A ⑥ 180 : A ⑦ 114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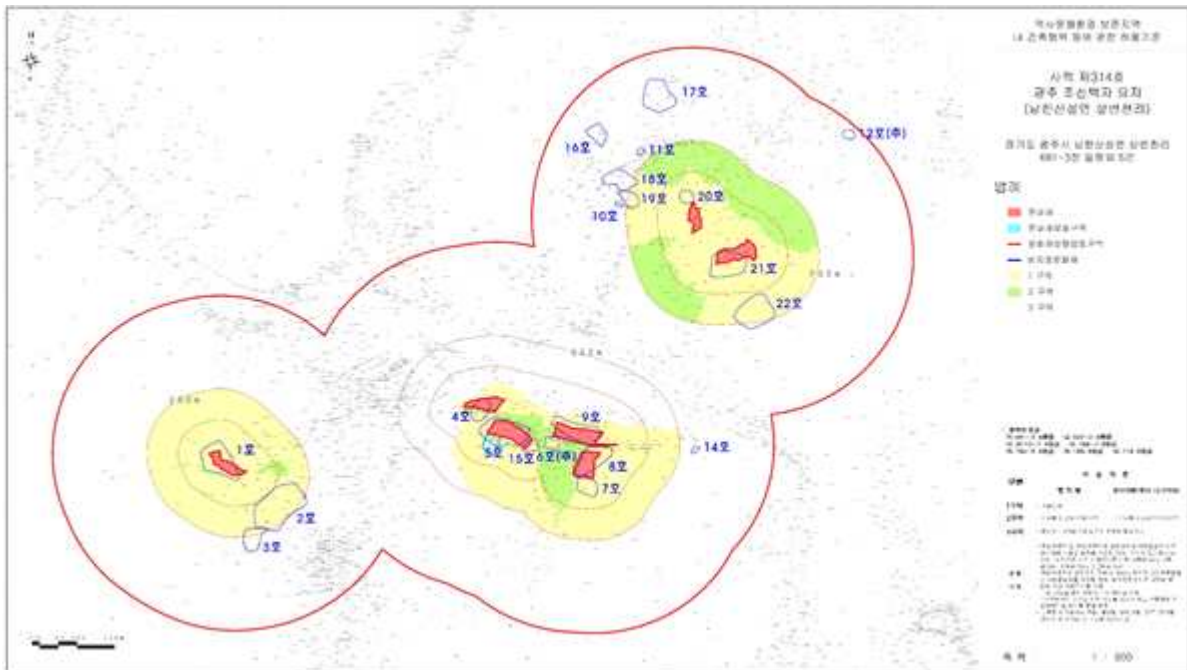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23) 중부면 상번천리 114 일원 외 6건

- 추가지정 : 상번천리 산 112-1외 1필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4,453㎡, 보호구역 추가지정 2,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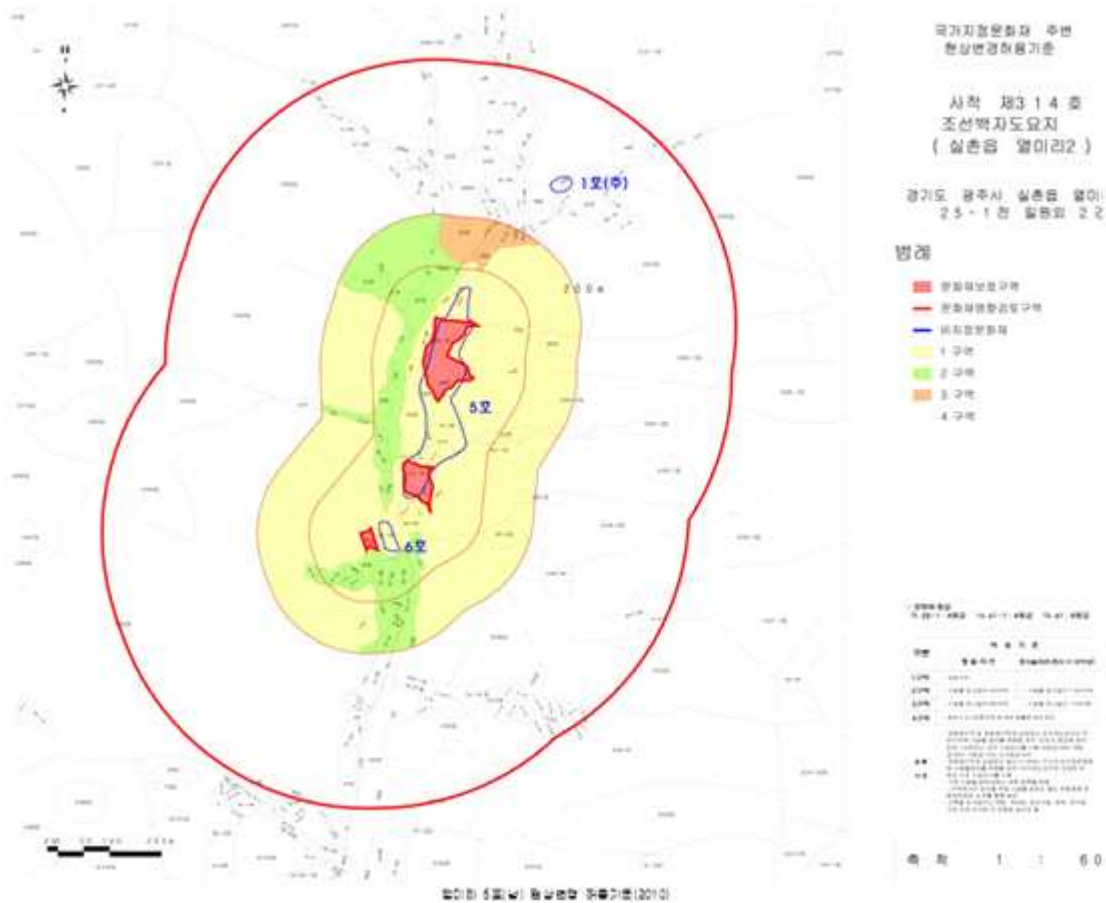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681-3 : A ② 522-2 : A ③ 산113-1 : A ④ 188-1 : B ⑤ 186-9 : A ⑥ 180 : A ⑦ 114 : A



3) 허용기준 번호 13)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 25-1 : A ② 61-1 : A ③ 61 : A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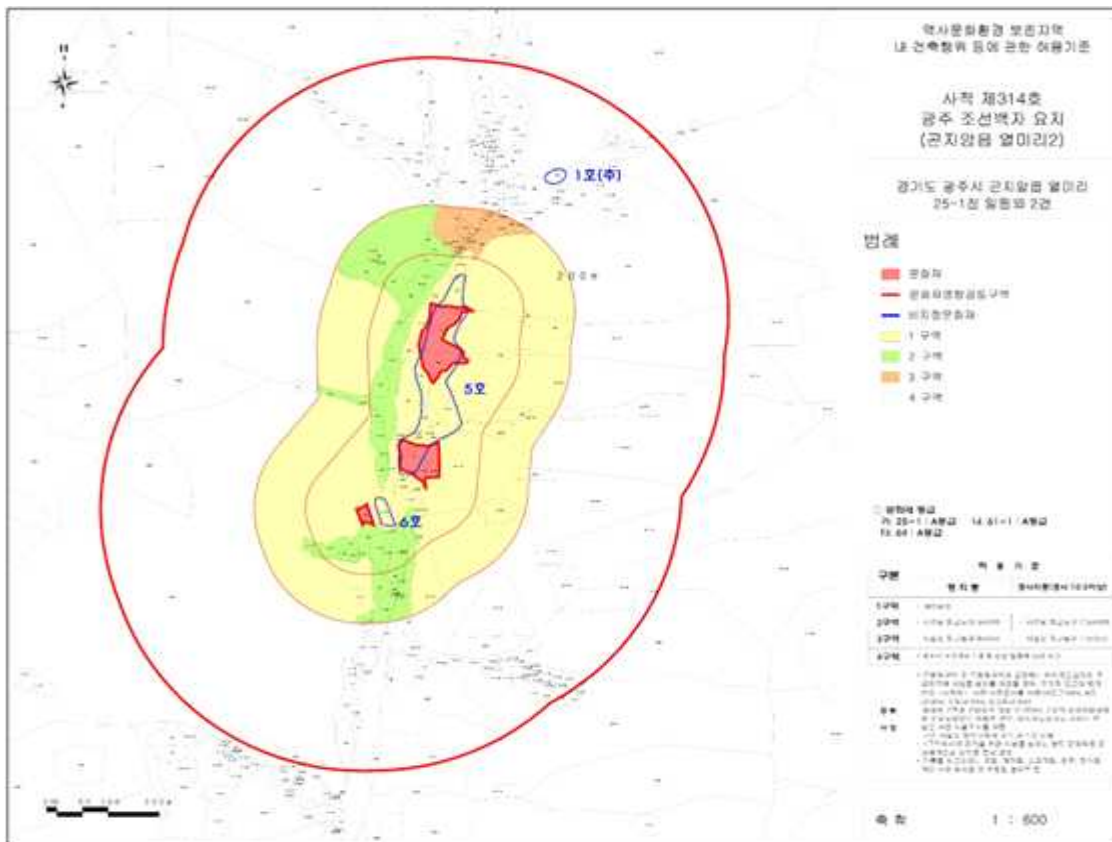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13)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 추가지정 : 곤지암읍 열미리 산59-5외 1필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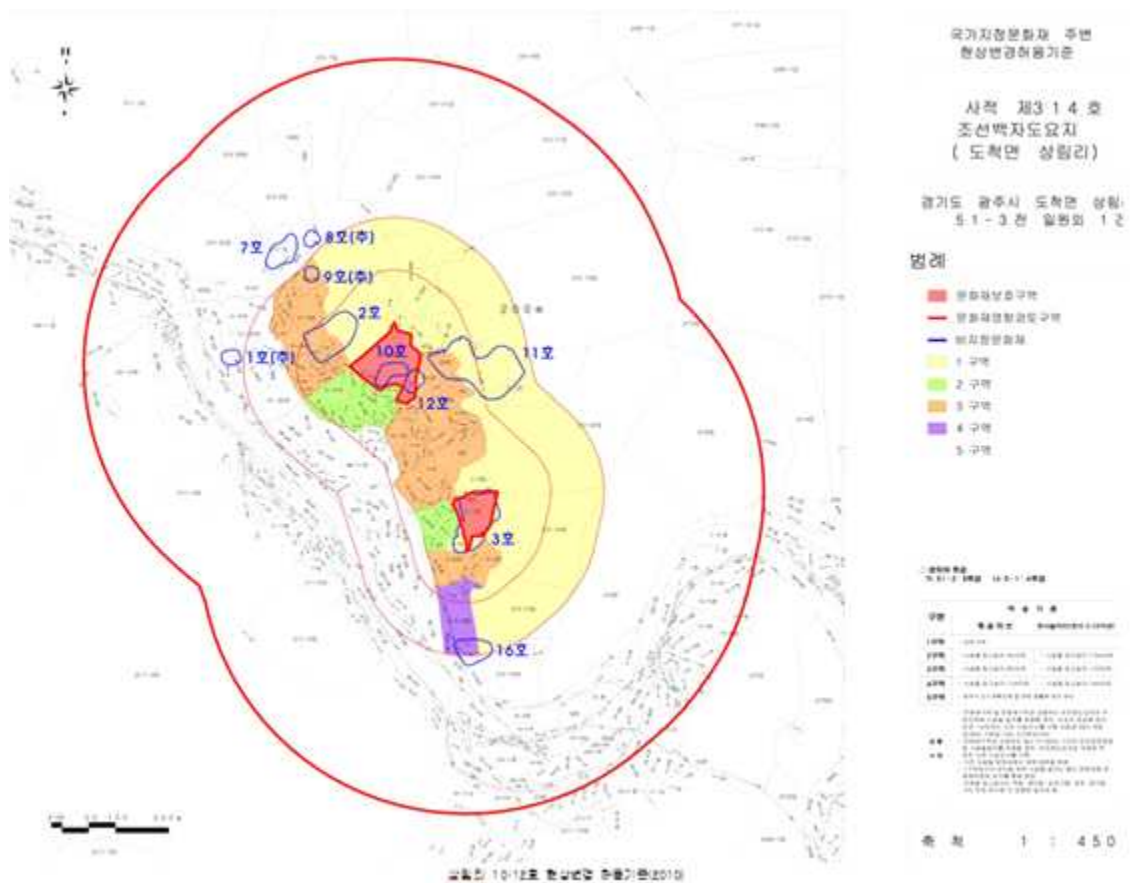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25-1 : A ② 61-1 : A ③ 64 : A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4) 허용기준 번호 6)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51-3 : B ② 5-1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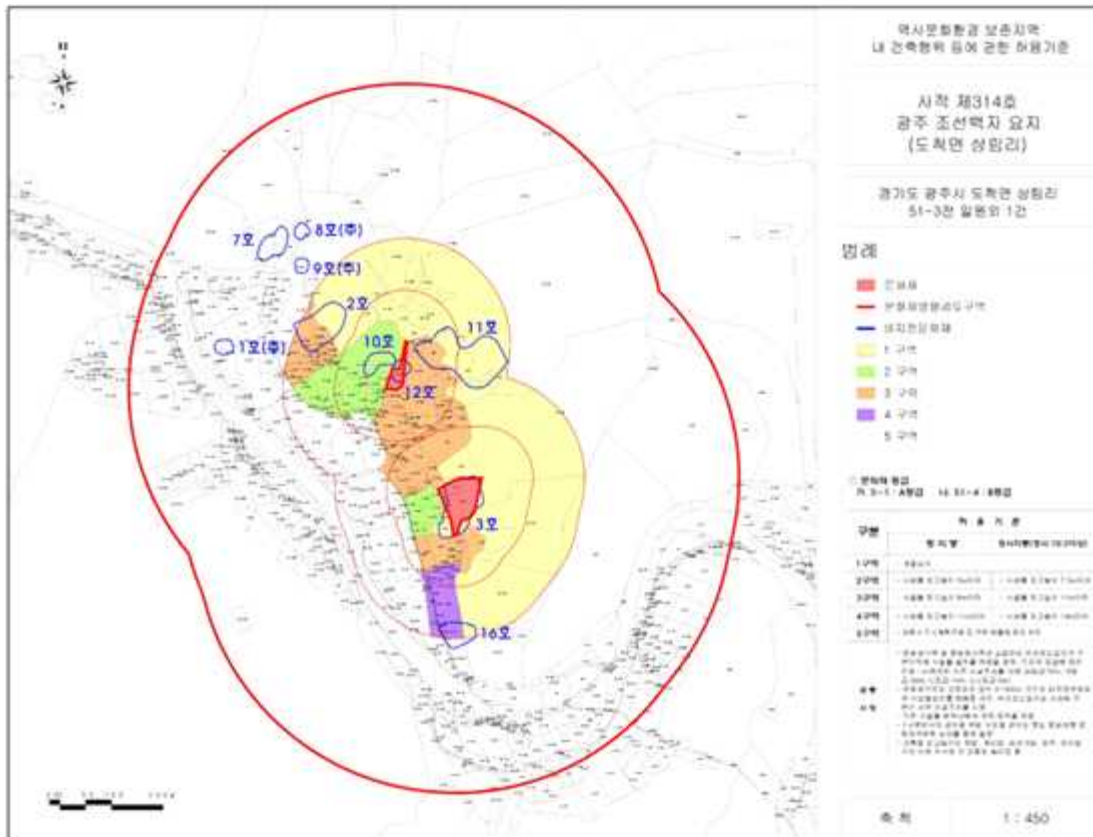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요지기준 축소))

6)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 해제 : 도척면 상림리 51-3 외 1필지(문화재구역 해제 8,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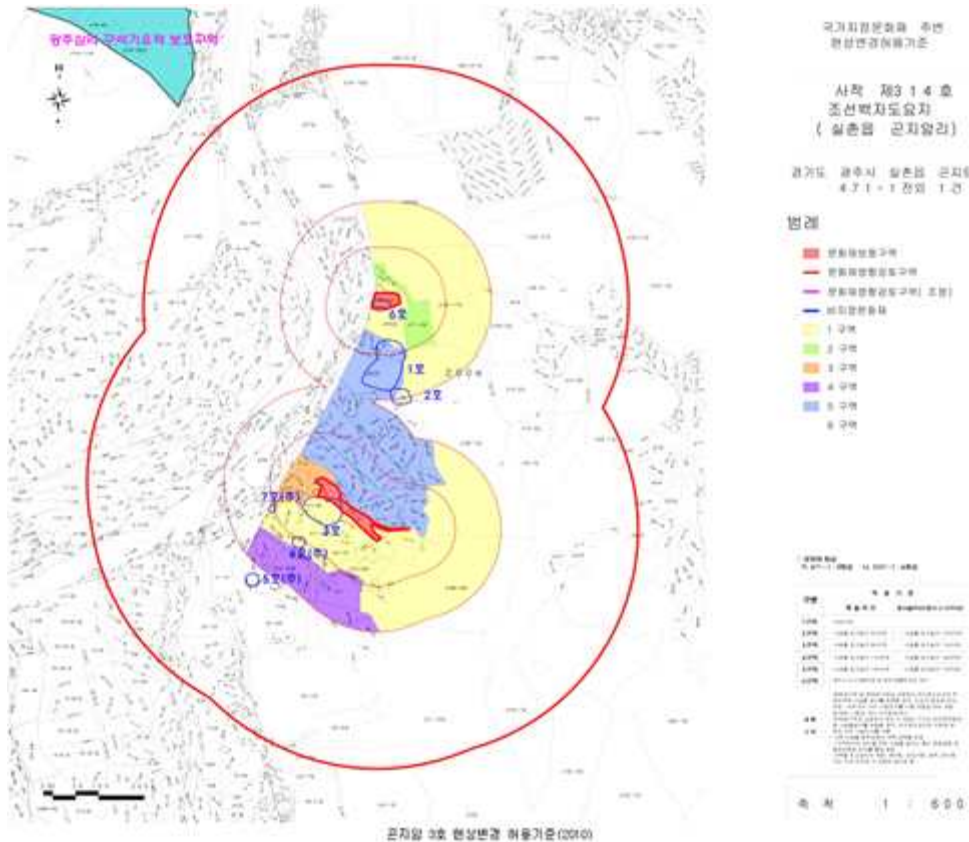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도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51-4 : B ② 5-1 : A



5) 허용기준 번호 8)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 외 1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6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471-1 : B ② 산47-1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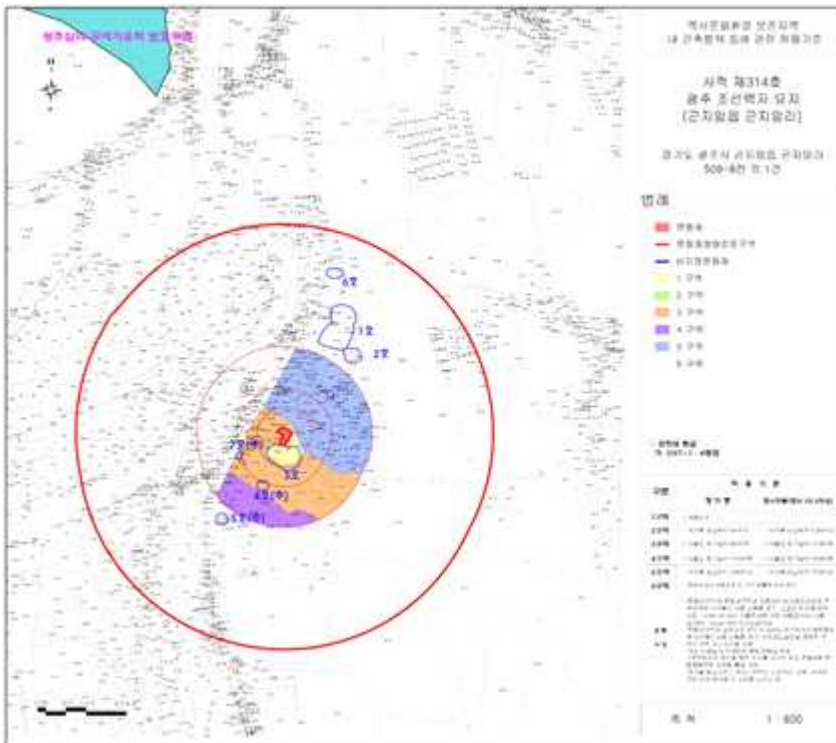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및 축소)

8)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

- 해제 :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문화재구역 해제 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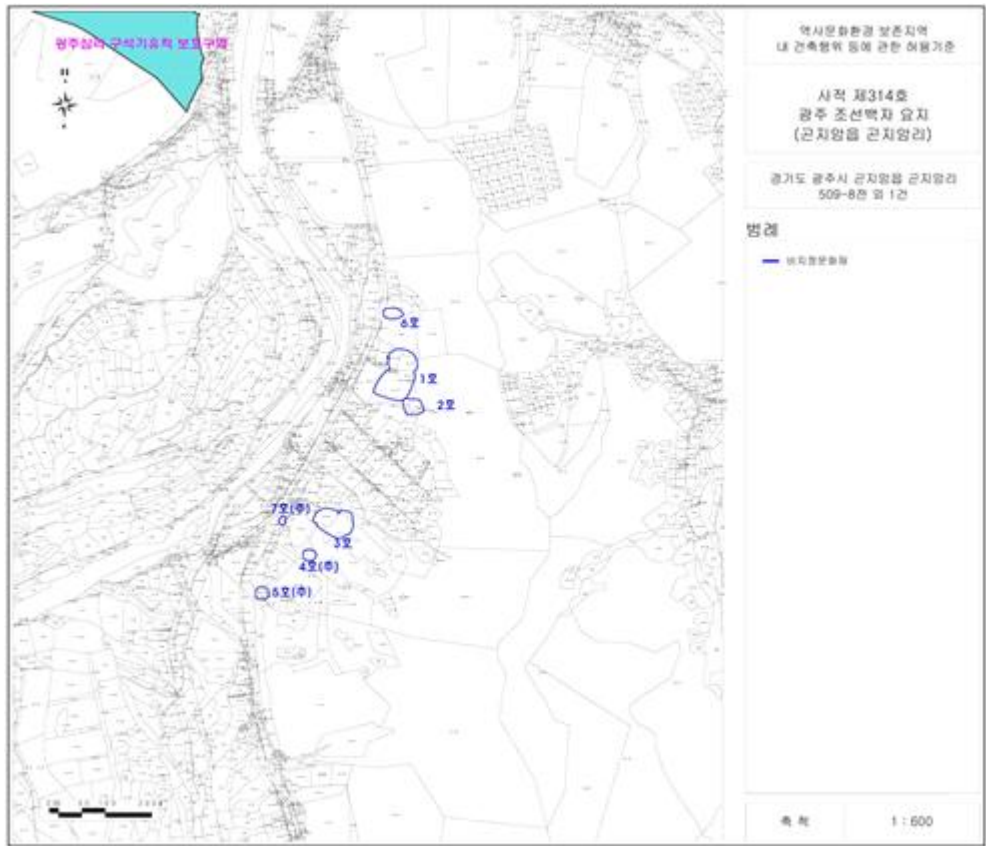
- 축소 :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의 필지(문화재구역 축소 3,692㎡)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6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 주민수렴 이의신청(안) : 문화재구역 해제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 8)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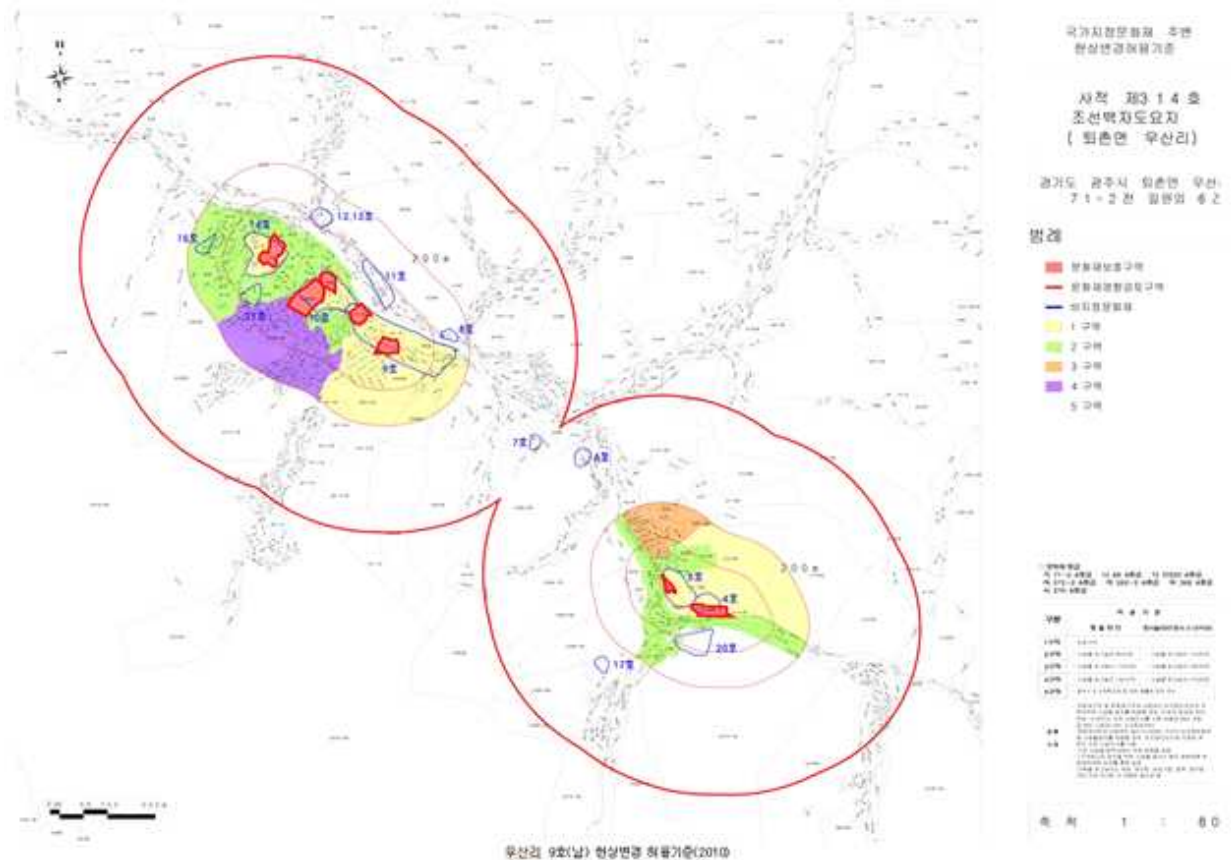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공통사항	<문화재구역 해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외>		



6) 허용기준 번호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6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71-2 : A ② 68 : A ③ 산320 : A ④ 272-2 : A ⑤ 262-2 : A ⑥ 368 : A ⑦ 370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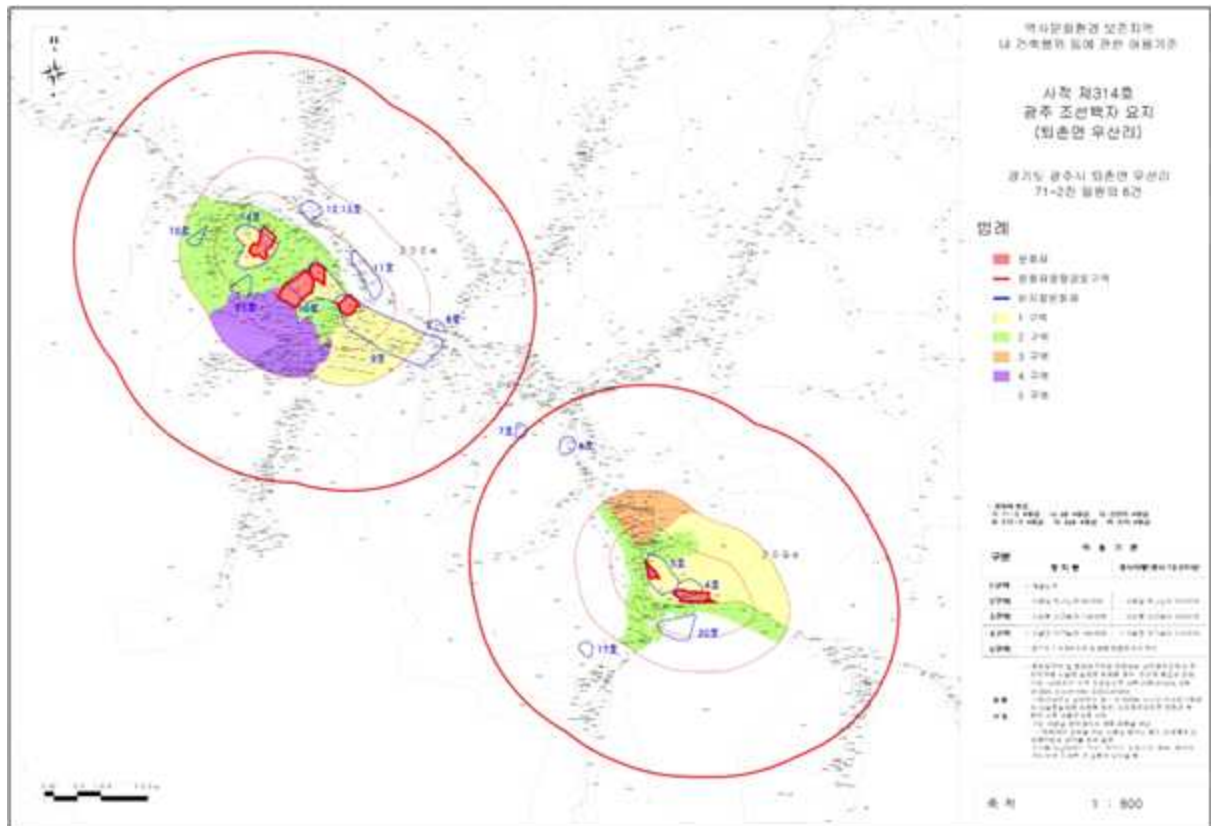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5건

- 해제 : 퇴촌면 우산리 262-1외 1필지(문화재구역 해제 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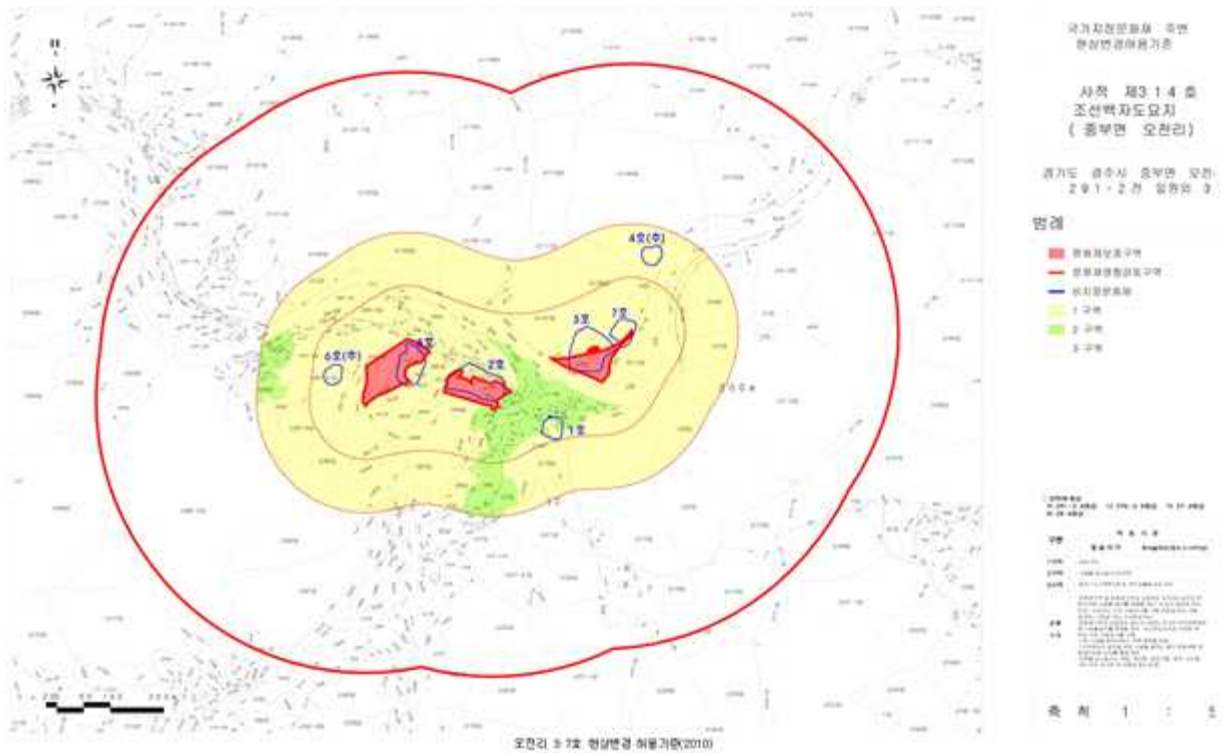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71-2 : A ② 68 : A ③ 산320 : A ④ 272-2 : A ⑤ 368 : A ⑥ 370 : A



7) 허용기준 번호 19) 중부면 오전리 270-3 일원 외 3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291-2 : A ② 270-3 : A ③ 27 : A ④ 28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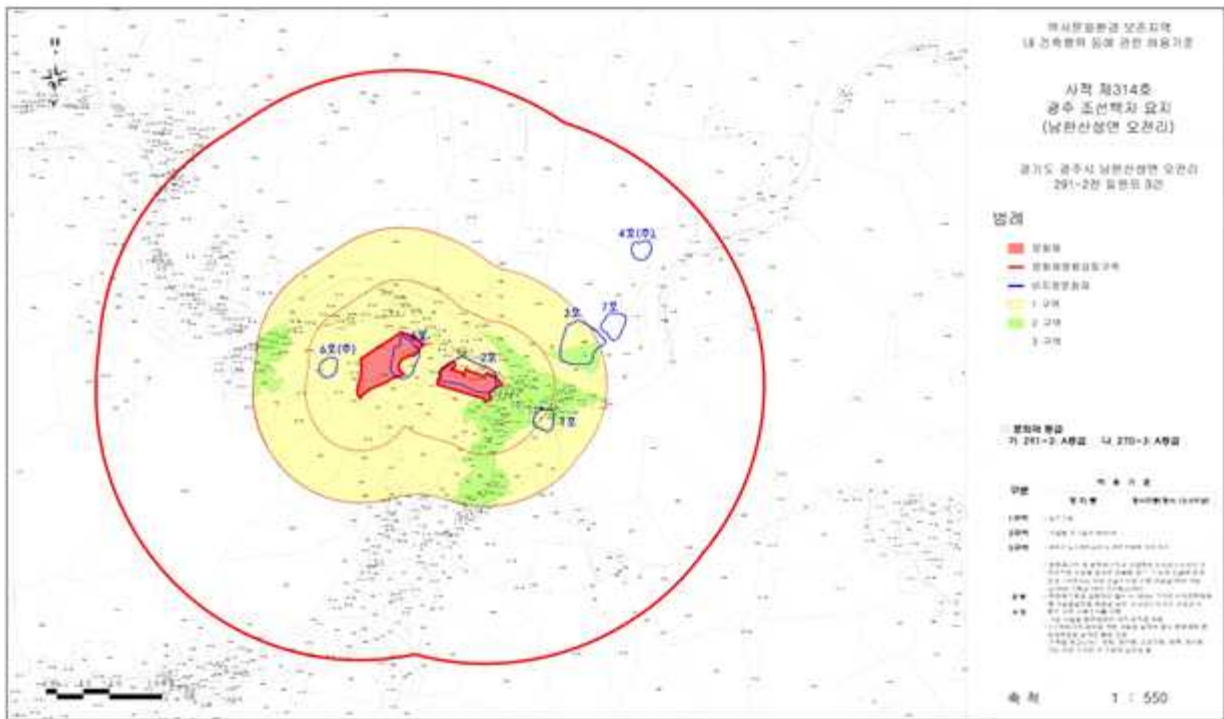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24) 남한산성면 오전리 270-3 외 1건

- 해제 : 남한산성면 오전리 27외 1필지(문화재구역 해제 3,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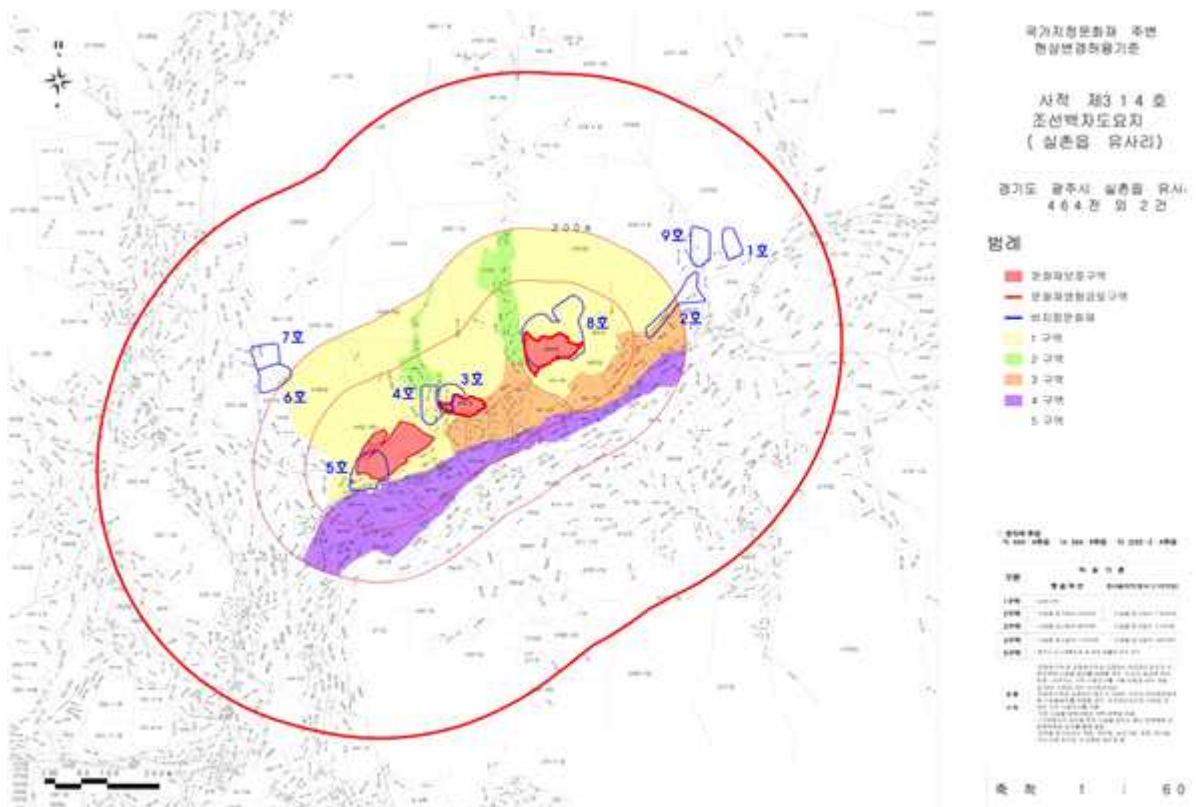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291-2 : A ② 270-3 : A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8) 허용기준 번호 14) 곤지암읍 유사리 366 일원 외 2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464 : A ② 366 : B ③ 산65-2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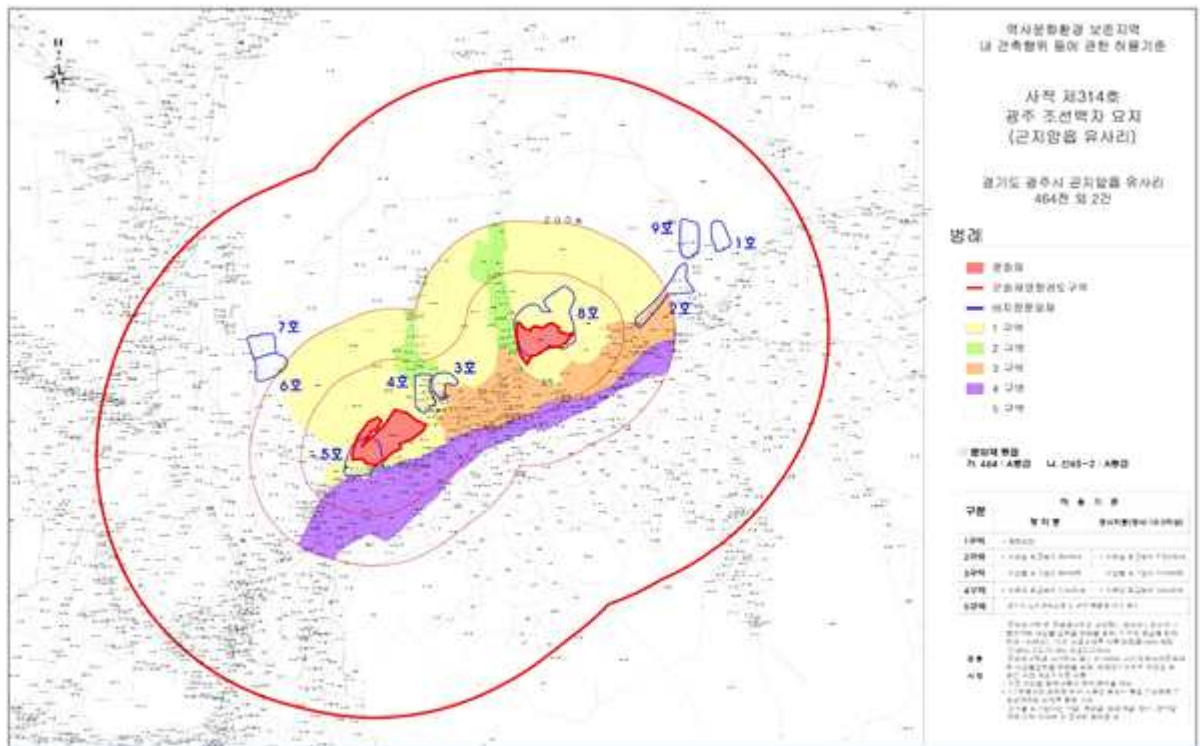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14) 곤지암읍 유사리 464 일원 외 1건

- 해제 : 곤지암읍 유사리 366 외 3필지(문화재구역 해제 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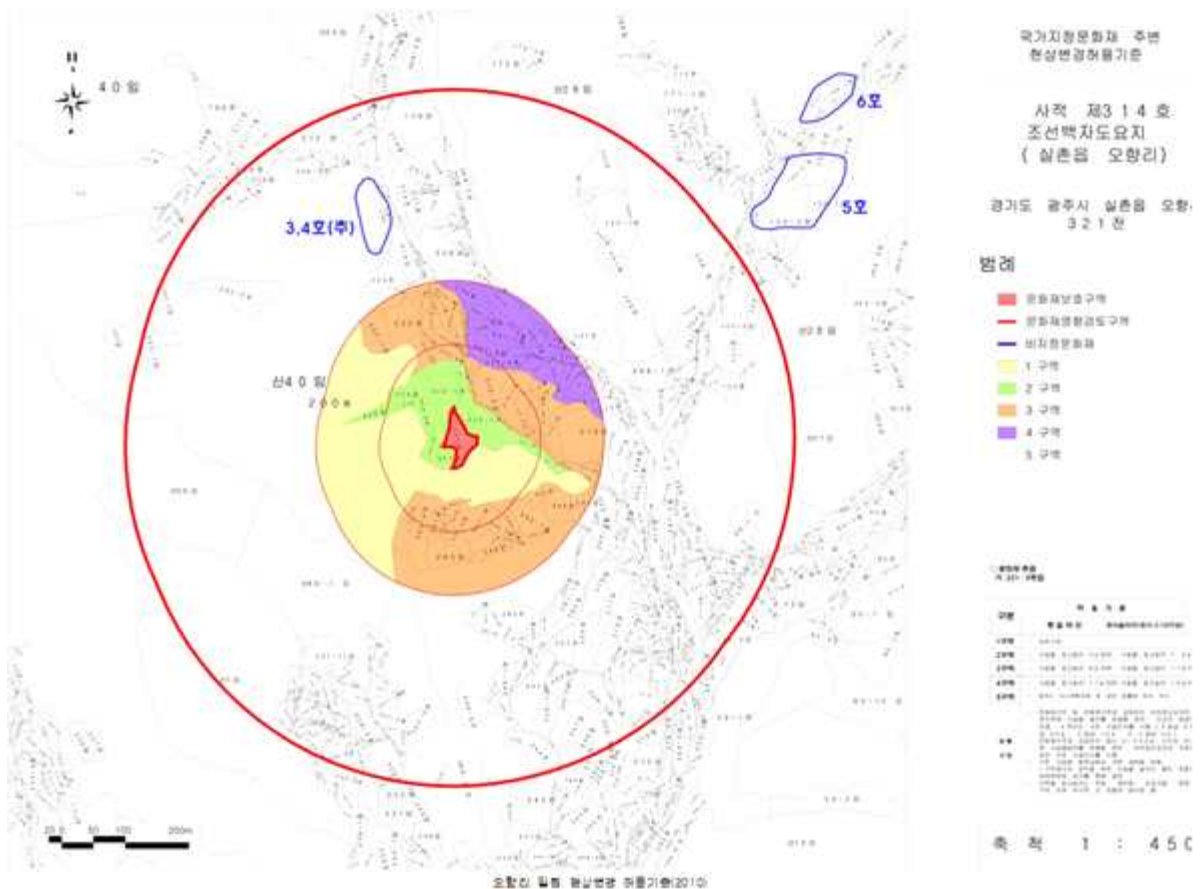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464 : A ② 산65-2 : A



9) 허용기준 번호 2) 곤지암읍 오향리 321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도요지등급)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321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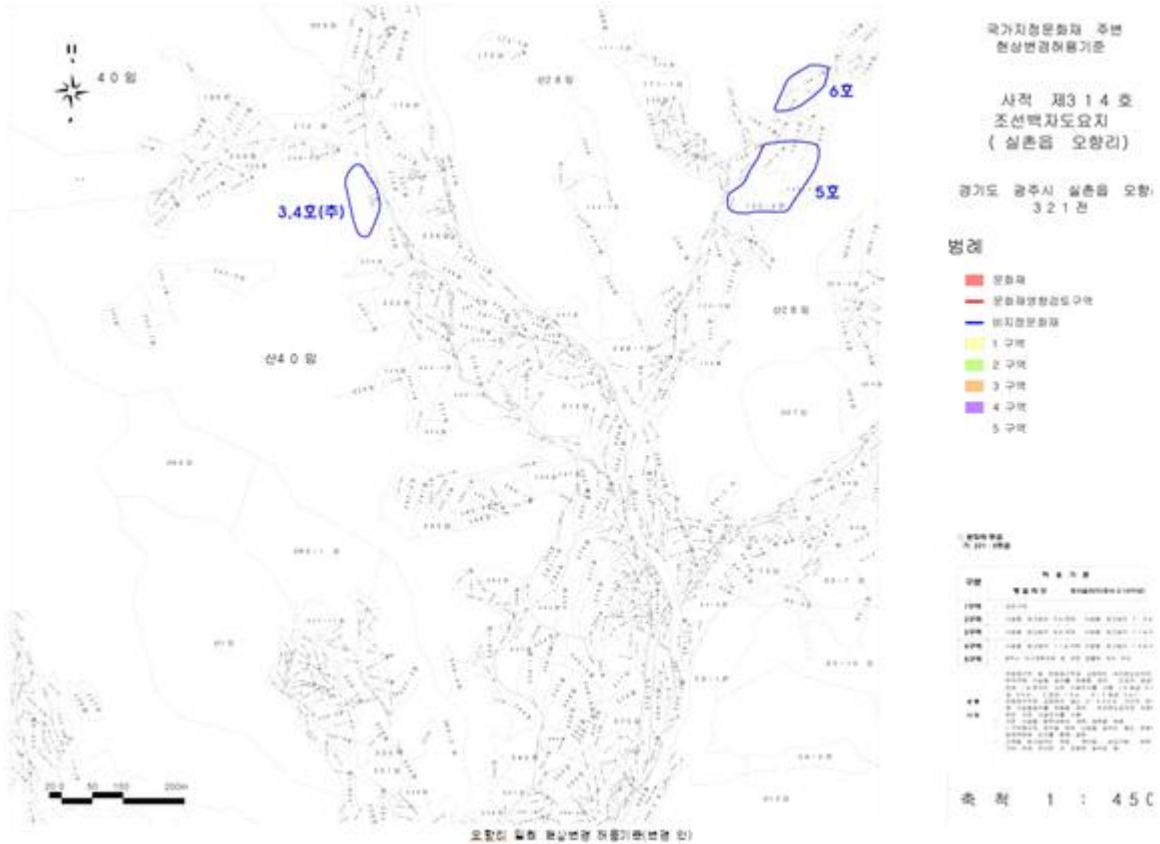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2) 곤지암읍 오향리 321

- 해제 : 곤지암읍 오향리 321(문화재구역 해제 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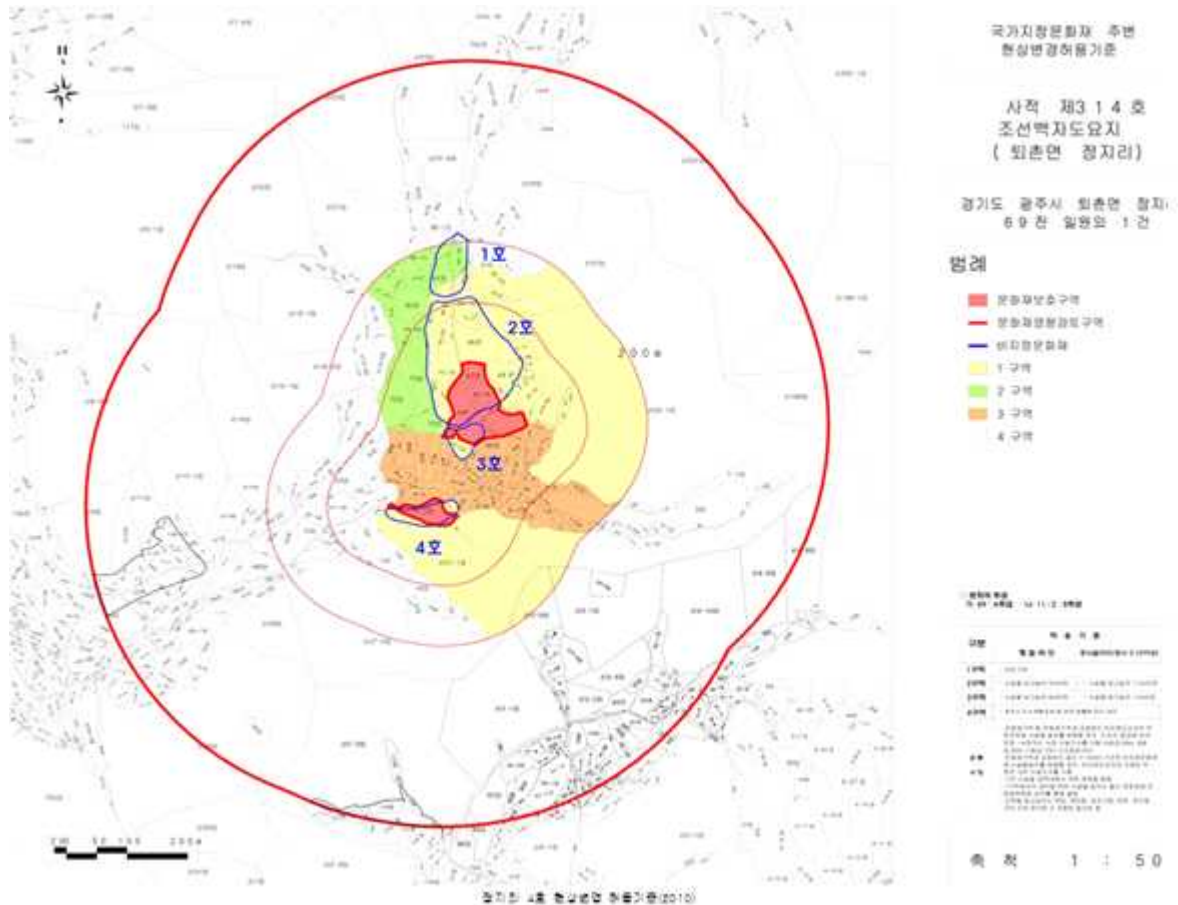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도요지등급)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공통사항	<문화재구역 해제로 허용기준 제외>		



10) 허용기준 번호 11) 퇴촌면 정지리 69 일원 외 1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도요지등급 ① 69 : A ② 11-2 : B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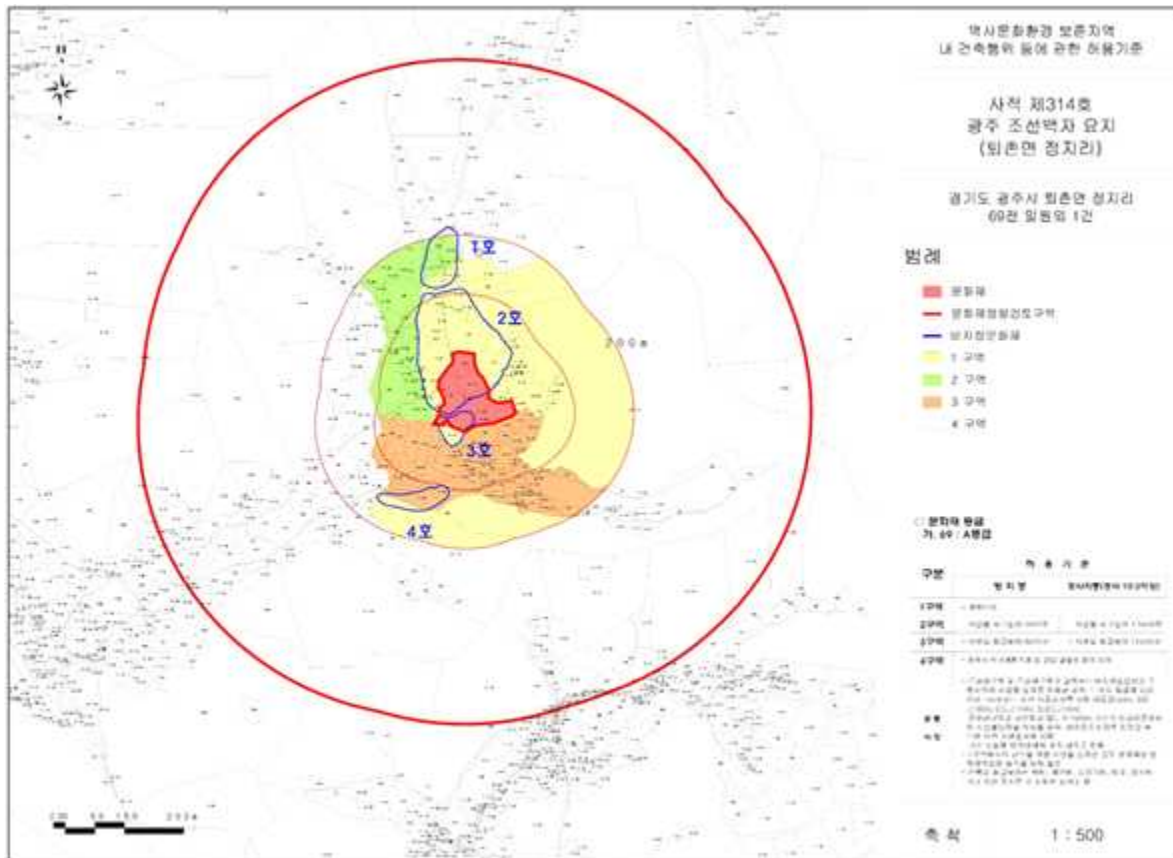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11) 퇴촌면 정지리 69

- 해제 : 퇴촌면 정지리 11-2(문화재구역 해제 2,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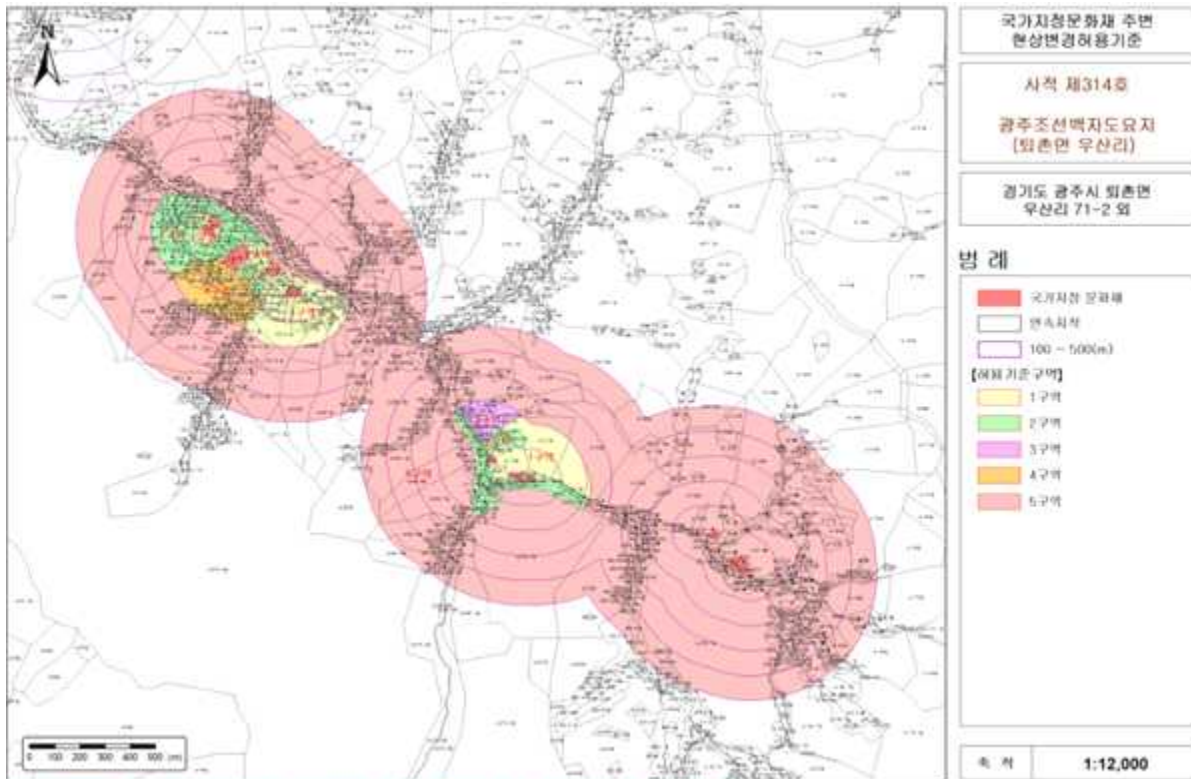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69 : A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1) 허용기준 번호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6건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71-2 : A ② 68 : A ③ 산320 : A ④ 272-2 : A ⑤ 262-2 : A ⑥ 368 : A ⑦ 370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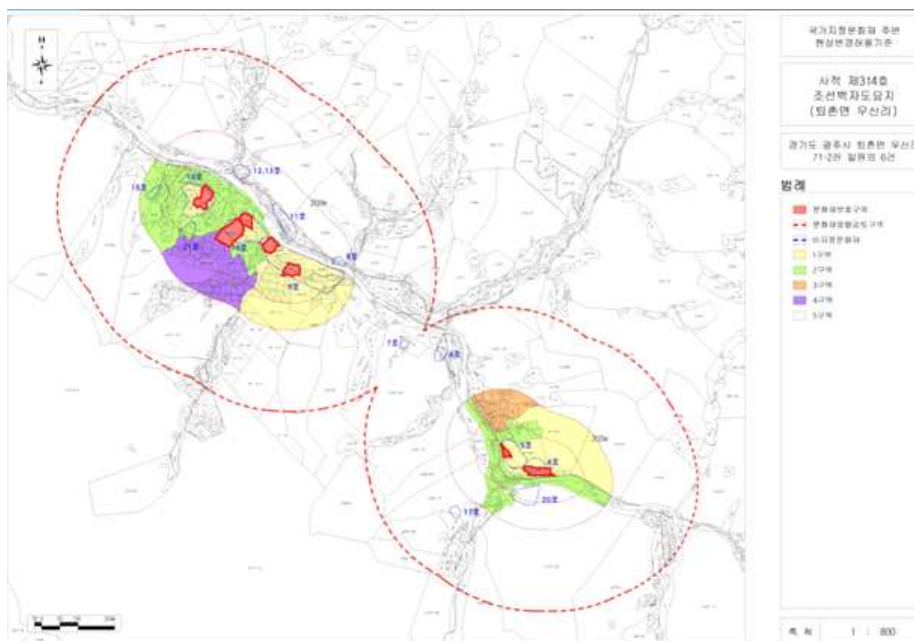
○ 광주시 제출(안)(유형 : 문화재구역 해제)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6건

- 해제 :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문화재구역 해제 5,980㎡)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 (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청고시 제2021-42호(2021.4.12..)로 해제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도요지등급 ① 71-2 : A ② 68 : A ③ 산320 : A ④ 272-2 : A ⑤ 262-2 : A ⑥ 368 : A ⑦ 370 : A



라. 참고자료

- <별첨 1>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1부.
-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 <별첨 3>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 제2021-21호)
- <별첨 4>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 제2021-42호)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조사일		조사자	직급 / 이름
연락처	-	이재원	0

종별	사적	번호	314	문화재명	광주조선 백자요지	지정일자	1985.11.07	관리단체	광주시
소재지	군지할음, 군지할리 509-8전 외 276필지				지정면적 (㎡)	407,660	보호구역 면적(㎡)		

구분	조 사 내 용
----	---------

1. 현황조사

유적현황 (참고 1)	문화재 지정구역 내 경작지, 입야		사진 1~5
주변현황 (참고 1)	0~30M 이내	입야, 2층 공장, 다가구 주택	
	30~50M 이내	입야, 1·2층 공장, 1층 다가구 주택	
	50M 이상	입야, 1·2층 공장 및 창고 건물, 4층 연립 빌라	
시설현황	사적비 있음, 안내판 없음		
학습조사 (참고 1)	조사 연도	2014~15년(3차 조사), 2018년(유증지역)	샷트 4~5, 사진 6~10
	증오 유구	가마 1기, 폐기장 2기	
	증오 유물	'大和' 명 화형접시, 버루, 황토편	
	비고	유증지역 정밀시굴조사(일부 미조사)	

2. 보존관리 계획

관리계획	
정비계획	
주변계획	

3. 적정성 검토의견

의견수렴 (참고 2-3)	2020년 적정성 검토 결과 '지정 축소'	사진 11~15
관리단체 검토의견		

<별첨 1>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전라남도 (연락처 : 010-		

의견내용 : 별지

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04월 8 일

신청인
대표

광 주 시 장 귀하

비고	기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신 청 인 :

경유기관 :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보호구역해제

신청인 :

경 유 자 : 문화재보존국장

처분내용 : 2021.02.26. 문화재청고시 제2021-17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조정

처분사유 :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구역은 유구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축소하고, 공방지 숲가마 등의 유구만 발견되거나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지역은 정주성 향상을 위해 해제한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1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17조

신청의견 : 곤지암리 산47-1외 1번지(사적 제314호)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취소)한다.

1. 신청취지

① 신청인은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12-1 전 11,722㎡ 등 일대 28,543㎡ (8,640평)를 매입하여 명실공히 서울 등 수도권의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8년이라는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근처 500미터 이내에 1985. 11. 7. 문화재 사적 제314호로 지정된 「광주조선백자 요지」가 있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② 이 사적지는 최초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동 1읍 6개면 약 407,660㎡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가마터를 기준으로 「광주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되었으나 그중 (8)실촌을 근지암리 산47-1외 1 사적지는 도자기가마터가 발견되지 않았고 도자파편도 출토되지 않자 2010. 11. 26. 「광주조선백자요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5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5년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 정비를 위한 3차 정밀 시발굴조사(신청인 참석)결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출토된 가마(유구)는 없었고 폐기물퇴적 2기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고 잔존 가능성이 낮아 '하급' 판정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③ 그 당시 평가자의 평가의견을 보면 등급은 최하위 등급인 “하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의견에서는 ‘폐기물퇴적으로 미루어 16세기의 가마유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라고 하였을에도 그 말미에 ‘유구가 확인된 구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한 의견은 평가자들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전문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헌법적 가치아래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여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 자체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위반한 매우 잘못된 처분으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④ 또한 2018년도에 광주도자박물관에서 신청인의 사업부지 내에 도자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있는지를 발굴하여 만약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의 확인(행정처분)에 따라 신청인도 참석하여 2018년 6월경부터 신청인 소유의 사업부지에 12개소를 정밀시발굴 조사하였으나 단 한 점의 조선백자 요지나 유물(도자파편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공익추구 보다는 신청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

에 의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사익침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사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그 주변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수많은 공장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신청인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서울 및 광주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필요성 및 상당성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오니 보호구역 현장을 정확히 조사 심의하시어 신청인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사업계획

① 신청인은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수도권 전철이 확장되고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요원하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75세가 넘은 나이에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12-1 전 11,722㎡ 등 총 28,543㎡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4개동 800세대를 건축하여 서민들에게 임대하고자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신청인의 사업부지 일대는 곤지암전철역, 버스터미널이 도로로 5-10분 거리이고 또한 사업부지 근처에 쌍용아파트, 상주노블리제아파트 및 곤지암고등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곤지암도자공원과 광주도자박물관 등이 있으므로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이를 해제한 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여 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가 더 크고 광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

① 사적 제314호 조선백자요지 중 곤지암리 산47-1번지는 개인 소유의 전 및 임야로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아무런 보전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그 주변에 공장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사적지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민간인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안내판, 표지석사진 및 토지대장 기재출)

②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었다면 이처럼 35년 동안 방치되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보존가치가 희박하므로 이를 방치하여 현재는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③ 2015년 3차 정밀시발굴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조선백자 가마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적지 인근 신청인의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조선백자 가마터(유구)나 도자파편 등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④ 그리고 사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조선백자 유물(파편)을 보면 청화백자는 찾을 수 없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사기 그릇으로서 그 시대는 조선 전기라기보다는 후기의 서민들이 양은이나 사기 등을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그 때에 사용하던 생활사기 등을 폐기처분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⑤ 뿐만 아니라 이 사적지 제314호(곤지암리 산47-1)는 문화재(사적지)로 지정되었지만 35년간 방치되다가 2015년도 발굴조사 결과 조선백자요지 가마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정 가마 1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실제 가마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사적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정 가마 1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아래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법상의 이익형량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

로서 이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사유재산권 제도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⑥ 그리고 광주도자박물관의 []가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후 '사업부지 내에 광주조선백자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발굴 조사하여 유물이나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의견으로 처리해 주겠다.' 라고 확인(행정처분)하므로 2018년 6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하여 12개소를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유물이나 유적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의 발굴조사 의견서)

⑦ 그렇다면 이는 신청인에 대한 행정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는 행정처분(확인)으로서 유효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행위는 선량한 일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4.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취소)

① 2021. 2. 26.자 문화재청 고시제2021-17호를 보면 "정밀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으로서 유구(가마)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축소하고, 공방지 숲가마 등의 유구만 발견되거나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한다." 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② 그렇다면 신청인의 사업부지 내에서는 정밀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으로서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자파편 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③ 실상이 이와 같다면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재구역 축소 및 해제 고시에서 신청인의 사업부지 인근 문화재구역만을 제외하고 심의하여 고시한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합성, 적정성 및 비례성 등을 위반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되거나

무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결 론

앞서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 제314호(근지암리 산47-1)는 35년 동안 방치된 상태여서 사적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하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주변은 공장 및 주거 밀집지역이므로 하루빨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신청인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암망합니다.

2021. 04. .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 사전기초조사 보고서

조사일		조사자	직급 / 이름
연락처	-	이대일	0

종별	사적	번호	314	문화재명	광주조선 박자요지	지정일자	1985.11.07	관리단체	광주시
소재지	근지앞을, 근지앞리 509-8전 로 276필지				지정면적 (㎡)	407,660	보호구역 면적(㎡)		

구분	조 사 내 용
----	---------

1. 현황조사

유적현황 (참고 1)	문화재 지정구역 내 경작지, 입야		사진 1~5
주변현황 (참고 1)	0~30M 이내	입야, 2층 공장, 다가구 주택	
	30~50M 이내	입야, 1·2층 공장, 1층 다가구 주택	
	50M 이상	입야, 1·2층 공장 및 창고 건물, 4층 연립 빌라	
시설현황	사적비 있음, 안내판 없음		
학습조사 (참고 1)	조사 연도	2014~15년(3차 조사), 2018년(유증지역)	샷트 4~5, 사진 6~10
	증요 유구	가마 1기, 폐기장 2기	
	증요 유물	'大和' 명 화형점시, 벼루, 향로편	
	비고	유증지역 정밀시굴조사(일부 미조사)	

2. 보존관리 계획

관리계획	
정비계획	
주변계획	

3. 적정성 검토의견

의견수렴 (참고 2-3)	2020년 적정성 검토 결과 '지정 축소'	사진 11~15
관리단체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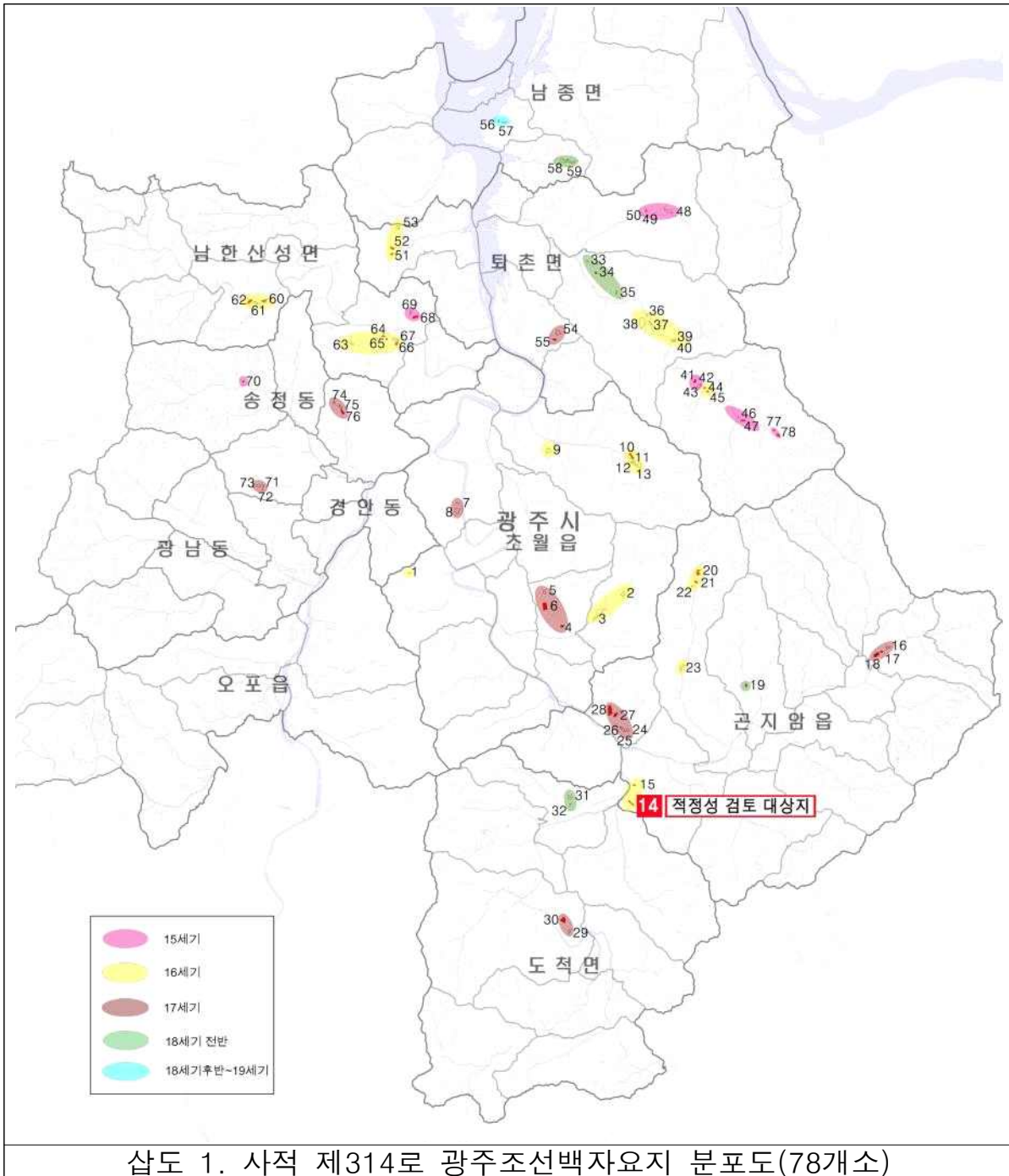
참고자료 1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임 · 509-8전(314-14)



삽도 1.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분포도(78개소)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광주시는 도성의 외관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서부 및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 광주시의 중앙으로는 경안천이 동-서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곤지암천과 노곡천 등 여러 하천들이 시 전체에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문형산(499m), 동쪽으로는 무갑산(578m), 앵자봉(667m), 관산(555m), 성남시와 연결되어 있는 불곡산(344m) 등 200~650m 내외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주로 한강에 합류하는 경안천 주변과 무갑산과 앵자봉, 관산 등 땔나무가 풍부한 산의 완만한 경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 조선시대 광주는 세종 때에 진을 두어 여주목, 이천부, 양근군, 지평, 음죽, 양지, 죽산 및 과천의 제현이 광주 경관직으로서 중앙 관할에 속하였다. 세조 원년(1455년)에는 좌우전후 보례에 따라서 광주는 좌보가 되고, 우보 전주, 전보 수원, 후보 양주와 아울러 서울을 지키는 근기사진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 광주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등재된 네 곳의 상품(上品) 자기소(磁器所) 중 한 곳이 위치할 만큼 높은 수준의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백자의 원료인 백토가 매장되어 있었다.

4. 연혁 및 특징

- 경기도 광주는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소용되는 자기를 전담 생산하기 위해 조선시대 궁궐의 음식 등을 담당하던 司饗院의分院(이하 관요)이 1467년 경에 설치된 곳이다.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의하면, 관요는 땔나무 확보를 위해 10년마다 가마를 옮겨가며 자기를 생산하였는데, 현재 광주시 전역에 320여개의 흔적이 남아 있다.
- 1985년 11월에 78개소를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로 지정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적과 달리 사적 78개소가 하나의 지정번호로 광주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지를 유물의 분포 양상을 토대로 필지 단위를 기본으로 지정하였다.
- 이후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물산포 범위와 사적지정 범위가 불일치하여 사적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적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 78개소 중의 하나인 곤지암리 산47-1임·509-8전은 감투봉(206m)과 황씨봉산(263.4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지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과 인접해서는 곤지암읍에서 도척면으로 이어지는 98번 지방도로와 노곡천이 있다.

5. 지정 축소 근거기준

-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정밀시굴조사 결과, 지정구역의 북서쪽 경계부분에서 가마와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8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유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삽도 4~5, 사진 6~10>. 2차례의 현장실사 결과 유구가 북서쪽 경계부분에서만 잔존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곤지암리 3호)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에서 북동쪽으로 10m까지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참고자료 2(사진 13)>. 2020년 2차 적정성 검토에서도 '지정 축소' 의견이 제시되었음<참고자료 2(사진 15)>

■ 문화재 지정구역 현황사진



사진 1. 항공사진



사진 2. 전경 (2018년)



사진3. 북쪽(0~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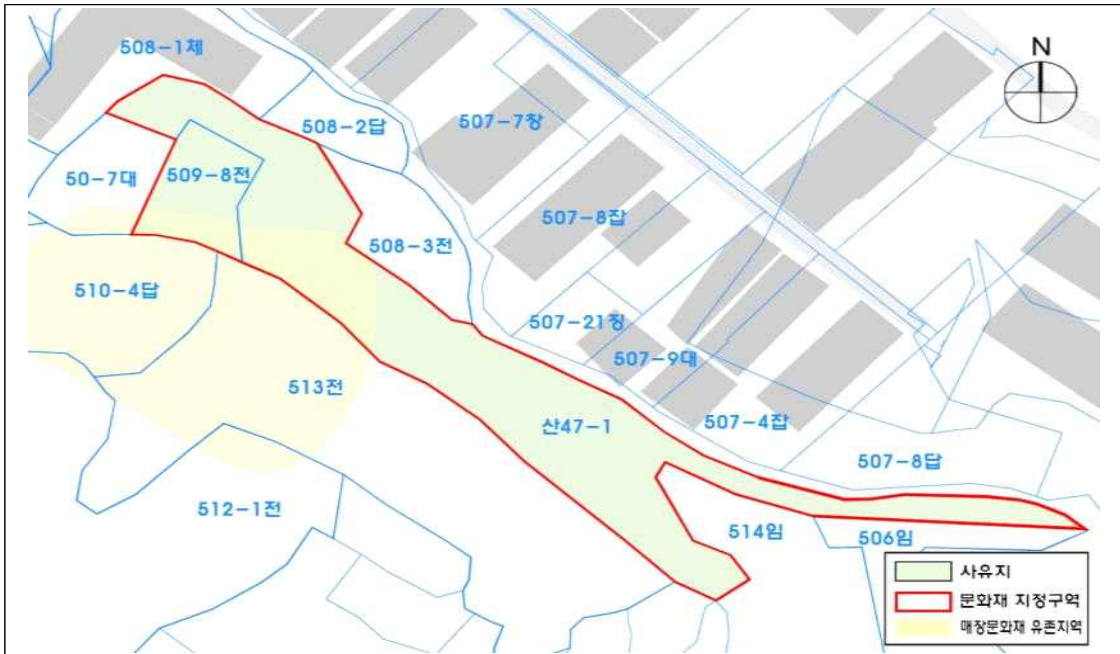


사진 4. 서쪽(30~50M)



사진 5. 북쪽(5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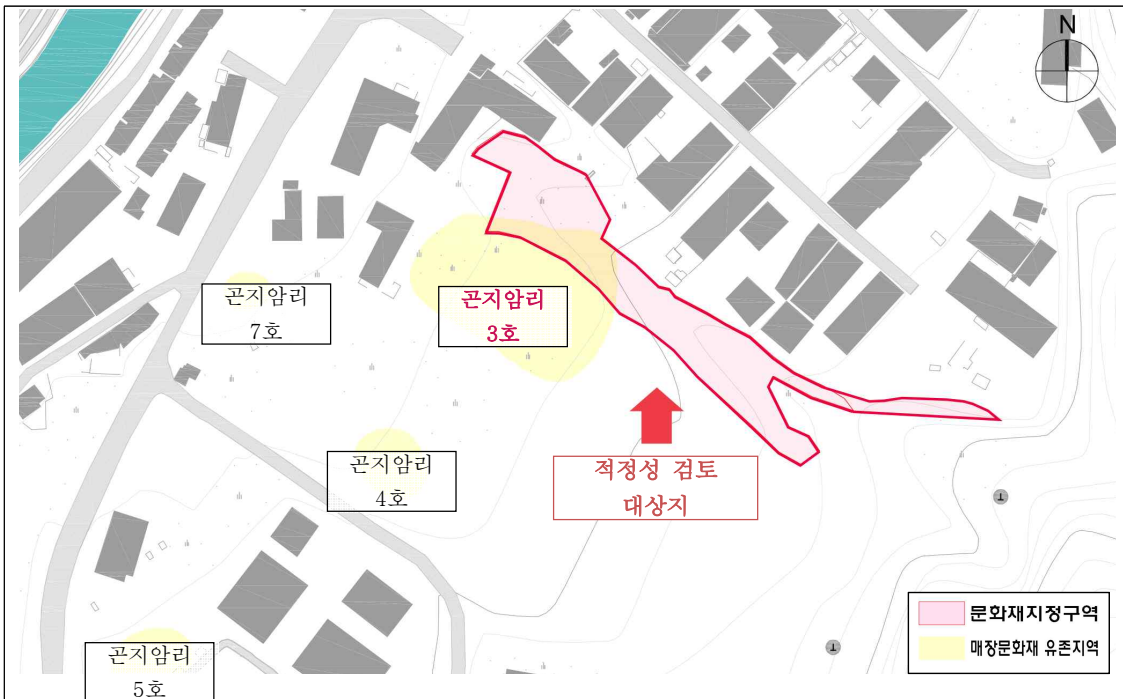
■ 문화재 지정구역 지번현황



삽도 2. 문화재 지정구역 지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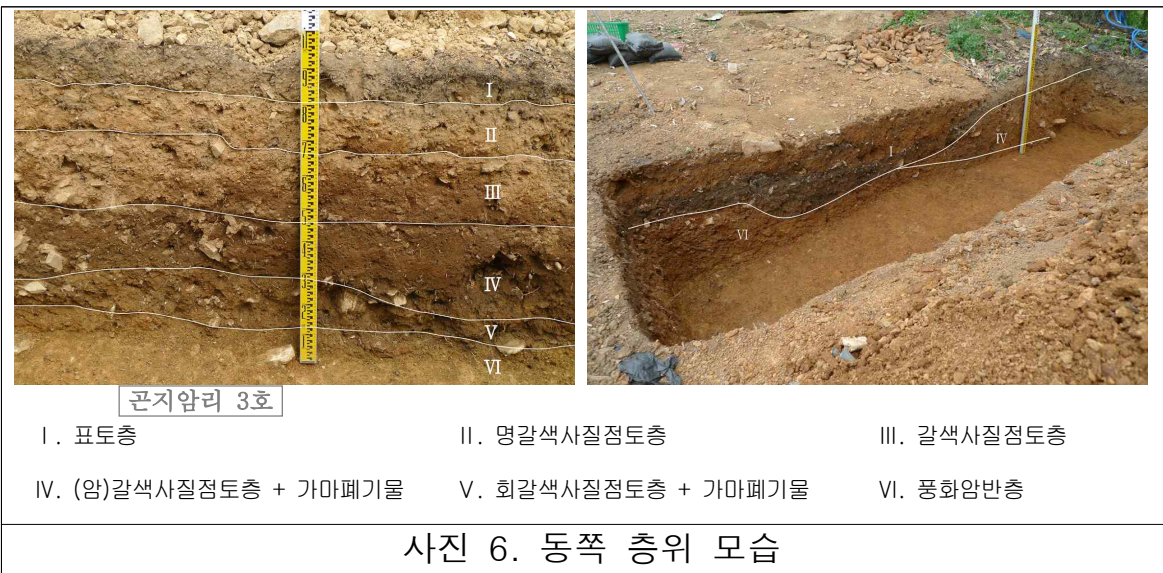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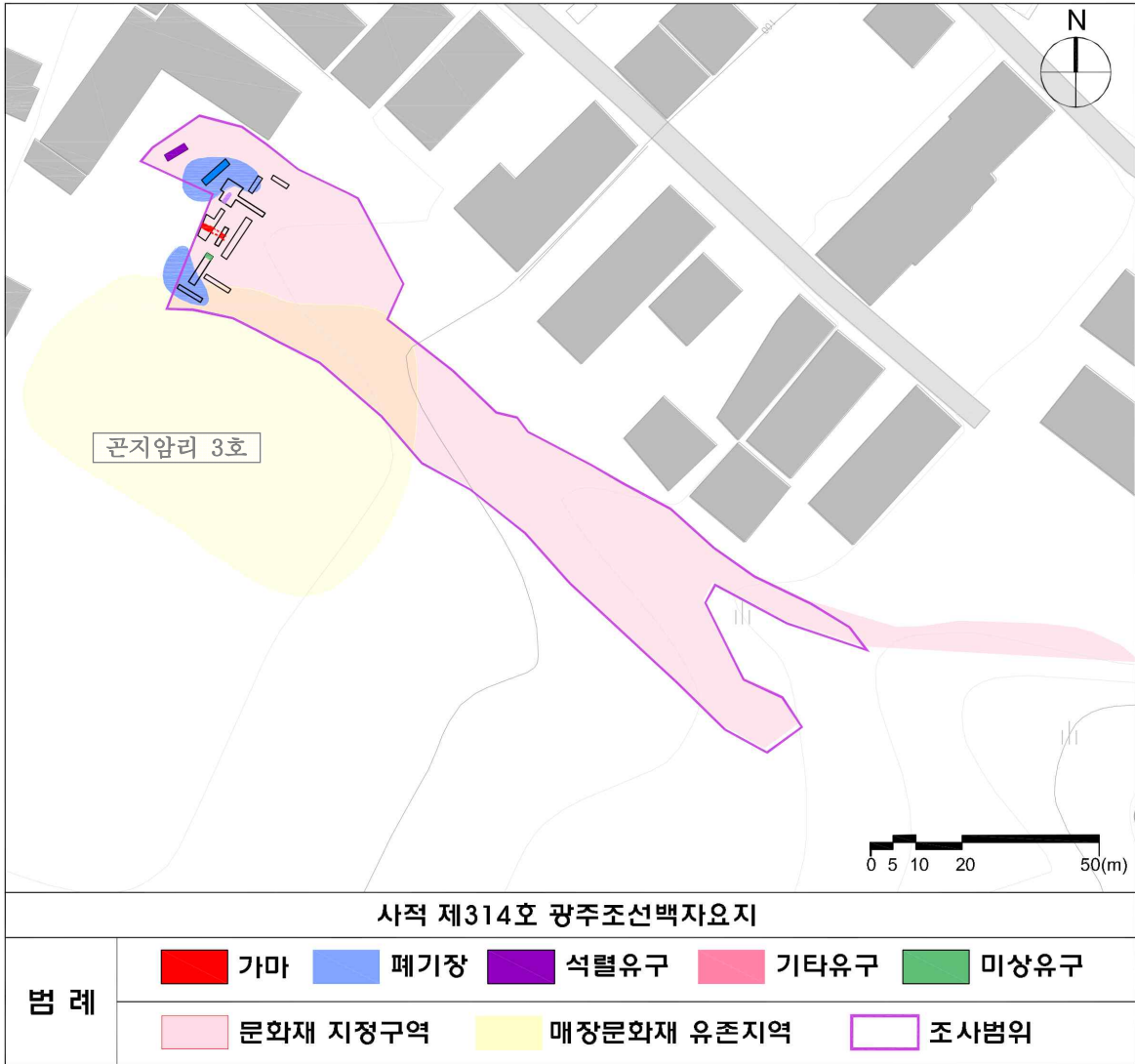
지번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구역 총면적
509-8전	605m ²	605m ²	
산47-1임	6,545m ²	3,897m ²	4,502m ²

■ 문화재 지정구역(적정성 검토 대상지)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



삽도 3. 문화재 지정구역 및 곤지암리 3호(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

■ 문화재 지정구역 내 유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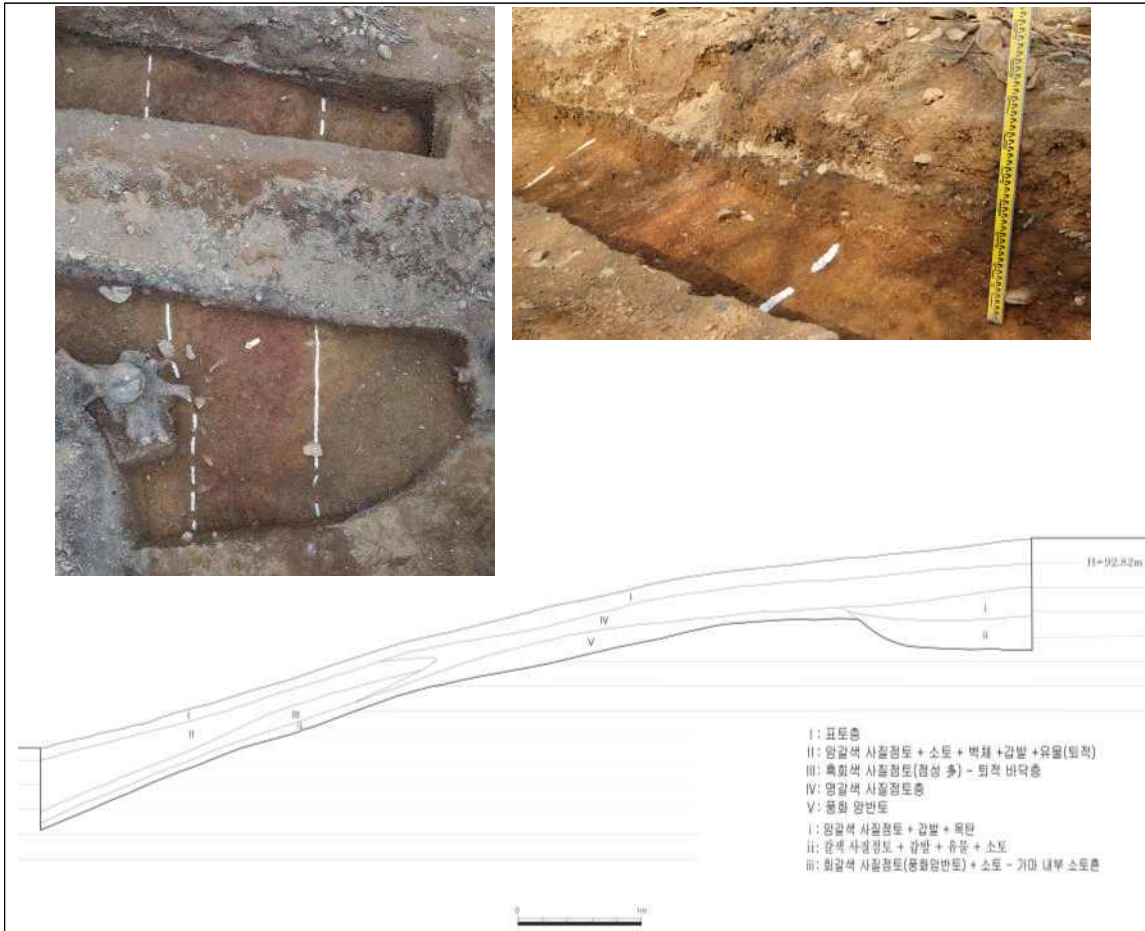


사진 7. 가마 및 토층 / 삽도5. 남쪽 층위



사진 8. 석렬유구 노출 모습(左) 및 층위(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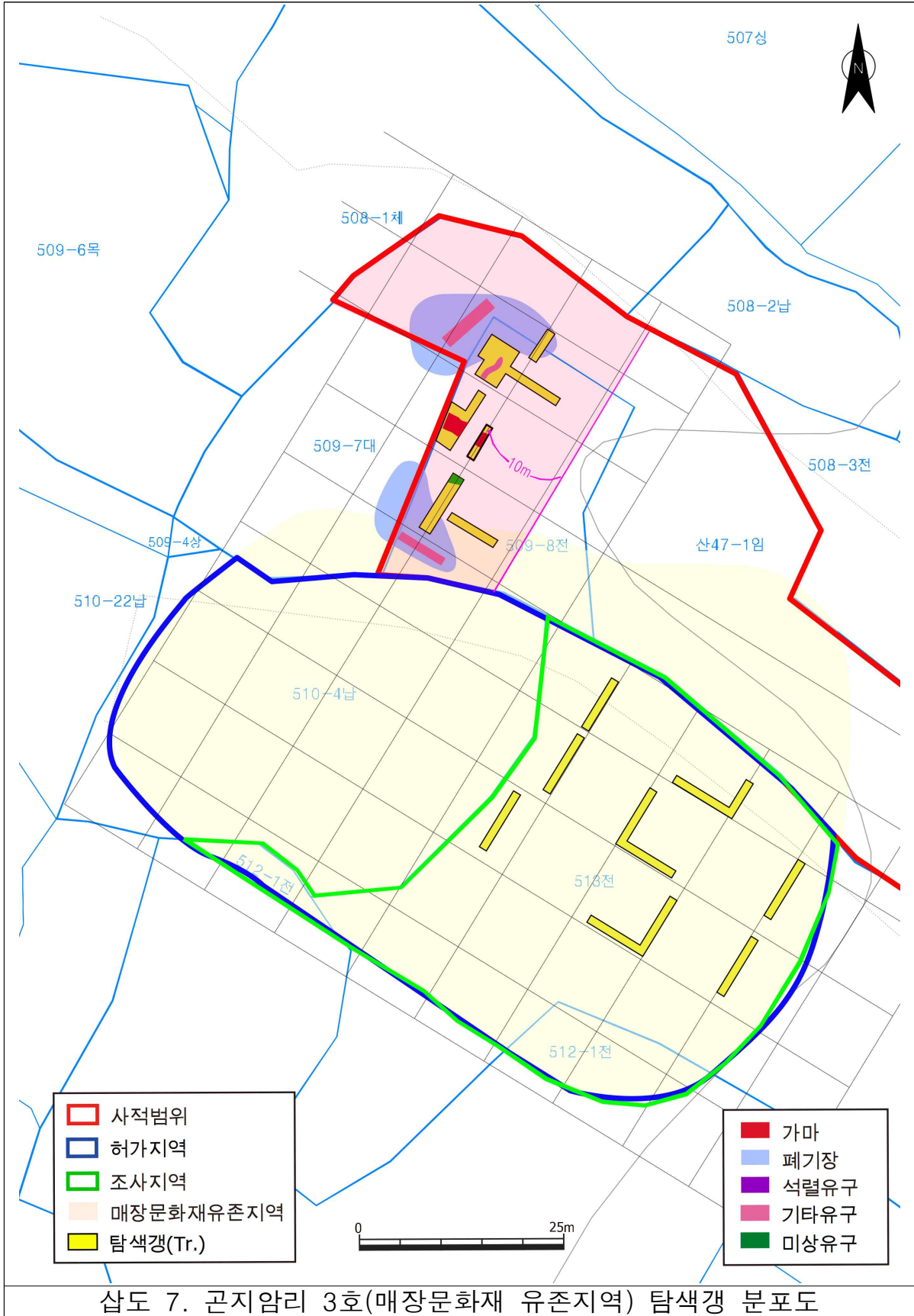


사진 9. 폐기장 층위



사진 10. 중요 출토유물

■ 곤지암리 3호(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결과



삽도 7. 곤지암리 3호(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탐색갱 분포도

유존지역 1차 정밀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 회의일자 : 2018. 7. 3.~4.
- 자문위원 : ○○(전 문화재위원), ○○○(문화재매장분과위원), ○○○(문화재시적분과위원), ○○○(문화재시적분과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미술관 관장),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광주조선백자요지 주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차 정밀시굴조사 (문화재청허가명 : 광주조선백자요지 주변지역(1차) 허가번호 : 제 2018-0608호)		
유적 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55필, 곤지암리 512-1, 곤지암리 45필		
조사 면적	11,755㎡	조사기관	경기도자박물관
조사 기간	2018. 6. 4. - 2018. 9. 21.	회의 일시	2018. 7. 3. ~ 4.
유적 현황 및 성격	<p>유사리 8호, 곤지암 3·6호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임.</p> <p>유사리 8호는 사적명내에서 차마 1기(8-①호), 유존지역에서 차마 2기(8-②, 8-③)가 확인되었음. 8-①호는 가마는 17C 중엽경의 전기가 확인되어 같은 시기에 연된 것으로 추정된다.</p> <p>유사리 8-②호의 H4 고드 D.의 경우, 차마 마지기 부분이 보이는 하나 동일부. 내부에서 토기는 락갓은이 확인되는 바, 가마의 공돌반에이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p>		
조사기관 의견 검토	<p>곤지암 3·6호 조사에서는 유존지역내에서 유적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장문화재 처리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하기로 무방함.</p>		
추가 의견	<p>유사리 8-②호의 경우, 가마의 매기장의 건조상태가 양호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지상 VR과 층층이미지 스캔처리 등을 실시하여 기록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p>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2018년 7월 4일			

사진 11. 곤지암 3호 유존지역 1차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 참고자료 2 >

1. 현장 실사

■ 문화재 지정구역 현장실사

○ 회의일자 : 2018. 6. 6.

○ 자문위원 : ○○○(문화재매장분과위원),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미술관 관장),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의견서			
회의 명칭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수립사업 현장실사 및 자문회의		
회의 장소	곤지암리 3호(근정리 509광전 화위)	일시	2018. 6. 6
회의내용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리방안 우선순위 및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내부 서편에서 가마 흔적과 폐기장이 확인됨. ○ 사적 서남편 외부의 매장유물에 유문지명이 대한 성과를 반영한 후이 그것과에 따라 제정됨.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천" 순채 杯가 출토된 곳도 추정됨. 		
자문위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2018년 6월 6일			

사진 12. 문화재 지정구역 현장실사 의견서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실사

○ 회의일자 : 2018. 7. 4.

○ 자문위원 : ○○○(문화재매장분과위원),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미술관 관장),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의견서			
회의 명칭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수립사업 현장실사 및 자문회의		
회의 장소	곤지암리 3호(곤지암리 509-8천 외)	회의 일시	2018. 7. 4
회의내용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리방안 우선순위 및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지암리 3호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유존지역에 대한 계획 등 의견이 제시되었음. ○ 매강원리개 유존지역(513 전, 514-1 전 외곽)에 대한 실사 결과, 가파른 경사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 지역은 과거 위사층지를 복원한 곳으로, 가파른 경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제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 따라서 유적이 확인된 곳은 중심은 반화터, T.2에서 동쪽 끝에서부터 북동쪽으로 10m까지는 경계로 확인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됨. ○ 남쪽 동편의 이리사지명(510-4 갑)은 매강원리개 유존 지역으로 계속 표시. 		
자문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2018년 7월 4일			

사진 13. 곤지암리 3호(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실사 의견서



사진 14. 곤지암리 3호(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장실사 모습

2. 추가 적정성 검토 2차 자문회의

- 회의일자 : 2020. 8.28 ~ 9.2
- 자문위원 : ○○○(○○대학교 교수), ○○○(문화재사적분과위원), ○○○(전 사적분과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미술관 관장), ○○○(문화재전문위원), ○○○(○○대학교 석좌교수),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의견서					
회의명	광주조선백자요지 추가 적정성 검토 2차 자문회의				
유적명	곤지암리 3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입·509-8전)		회의 일시	2020.08.28. 2020.09.02	
	광주조선백자요지 적정성 검토 및 보존·정비 방안				
회의내용	<p>○ 2015년 사업시행, 사적지 복원할 일꾼구공에서 가마와 폐기물이 확인되었다.</p> <p>○ 2018년 현장 실시 가마 유체가 확인된 뒤, 동쪽편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0미터까지를 경계로 "범위 확인" 의견이 제시되었다.</p> <p>○ 본 유적은 신대기 8.2호, 우산기 연(남)과 같이 가마와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므로, 2018년 의견대로 "범위 확인"가 적절함.</p>				
자문 의견					
자 문 위 원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2020년 09월 02일					

사진 15. 곤지암 3호 추가 적정성 검토 2차 자문회의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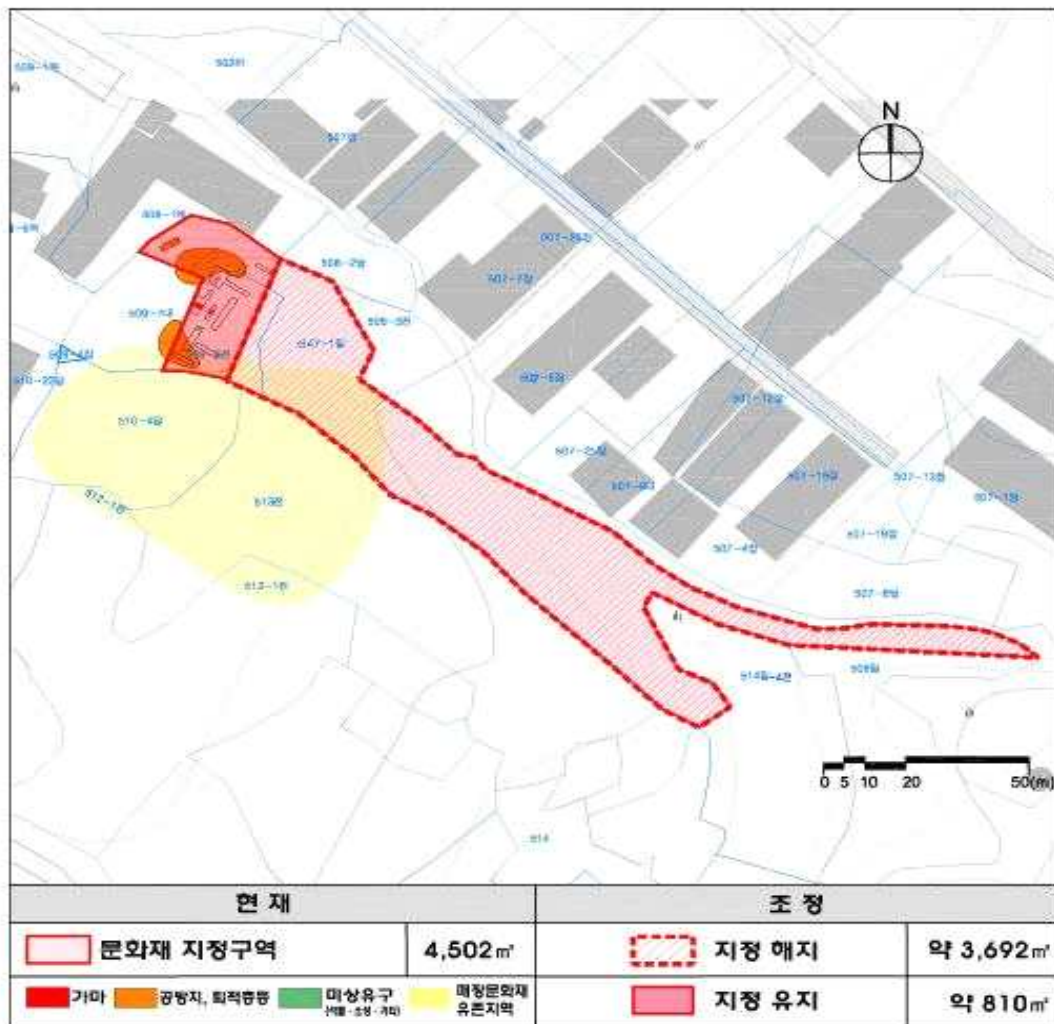
3. 조정(축소)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축소 면적 : 2필지/810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기존 지정면적 (m ²)	해지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1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	임	6,545	3,897	3,532	365
2	곤지암읍 곤지암리	509-8	전	605	605	160	445
합계				8,665	4,502	3,692	810

■ 현황 문화재지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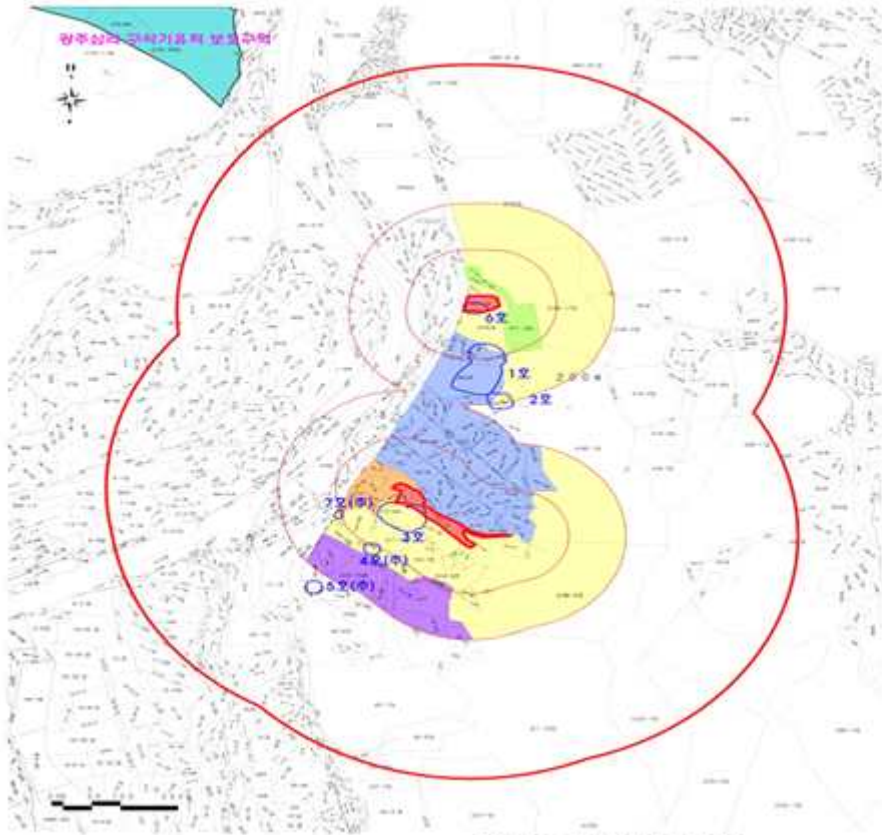
4.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차 자문회의

○ 회의일자 : 2020. 9.18

○ 자문위원 : ○○○(○○대학교 교수), ○○○(문화재사적분과위원),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사적분과위원)

자문위원 의견서

회의명	광주조선백자요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2차 현장 실사		
유적명	곤지암리 3호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임·509-8전)	회의 일시	2020.09.18.
회의내용	문화재 조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		
자문 의견	<p>이와 적성성 관련하여 "방위 축"가 단절되었음.</p> <p>이현장에서 확정한 방위대로 축조하여 가건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적용(정확도면 참조)</p>		
자문위원			
소속	전공·전문분야	성명	소속
전공·전문분야	성명	소속	성명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div>			
		(인)	(인)
2020년 09월 18일			



군지상 3호 현상현황 적용기준(201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314호
조선백자도요지
(실종림 군지암리)

경기도 광주시 실종림 군지암
471-1 전역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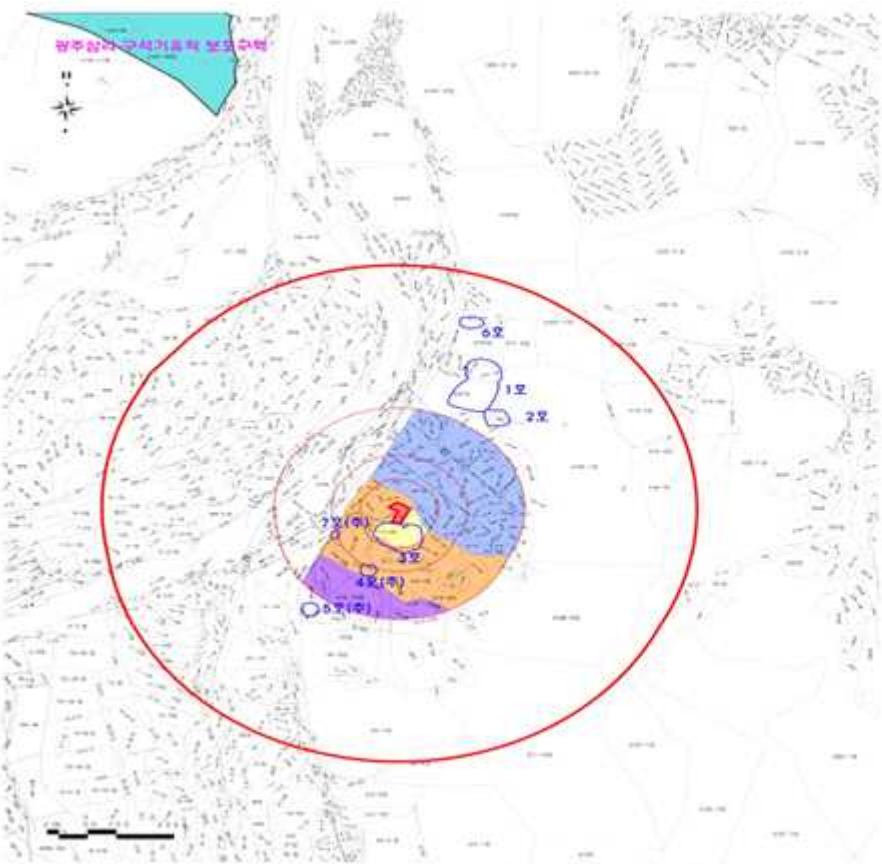
- 범례
- 문화유산보호구역
 - 문화유산보호경계구역
 - 문화유산보호경계구역(조각)
 - 비지정문화재
 - 1 구역
 - 2 구역
 - 3 구역
 - 4 구역
 - 5 구역
 - 6 구역

현상현황

국지상 3호 2010. 12. 31. 기준

구분	종류	면적(㎡)	비고
1구역	1구역	1,234	
2구역	2구역	2,345	
3구역	3구역	3,456	
4구역	4구역	4,567	
5구역	5구역	5,678	
6구역	6구역	6,789	

속 치 1 : 600



군지상 3호 현상현황 적용기준(현상 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314호
조선백자도요지
(실종림 군지암리)

경기도 광주시 실종림 군지암
471-1 전역 1건

- 범례
- 문화유산
 - 문화유산보호경계구역
 - 비지정문화재
 - 1 구역
 - 2 구역
 - 3 구역
 - 4 구역
 - 5 구역
 - 6 구역

현상현황

국지상 3호 2010. 12. 31. 기준

구분	종류	면적(㎡)	비고
1구역	1구역	1,234	
2구역	2구역	2,345	
3구역	3구역	3,456	
4구역	4구역	4,567	
5구역	5구역	5,678	
6구역	6구역	6,789	

속 치 1 : 600

<별첨 3>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제2021-21호)

●문화재청고시제2021-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

○ 당초 지정면적 : 216필지 407,660㎡(문화재구역)

○ 추가지정, 축소 및 해제

- 추가지정 : 11필지 14,612㎡(문화재구역), 9,020㎡(보호구역)

- 축 소 : 축소 전) 2필지 4,502㎡(문화재구역) → 축소 후) 2필지 810㎡(△ 3,692㎡, 문화재구역)

- 해 제 : 22필지 29,318㎡(문화재구역)

○ 조정 후 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추가지정·축소 및 해제) 사유

○ (추가지정) 정밀시굴조사 결과 가마와 폐기장이 분포 확인된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요지의 훼손 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 (축 소) 정밀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은 유구(가마)가 확인된 지역 중심으로 축소

○ (해 제) 정밀시굴조사 결과 공방지, 숯가마 등의 유구만 발견되거나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소유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추가 지정 면적 (㎡)	조정 면적 (㎡)	당초 지정 면적 (㎡)	추가 지정 면적 (㎡)	조정 면적 (㎡)	성명	주소	
1	경기도 광주시 관리왕송 신대리	산8-19	임	3,140	2,886	454	3,140	-	-	-	광주시	시유지	신대리 12,13,20호
2		산8-23	임	10,106	447	3,145	3,592	-	6,514	6,514	양소영 외 4인	경기도 광주시 관리왕송 관리왕로 88-17	
3		산8-24	임	2,501	264	2,237	2,501	-	-	-	윤호준 외 1인	경기도 광주시 대건 동로 54, 1517동 1001 호(대건동, 씽스데이 트대건)	
4		144-1	임	247	-	247	247	-	-	-	류경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23-1 한동 아트빌 에이-301	
5		144-3	임	301	-	301	301	-	-	-	류경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23-1 한동 아트빌 에이-301	
6		144-4	임	1,735	-	1,735	1,735	-	-	-	류경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23-1 한동 아트빌 에이-301	
7		144-5	임	216	-	216	216	-	-	-	류경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23-1 한동 아트빌 에이-301	
8	경기도 광주시	산112-1	임	37,388	-	2,790	2,790	-	-	-	산림청	국유지	번천리 5호
9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32-1	건	4,169	-	1,668	1,668	-	2,506	2,506	유옥관 외9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 아파트 104-301	
10	경기도 광주시	산59-5	임	10,379	-	1,031	1,031	-	-	-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 지로 35(을지로1가)	영미리 5호
11	관리왕송 영미리	산62	임	798	-	798	798	-	-	-	기뢰 재정부	국유지	
합계				161,975	3,397	14,612	18,009	-	9,020	9,020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축소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축소 면적 (㎡)	조정 면적 (㎡)	성명	주소	
1	경기도 광주시	산47-1	임야	6,545	3,897	3,532	365	신성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42	편지암리 3호
2	편지암읍 편지암리	509-8	건	605	605	160	445	오형택	인천광역시 남구 숙풍로24번길 32, 2층 201호(도화동)	
합계				7,150	4,502	3,692	810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해제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소유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해제 면적 (㎡)	조정 면적 (㎡)	성명	주소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252-1	답	357	357	357	-	윤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609동 211호(개포동 구공아파트)	우산리 9호(남)		
2	우산리	252-2	건	2,099	1,869	1,869	-	윤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609동 211호(개포동 구공아파트)			
3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편지암리	471-1	건	1,750	1,750	1,750	-	이영재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편지암로 74-1	편지암리 6호		
4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45-1	건	367	367	367	-	이윤국	경기도 성남시 송원구 산성대로 456-1(금광동)	신대리 8·28호		
5		145-2	건	621	621	621	-	최영길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38			
6		145-5	건	46	46	46	-	김지현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45-4			
7		145-10	건	182	182	182	-	김민수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편지암리 445-10 지암빌라 201			
8		145-11	건	1,061	1,061	1,061	-	김민수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편지암리 445-10 지암빌라 201			
9		145-12	건	764	764	764	-	김장수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19-1			
10		146	건	714	714	714	-	김영도	경기도 수원시 광안구 송정로 146, 101동 1208호(조원동, 상촌 유 필리시)			
11		산9-12	임야	953	953	953	-	송현금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45-6			
12		산9-22	임야	990	990	990	-	송현금	경기도 광주시 편지암읍 신대리 145-6			
13		경기도 광주시	27	답	3,888	3,888	3,888	-	왕일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274-4	오전리 3·7호
14		남한산성면	28	건	86	86	86	-	원권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분할계구역			소유자		비고
					당초 지정면 적 (㎡)	금회 복구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오정리								32	
15	경기도 광주시 관지암읍 유사리	365	대	1,091	1,091	1,091	-	이광희	경기도 광주시 관지암읍 유사리 365	유사리 3호
16		367	대	354	354	354	-	이규상	대구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45(서호동)	
17		365-3	건	552	552	552	-	장경석	경기도 광주시 관지암읍 무향리 458	
18		368-3	대	713	205	205	-	정영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13, 108동 1502호(도곡동 역삼점키아파트)	
19	경기도 광주시 관지암읍 오향리	321	건	2,202	2,202	2,202	-	박수길 외 1인	경기도 광주시 관지암읍 광의로 377	오향리 입원
2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1-2	건	2,357	2,357	2,357	-	한윤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정자동길 87-1	정지리 4호
2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51-3	건	7,217	7,217	7,217	-	서성열 외 1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정로135 번길 21 1305동 403호(동천동 현 빛마을 패미와이스트필리스)	상월리 10·12호
22	상월리	51-47	건	1,742	1,742	1,742	-	박상훈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 32	
합계				30,056	29,318	29,318	-			

<별첨 4>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고시제2021-42호)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42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격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격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

○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

번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성명	주소	비고
					당초 지정면 적 (㎡)	금회 해제 면적 (㎡)	조정 면적 (㎡)			
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	옥수원	1,636	1,636	1,636	-	재단법인 청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광안구 화서동 10	우산리 2호
2		434-1	건	1,478	1,478	1,478	-			
3		437	건	840	840	840	-			
4		438	건	1,530	1,530	1,530	-			
5		439	건	496	496	496	-			
합계		5필지		5,980	5,980	5,980	-			

○ 조정 후 면적 : 201 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격>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8. 화순 운주사지 주변 건축물 양성화 및 태양광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사적 「화순 운주사지」 주변 기존 건축물 양성화 및 태양광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 조성된 건축물의 양성화, 태양광 시설물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화순 운주사지(사적 제312호 / 1985.04.15. 지정)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 외

(3) 신청내용<건축물 양성화, 태양광 시설물 설치>

- 위치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1194-2, 1194-5[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7m 이격/1구역{개별심의(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2구역(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 건축물(버섯 재배사) 양성화(※ 건축 허가일 : 2013.7.29.)
 - 가동 : 건축물 308㎡ / 최고높이 5.2m / 철골구조+판넬마감
 - 나동 : 건축물 220㎡ / 최고높이 5.2m / 철골구조+판넬마감
- 태양광 시설물 설치 :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

구분	가동 위	나동 위
설치면적	226.8㎡	151.2㎡
최고높이	2.35m(건물 포함시 7.55m)	
설치내용	460W 196매(가동 118매, 나동 78매) * 1매 : 2,163mm×1,030mm×35mm 인버터 50kw 2대, 설치용량 90.16kw	
판넬 설치방향	문화재 구역 북쪽(문화재와 판넬 사이에는 산으로 막혀 있음.)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9.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외 도로 정비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외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내외 도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112-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기월사거리 정비>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112-1번지 일원(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포함)
(문화재구역, 2구역)
 - 사업목적 : 기월사거리를 도로확장계획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중로 229m, 대로 124m
 - 토 공 : 흙깎기 $V=1,899m^3$, 흙쌓기 $V=132m^3$, 터파기 $V=675m^3$,
되메우기 $V=34m^3$, 사토 $V=2,015m^3$
 - 배수공 : 집수정 13개소, 배수관 D300-12m, D500-112m, D600-212m
 - 구조물공 : 식생블럭(1000×700×500) $125m^2$
 - 포장공 : 포장(아스콘) $A=6,540m^2$, 보도포장(T=6cm) $A=798m^2$
 - 부대공 : 차선도색 및 중기, 자재운반
 -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399ton, 폐아스콘-2,251ton
- (4) 신청인 의견
 - 고성군 주요 교차로인 기월사거리를 도로확장계획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9명, 보류 1명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1-05-010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필지 182㎡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 : 1필지 182㎡ (풍납동 155-18)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55-18/'21.04.07.)
 -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동성벽 매입/정비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추가 사적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m ²)	지정 면적 (m ²)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8	대	182	182		

2.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사적 「논산 노성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논산 노성산성 정비계획 수립 시 지적 측량한 자료에 따라 문화재구역 5필지, 2,402㎡ 및 보호구역 10필지, 36,470㎡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논산 노성산성(사적 / 1995.08.02. 지정)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번지 외 16필지
- (3) 신청내용<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구분	기존 면적	추가 면적	추가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17필지 51,624㎡	5필지, 2,402㎡	18필지, 54,026㎡	
보호구역	-	10필지, 36,470㎡	10필지, 36,470㎡	

(4) 신청 사유

- 2019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일부 성벽구간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누락됨을 확인하였고, 성벽의 체계적인 보수 및 외부 탐방로 개설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누락된 곳은 지정구역에 편입하고 보호구역은 새롭게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현지조사의견과 같음)('21.02.2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건은 2019년도 논산 노성산성 정비계획 수립시 지적 측량한 자료를 근거로 체성부 지정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이러한 지정구역으로 부터 대략 50m 내의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성산성의 보존 관리에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1.2.24(수)	대상 문화재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한국사	○○대학교	명예교수
	○○○	고고학	○○○○도시연구원	원장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 별	사적		
	②문화재 명 칭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 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 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 치 및 근 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 상 및 범 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 호 관 리 사 항 검 토	⑦문화재 보 존 영향 행위 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 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2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2.24(수)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의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으로 신청되었으며, 노성산성의 지정구역 정리와 보호구역 신설이므로 “논산 노성산성(論山 魯城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노성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노성면은 상월면과 더불어 논산시의 최북단에 위치함. 그 중 가장 높은 곳이 노성산(魯城山, 348m)이며, 노성산성은 노성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어 산성에 올라서면 주변지역이 한눈에 들어옴.
- 산봉우리들이 서로 잇달아 솟아 있어 다른 삼면에 비해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한 편임. 산성이 축조되어 있는 노성산의 바로 동쪽 기슭에는 노성천이 흐르고 있다. 노성천은 이 지역 3대 하천 중 하나로, 공주 월성산에서 노성산에 이르는 산줄기 사이에 형성된 構造谷을 따라 흐르고 있음.
-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편축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벽은 대부분 상부 면석이 탈락하고 뒷채움석만 남아있으며, 동문지 주변 등 일부 지역인 상부 면석이 남아있다. 남벽도 남문지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편축식으로 축조되었고 성부 상부가 훼손되어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성벽 복원 사업을 통해 약 109.7m를 복원되었다. 서벽은 대부분 편축식으로 축조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협축식으로 조성되었고, 1995년 서문지 주변 성벽 21m를 보수함.
- 확인된 문지는 동문지, 남문지, 서문지 3개소이며 남문지만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지를 복원.
- 총 7개소의 건물지가 있으며, 1건물지와 6건물지, 2건물지 일부를 발굴조사하여 유구를 확인하였으나 유구 복토를 통해 보존, 성내에는 우물지 4개소(외부 1개소)가 위치하고 현재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금강대도에서 우물 2개소를 사용하고 있음. 봉수대는 서북~동남방향으로 길쭉한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방호대가 4벽으로 석축으로 두르고 있음.
- 2019년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여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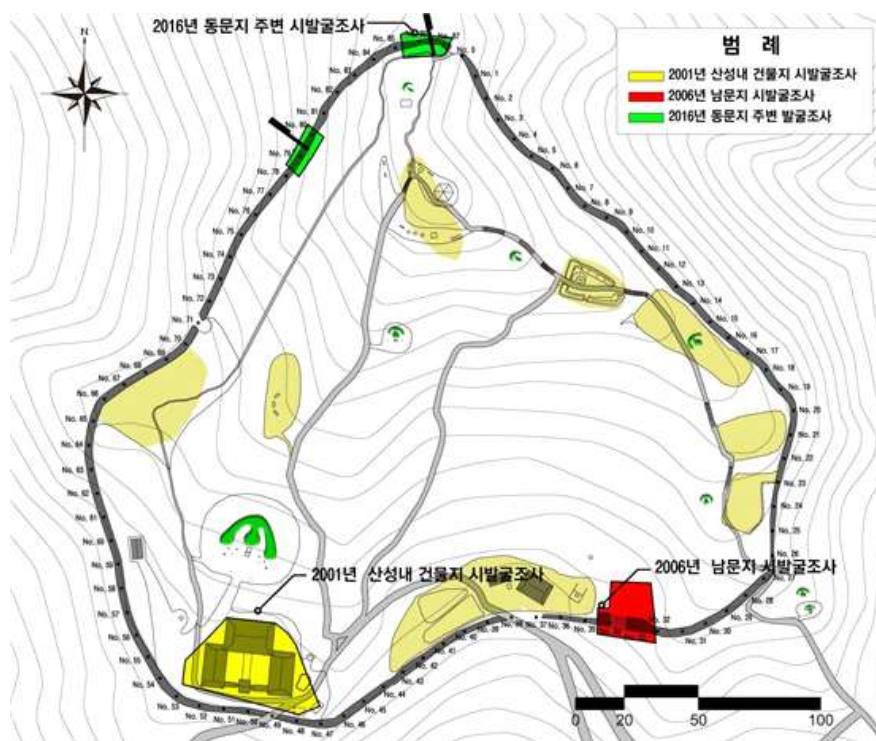
이 필요함.

4. 연혁 유래 및 특징

- 백제 때 산 정상부분을 돌로 둘러쌓아 만든 테피식 산성이다.
- 산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쌓았고 동쪽면, 북쪽면, 서쪽면은 돌을 네모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성 둘레는 590m, 높이 2.4m이다.
-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는 장수의 지휘대로 보이는 터(장대지)가 있으며 동쪽벽으로 조금 내려오면 봉화를 올리던 봉수대로 보이는 곳이 있다. 성 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토기, 기와같은 여러 유물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 연산에 있는 황산성과 함께 백제와 신라가 서로 마주했던 마지막 방어지에 해당하는 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한 주요 방어지역이었던 곳이다.

□ 학술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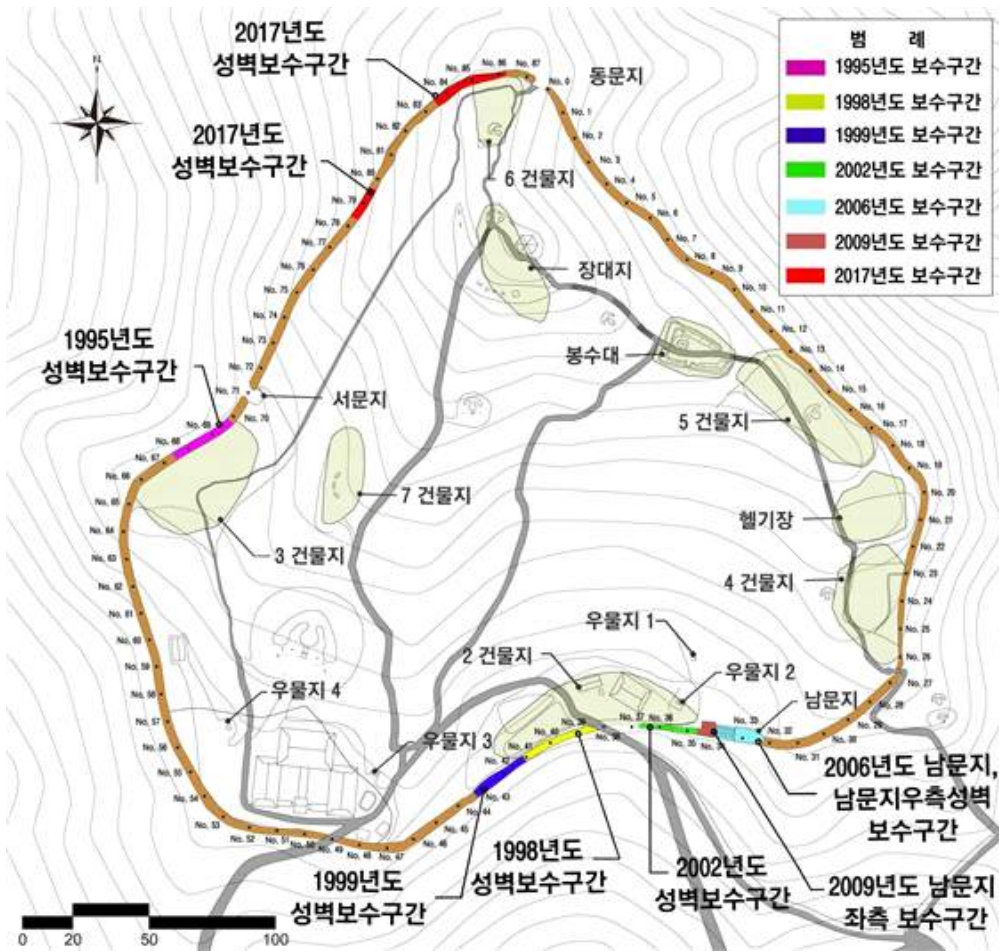
- 지금까지 노성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4년 ~ 2016년까지 총 4번 시행되었으며, 1994년 노성산성 정밀지표조사에서는 노성산성의 전체 성벽 현황과 건물지 현황이 조사되었다.
- 2001년 산성내 발굴조사는 금강대도 종교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건물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2년 성벽 보수공사 중 남문지가 발견되어, 남문지 발굴조사가 2006년에 시행되었으며, 동문지 주변 성벽 보수공사를 위해 2016년 보수구간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 논산 노성산성 학술조사 현황도

□ 문화재보수정비 현황

- 1995년 사적으로 지정된 후 총 7차례 보수·정비공사가 시행되었고, 노성산성 성벽 894m 중 154.7m(17.3%)가 보수되었다. 2002년 성벽공사 중 남문지가 발견되어 2006년 발굴조사를 통해 2006~2009년에 나누어서 남문지 및 주변 성벽이 복원되었다.
- 연차별 보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성산성 보수공사의 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성벽 입면 설계, 성돌 수습 없이 신재 전체 사용(1995~2002년)되었고, 성벽만 보수하고, 성벽 주변 배수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성벽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성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남문지 성벽보수 구간의 경우에는 성벽 이격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 논산 노성산성 보수정비 실적 현황도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논산 노성산성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축성된 것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으며, 노성산성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둘레는 350보이며, 성내에는 샘이 3개 있으며, 봉수가 1개소가 있다고 전해진다.

- 노성산성의 성벽은 외곽 성벽을 기준으로 894m로 대부분 잔존하고 있다. 동벽은 노성산의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산의 중간쯤에서 남벽과 이어지고 있으며,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편축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상부 면석이 탈락하고 뒷채움석만 남아있다. 남벽도 남문지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편축식으로 축조되었고 성 상부가 훼손되어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성벽 복원사업을 통해 약 109.7m를 복원되었다. 서벽은 대부분 편축식으로 축조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협축식으로 조성되었고, 1995년 서문지 주변 성벽 21m를 보수하였다. 확인된 문지는 동문지, 남문지, 서문지 3개소이며 남문지만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지를 복원하였다.
- 성내부에는 총 7개소의 건물지가 있으며, 1건물지와 6건물지, 2건물지 일부를 발굴조사하여 유구를 확인하였으나 유구 복토를 통해 보존하였으며, 우물지 4개소(외부 1개소)가 위치하고 현재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금강대도에서 우물 2개소를 사용하고 있다. 봉수대는 서북~동남방향으로 길쭉한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방호대가 4벽으로 석축으로 두르고 있으며, 서쪽이 12.5m, 북쪽이 2m, 동쪽이 4.7m, 남쪽이 23m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 2019년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문화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정구역에 일부 성벽구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성벽의 체계적인 보수 및 외부 탐방로 개설을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 확인결과, 일부 성벽의 경우 문화재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가 확인되어 지정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며, 성벽의 체계적인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성벽의 수목제거와 긴급 보수, 정비 등 원활한 보존 정비사업 추진과 추가적인 학술조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
- 첫 번째 문화재 지정구역은 현재 외곽 성벽 기준인 둘레 894m 영역에서 미확인된 하부 지대석까지의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외부 성벽선에서 약 2m의 범위를 추가로 확장 지정구역을 설정하였다.
- 지정구역 해당범위는 전체 18필지 54,026㎡에 해당되며 기존 2009년 고시기준 17필지 51,624㎡보다 2,402㎡가 증가하였다.
-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2. 사적의 보호구역 중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 입지와 성의 외부 지형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 또한, 성벽의 체계적인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성벽의 수목제거와 긴급 보수, 정비 기본계획 추진시 외부탐방로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며, 원활한 보존 정비사업 추진

과 추가적인 학술조사를 위하여 보호구역 확장이 필요하다.

- 보호구역 해당범위는 전체 10필지 36,470㎡에 해당된다.
- 논산 노성산성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확장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은 2018년 고시되어 문화재지정구역에서 500m 범위내 허용기준안 1구역(개별심의) 300m 범위내와 2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00m~500m 범위내로 구분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¹⁾이 신설되어 기존범위 유지에 대한 검토협의를 필요하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지정구역면적 : 18필지 / 54,026㎡, 보호구역면적 : 10필지 / 36,470㎡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18필지 / 54,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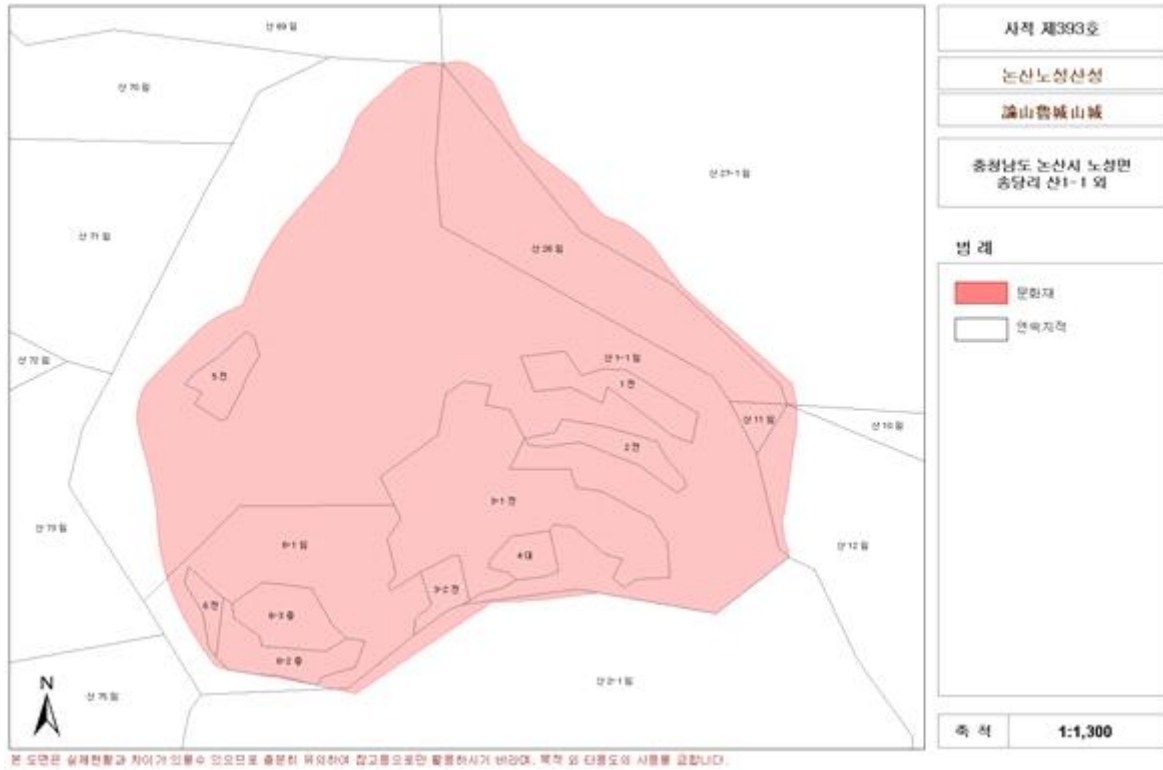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상월면 상성리	산10	임	3,669	3		
2	상월면 상성리	산11	임	496	496		
3	상월면 상성리	산12	임	297,524	583		
4	노성면 송당리	1	전	1,012	1,012		
5	노성면 송당리	2	전	694	694		
6	노성면 송당리	3-1	전	5,574	5,574		
7	노성면 송당리	3-2	전	443	443		
8	노성면 송당리	4	대	463	463		
9	노성면 송당리	5	전	625	625		
10	노성면 송당리	6	전	278	278		
11	노성면 송당리	6-1	임	5,515	4,669		
12	노성면 송당리	6-2	중	998	998		
13	노성면 송당리	6-3	중	1,030	1,030		
14	노성면 송당리	산1-1	임	35,603	28,464		
15	노성면 송당리	산2-1	임	207,868	532		
16	상월면 신충리	산26	임	5,554	5,554		
17	상월면 신충리	산27-1	임	105,946	2,528		
18	노성면 가곡리	산69	임	21,223	80		
계	18필지			694,515	54,026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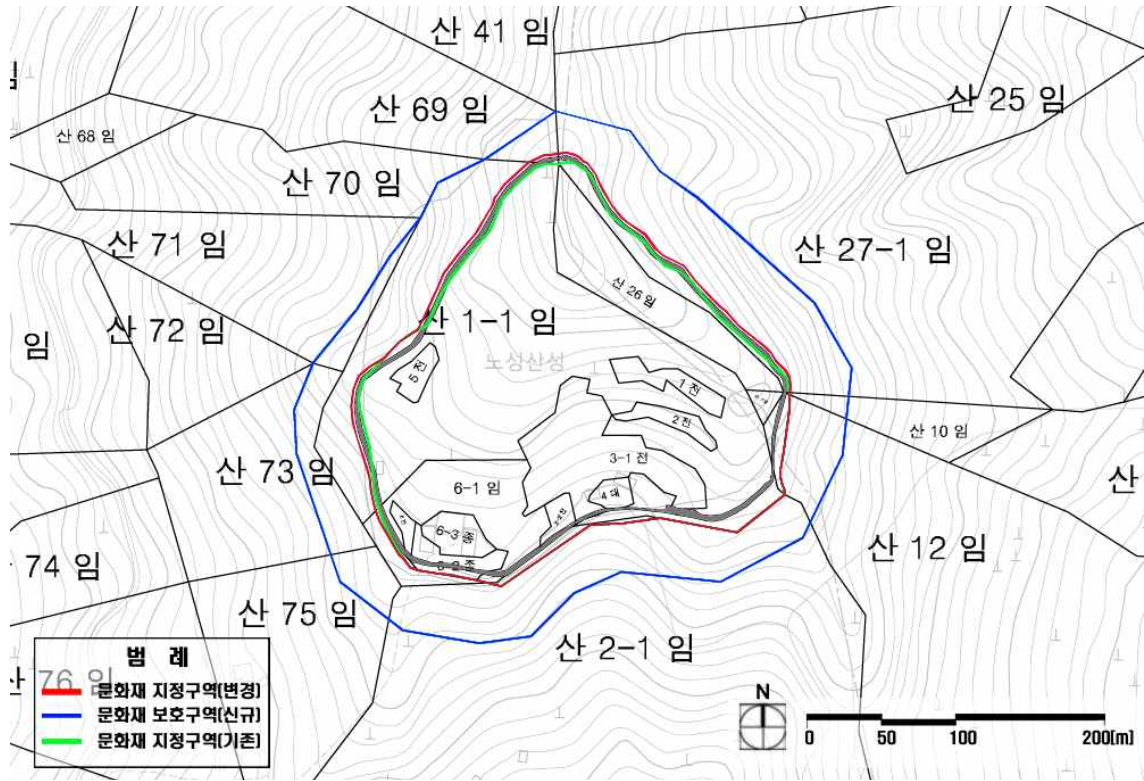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면적: 10필지 / 36,4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상월면 상성리	산10	임	3,669	330		
2	상월면 상성리	산12	임	297,524	2359		
3	노성면 송당리	6-1	임	5,515	846		
4	노성면 송당리	산1-1	임	35,603	7,139		
5	노성면 송당리	산2-1	임	207,868	9,902		
6	상월면 신충리	산27-1	임	105,946	10,240		
7	노성면 가곡리	산69	임	21,223	788		
8	노성면 가곡리	산71	임	18,248	1,060		
9	노성면 가곡리	산73	임	13,091	2,568		
10	노성면 가곡리	산75	임	16,363	1,238		
계	10필지			725,050	36,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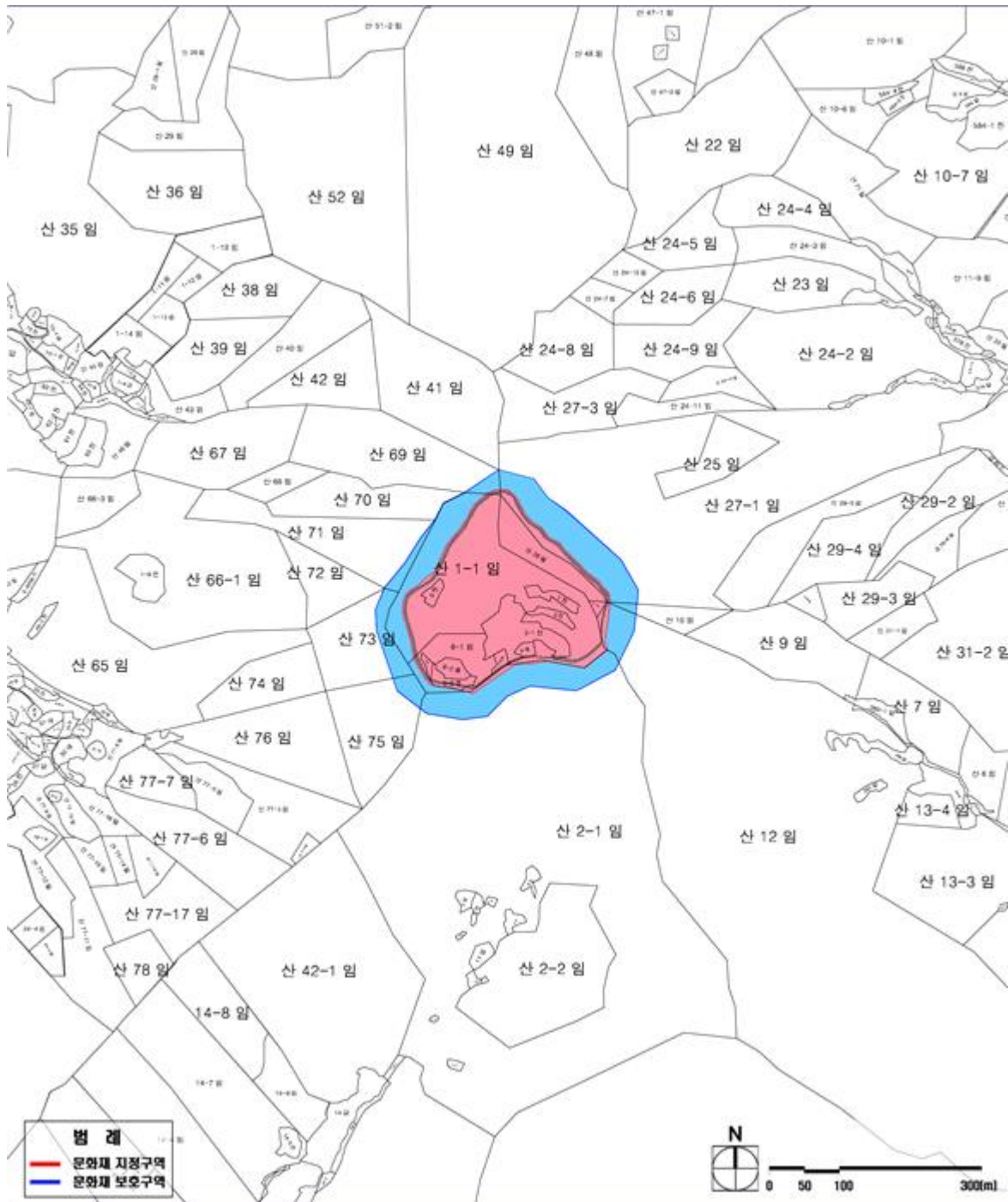
▲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고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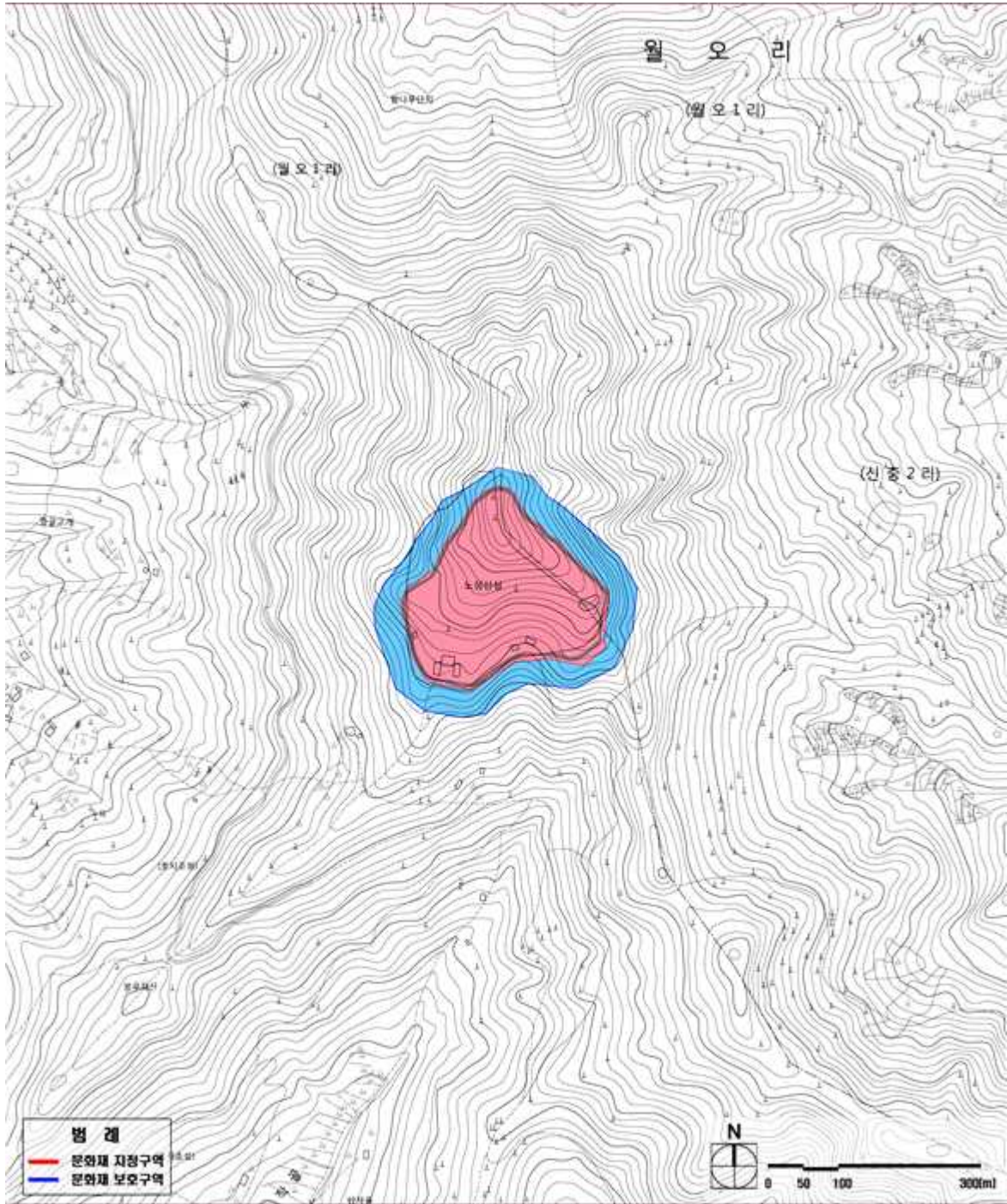
1)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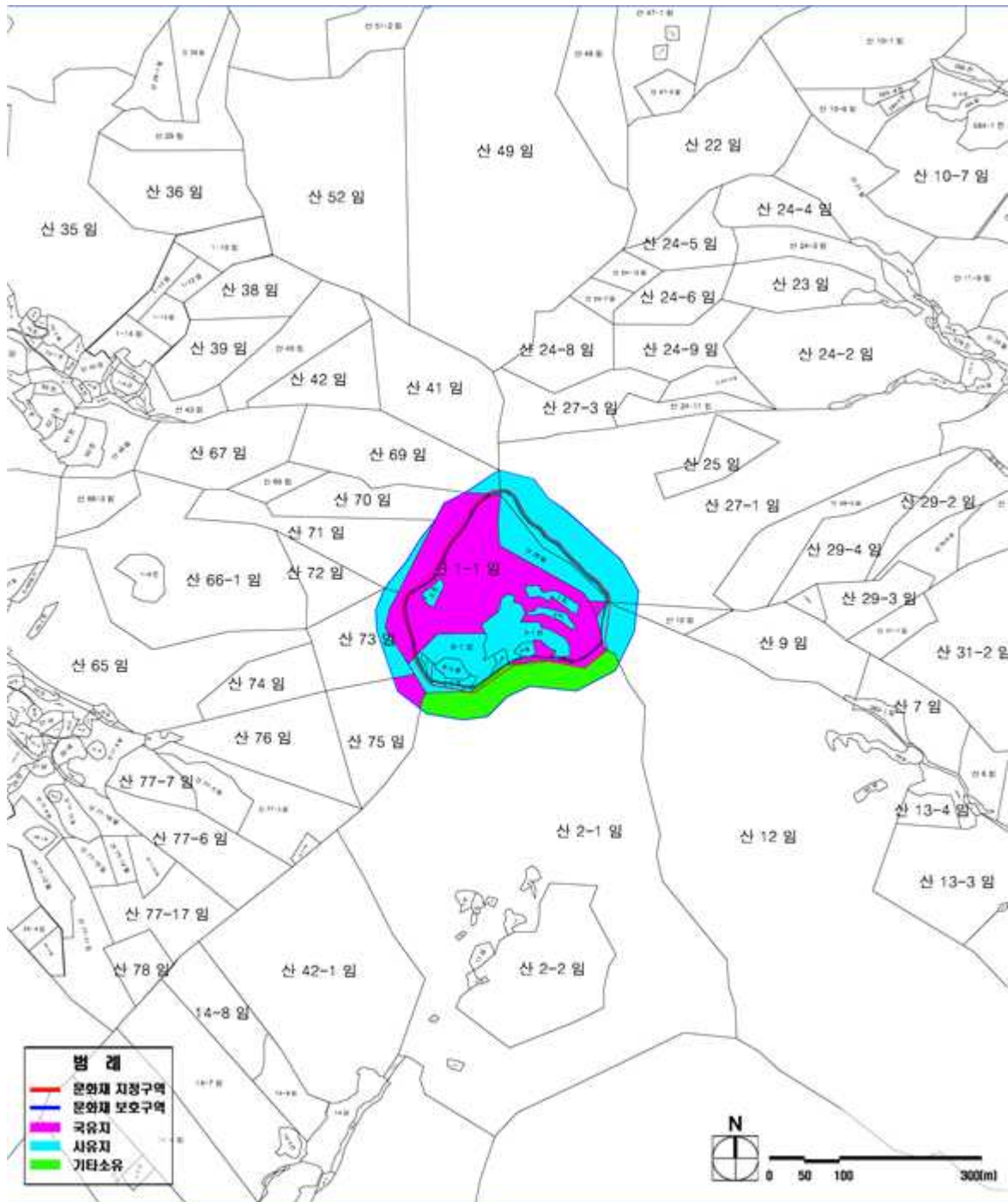
2) 지적도



3) 수치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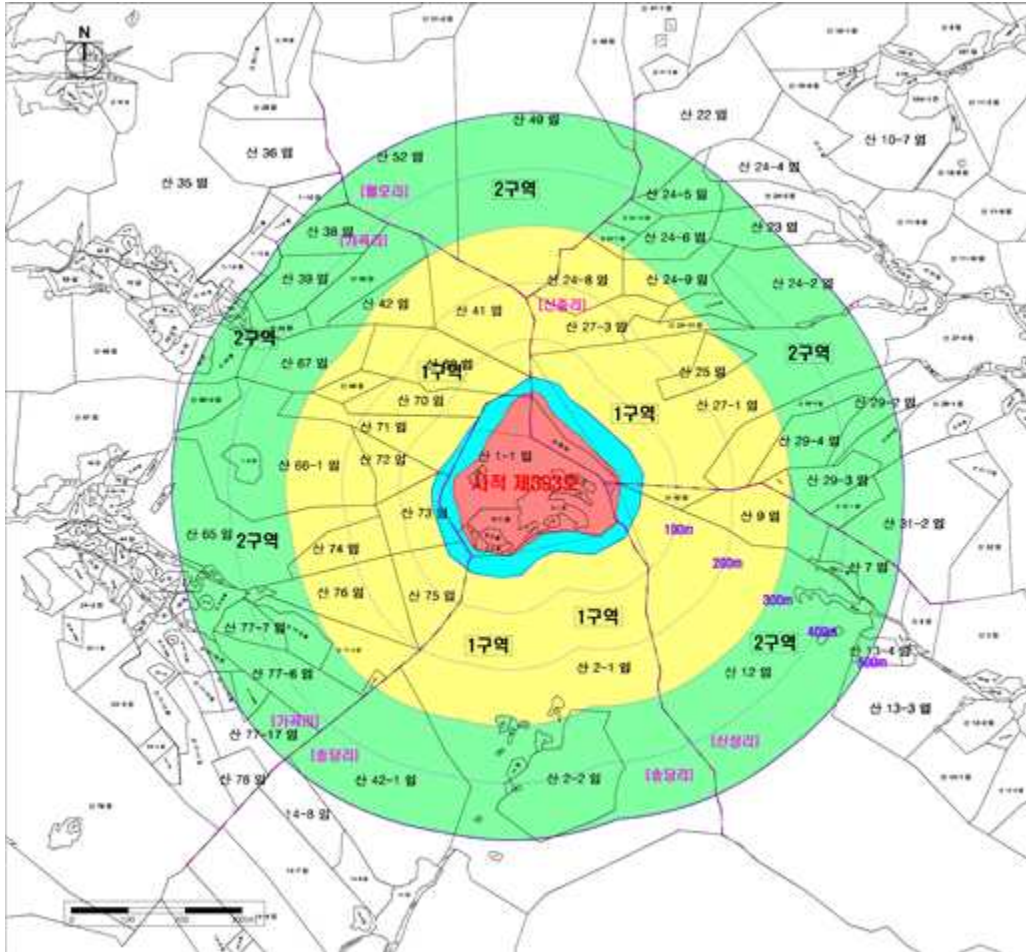
4) 소유자현황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기존 300m범위까지 개별심의구역으로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300m 범위의 개별심의구역 유지는 적절함.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변경(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¹⁾

1) 목표

- 노성산성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 노성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 노성산성의 잔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매입·정비하고 보존공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경관을 회복한다.
- 전체 사업을 여건변화에 맞춘 단기사업과 향후 추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실현 가능한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실행 가능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산성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 본 대상지는 산성문화재라는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적 및 경관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되 유적의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관람환경을 정비한다.
-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성벽 보수정비사업을 산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과학적 정밀조사와 기록화사업을 통해 대상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및 활용방안 제언

- 노성산성 주변에는 명재고택, 켈리사, 노성향교, 노강서원 등 다양한 기호유교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건립예정인 충청유교문화원이 2021년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 기존 문화유적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성면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2) 주제별 정비개념 설정

-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계획의 정비개념은 앞에서 설정된 목표(‘역사성 회복’, ‘체계적 보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3가지 소주제로 세분화하고, 각 세부 목표별 정비개념을 설정했다.
- 또한, ‘유적의 보존 및 경관 회복’, ‘유적 인지성 확보’, ‘유적의 가치 전승 및 활용’으로 소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별로 추진방향을 작성하였다.

■ 유적의 보존 및 경관 회복

- 성곽 주변 토지 매입,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 유적 보존
- 발굴조사 및 훼손된 성곽 보수 ▶ 유적 경관 회복
- 구역별 성곽 현황 및 보존상태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 체계적인 보수

1)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논산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9.

■ 유적 인지성 확보

- 성벽 상부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제거 ▶ 성벽 인지성 확보
- 발굴조사를 통한 건물지 및 우물지 정비 ▶ 산성 가치 회복

■ 유적 가치 전승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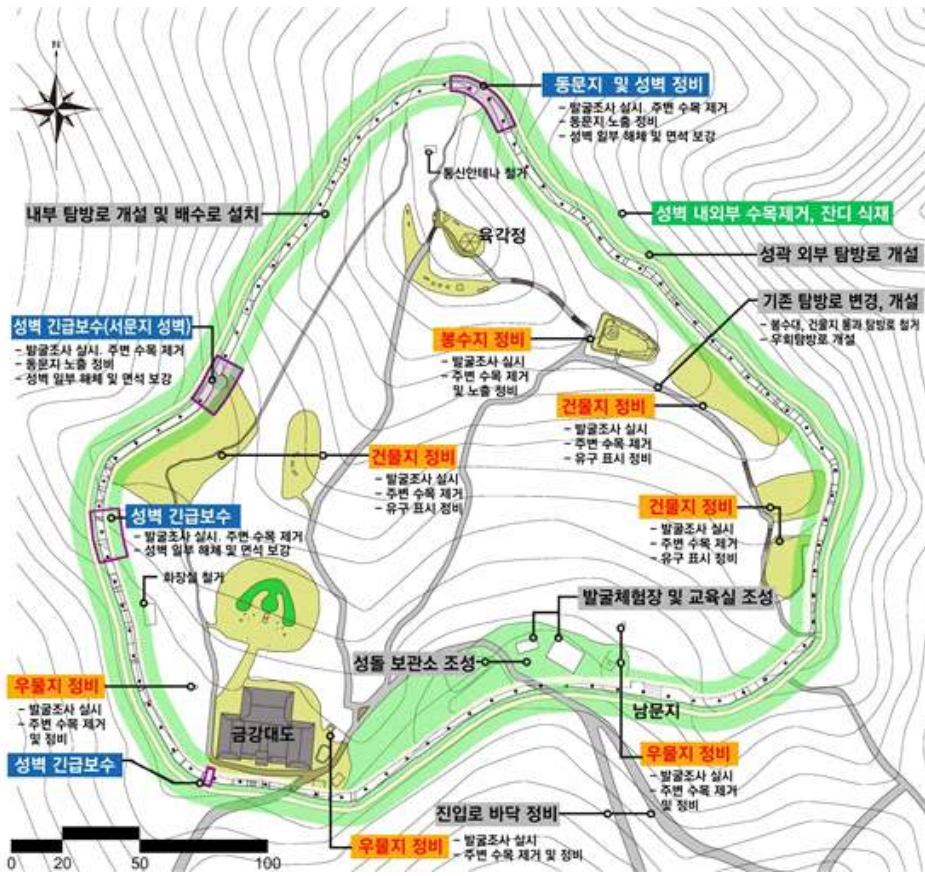
- 연차별 발굴조사 실시로 보수 및 복원자료 확보 ▶ 유적 가치 확보
- 기록화사업을 통해 콘텐츠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 가치 전승
- 산성 주변 기호유교문화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 유적 연계 및 활용

3) 종합정비계획

- 사업비 : 9,4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8년(10년)
- 배치기본방향
 -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은 성문지 및 성벽정비계획, 건물지 및 기타유적 정비계획, 탐방로 및 안내시설 정비계획, 활용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종합배치도는 노성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다.
 - 배치도에 나타낼 수 없는 성격의 사업들은 세부 계획에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배치계획은 대상지의 입지 및 교통,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은 시발굴조사를 통해 유구, 유물의 분포 현황 및 성격 등에 대한 규명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도입토록 한다.
 - 성벽 및 성문지 정비계획 및 건물지 및 기타유적 정비계획은 문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으로 시발굴조사를 근거로 현 위치에 유구를 보호하는 공법을 도입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안내시설과 탐방로를 설치하는 계획은 성내 유적의 보존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성곽 및 유적을 자연스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코자 한다.
 - 노성산성의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애향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진입 탐방로만 정비하며, 주 진입로는 남문을 중심으로 진입동선을 유도하고, 성내외 탐방로를 개설하여 탐방객들로 하여금 성내외의 주요 경관점으로 활용토록 한다.
 - 성벽부 수목은 성벽 보존은 물론 경관점의 시계 확보 및 외부에서 논산 노성산성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성벽 외부 일정구간의 수목을 간별토록 한다.
 - 성벽과 성문지를 우선적으로 발굴조사 후 긴급보수를 추진하고, 건물지 및 우물지를 성벽 보수가 완료되면 연차별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 논산 노성산성 주요 사업계획

사업구분	사업내용
성벽 및 성문 보수 정비	- 성벽 주변 수목 제거 및 연차별 발굴조사 실시
	- 성벽 긴급보수구간 응급보강조치 및 단계적 보수
	- 동문지, 서문지 보수 및 주변 정비
	- 성벽 기록화 및 보존과학적 정밀조사 실시
건물지 및 기타유적 정비	- 성돌 수집 및 성돌 보관소 조성
	- 수목세부조사 및 성벽 주변 수목 제거
	- 건물지 및 우물 발굴조사 및 정비
탐방로 및 안내시설 정비	- 봉수대 발굴조사 및 정비
	- 성벽 내외 탐방로 조성 및 안내편의시설 설치
	- 진입로 정비



9. 종합 의견

- 논산 노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된 테피식 산성으로, 2019년 논산 노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정구역에 일부 성벽구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 이에 현 체성부를 중심으로 약20m를 문화재구역으로 그 외 20~50m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신청된 것으로, 성벽의 수목제거 등 정비와 학술조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재설정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홍성 홍주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의 객사, 향청지, 전영동헌 추정지 93필지, 23,596.9m²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 1972.10.14. 지정)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일원

(3) 신청내용<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면적 : 308필지 109,541.5m²
- 추가 면적 : 93필지, 23,596.9m²
- 추가 후 면적 : 401필지, 133,138.4m²

(4) 신청 사유

- 추가 신청부지는 홍주읍성 객사, 향청지, 전영동헌 추정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문화재 지정 추가 지역으로 홍주읍성의 관리 및 활용에 유용함

라. 검토의견(현지조사의견과 같음)('21.02.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건은 홍성 홍주읍성의 읍성구역 중 고지도에 나타난 객사터, 동헌터, 향청지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정 신청 중, 체성부의 일부 누락된 곳은 지정함이 마땅하나, 객사터는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건물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헌터, 향청지는 발굴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후 재검토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현지조사 추가의견

(1) 문화재위원 ○○○

- 금회 추가지정 신청구역 중 성벽구간 범위는 지번 분할시 누락된 것과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으로, 당초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구역이었다는 점에서 금회 추가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읍성 내부의 각종 공해시설로서 고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사, 향청, 영동헌터는 향후 정비를 감안하여 지정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발굴조사를 거쳐 그 터의 범위를 확인한 후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공해시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이 이미 도심지로 개발되어진 곳이 대부분이고, 지하구간이 대부분 파괴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규모가 큰 건축물도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 구역 확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화재전문위원 ○○○

- 추가 지정구역 중 성벽구간 범위는 지번 분할시 누락된 것과 지정 범위에서 빠진 도로 등에 해당하므로 추가지정이 타당함.
- 읍성내부 공해시설로서 고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사, 향청, 영동헌 유지는 지정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함. 발굴조사를 거쳐 점유지역의 범위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객사터의 경우 주변 도로구간에 대한 일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부족하며,
- 향청지와 영동헌지는 고지도와 지적도 등 간접자료를 통한 추정 수준이므로 직접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 수용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1.2.25(목)	대상 문화재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한국사	○○대학교	명예교수
	○○○	고고학	○○○○도시연구원	원장
	○○○	건축사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 별	사적		
	②문화재 명 칭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 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 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 치 및 근 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 상 및 범 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 보호구역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 존 영향 행위 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 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2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1.2.25(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의 구지도상에 나타나는 동헌터, 향청지, 객사터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으로 신청되었으며, 홍주읍성(洪州邑城)과 관련된 시설이 있던 곳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 홍주읍성(洪城 洪州邑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홍주읍성은 홍성읍 오관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의 수암산(260m), 용봉산(381m)과 서쪽의 일월산(백월산, 394m), 보개산에 둘러싸여 있다.
- 홍성천은 홍주읍성의 남동측에서 남에서 북으로, 월계천은 홍주읍성의 북측에서 서에서 동으로 홍주읍성을 감싸듯이 흘러 삼교천(구 금마천)으로 합류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충남 홍성군에 있는 성으로, 길이 약 1,772m의 성벽 중 약 800m의 돌로 쌓은 성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다.
- 처음 지어진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 홍주성의 둘레와 여름과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 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 동문인 조양문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문이며 아문은 우리나라 아문 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조선시대 관아의 구조와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읍성이 존치했으며, 조선 초기 새로운 형식에 의해 쌓은 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1910년을 전후하여 북문과 서문이 훼손되어 도로가 놓이게 되었고, 동문인 조양문에서 북문을 경유한 서문의 성벽 체성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민가 가 조성되면서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 1972년 10월 14일 조양문과 남문 주변 동측에서 서측 구간의 성곽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8년 지진으로 무너진 성벽에 대한 복원 및 주변 정비를 진행하였다.
- 2009년 7월 22일 북문 주변 성곽 부분(서문↔동문, 조양문)에 대한 문화재 구역(사

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 2015년 1월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여 홍주읍성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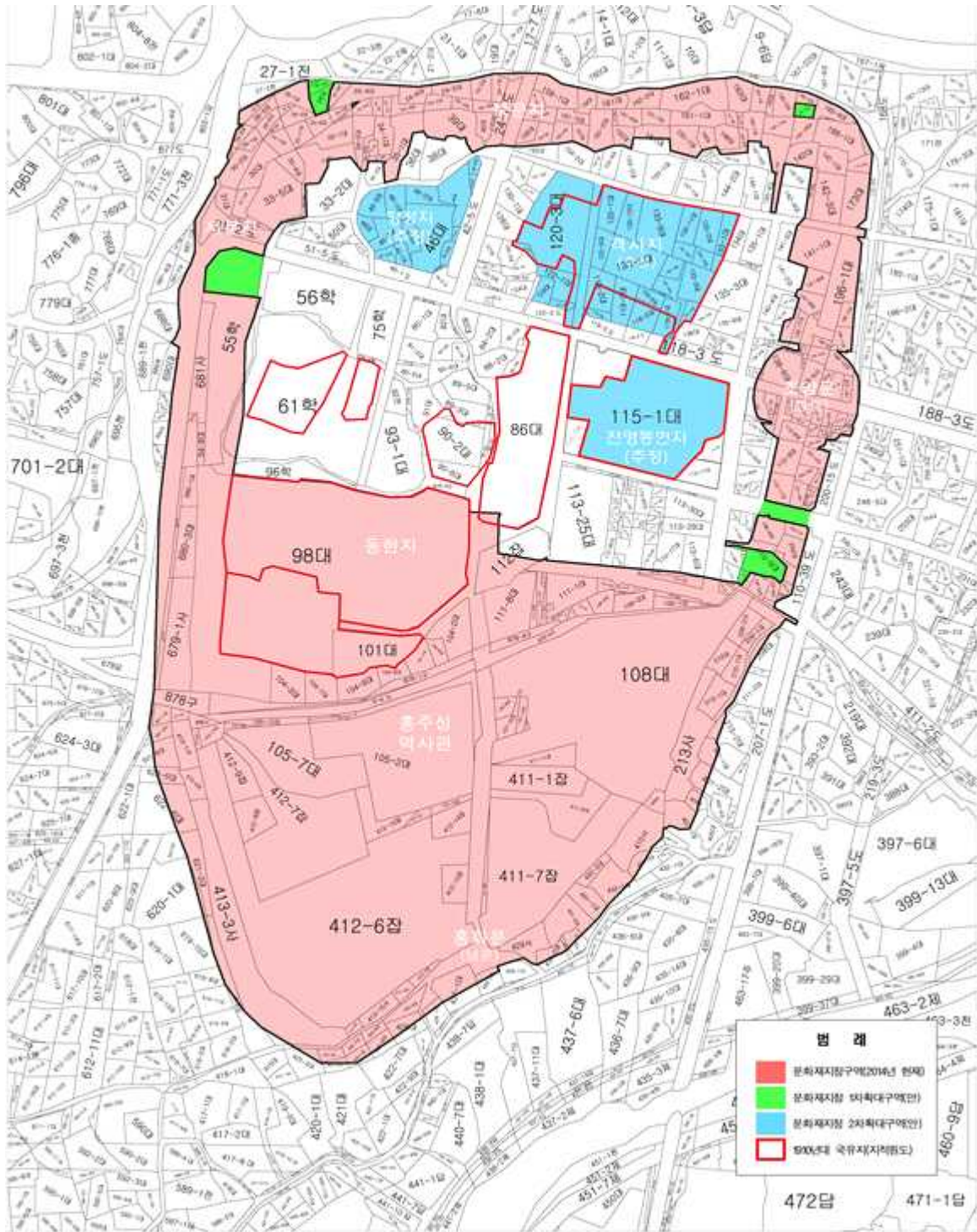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홍성 홍주읍성은 1872년 지방지도 홍주목지도와 1910년대 작성된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의 교차분석을 통해 성내에 위치했던 주요 공해시설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
 - 객사는 1872년 지방지도 홍주목지도에서 동문(조양문)과 서문으로 연결된 큰길의 북쪽 방향에 접해 남향으로 입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서 소유자가 국유로 표기된 대지들의 경계를 연결하면 고지도상에 표기된 객사의 경계와 유사한 형태의 지적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현재 예비군지역대가 위치한 곳에서 확인된다.
- 전영동헌지는 1872년 지방지도 홍주목지도에서 동문(조양문)의 바로 후편에 인접하여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각종 부속시설들과 내외삼문을 둔 독립된 형식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도의 표기를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적용해보면 현재 KT사옥이 위치한 곳과 일치하는데, 객사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가 국유로 표기된 대지가 이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향청지의 경우 1872년 지방지도 홍주목지도에서 표현된 것만으로는 객사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붉은 선으로 표기된 성내 중심도로의 동쪽편에 객사와 같은 남향으로 독립된 형식으로 배치되었다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지적원도상에서 소유자가 국유로 표기된 대지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향청의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국유지가 아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기타 동헌과 내아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 군청사와 의회청사 등이 위치한 곳으로 문화재지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홍주읍성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객사지, 전영동헌지, 향청지 등의 주요 공해시설지에 대한 지정구역 확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는 현 거주민의 생활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감안하여 거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는 홍주읍성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성내지역 전체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괄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측면에서 필요하겠으나, 거주민의 생활권, 도시계획, 구도심활성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금회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부분은 93필지, 23,596.9㎡이며, 성벽구간내 지번 분할로 인하여 누락된 범위 8필지(1,470.4㎡)와 조양문 주변 34필지(3,238.6

1)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홍성군, 2015.

m²), 객사지 29필지(8,431.9m²), 향청지 18필지(4,536m²), 전영동헌지 4필지(5,920m²)에 해당하므로 향후 홍성 홍주읍성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지정구역확대가 필요하다.

- 추가지정구역 중 성벽구간범위는 지정구역당시 지번분할시 누락된 지번과 범위에 빠져진 도로를 포함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객사지는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서 소유자가 국유로 표기된 대지들의 경계를 연결하면 고지도상에 표기된 객사의 경계와 유사한 형태의 지적이 만들어지는데, 이 범위를 포함하여 하나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전영동헌지도 마찬가지로 국유로 표기된 대지와 함께 하나의 영역을 경계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 향청지는 1872년 지방지도 홍주목지도에서 표현된 것만으로는 객사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붉은 선으로 표기된 성내 중심도로의 동쪽편에 객사와 같은 남향으로 독립된 형식으로 배치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양문 주변은 균유지와 일부 국유지 부분을 포함하며, 성벽과 맞닿아 있는 사유지 일부 구간을 추가로 지정하는 범위이다.
- 또한, 위 공해시설지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학술적인 가치뿐 아니라 지역민의 상생방안이기도 한 홍성 홍주읍성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서 읍성 전체가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신청된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향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읍성 전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홍주읍성이 완벽하게 복원정비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2015년)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안)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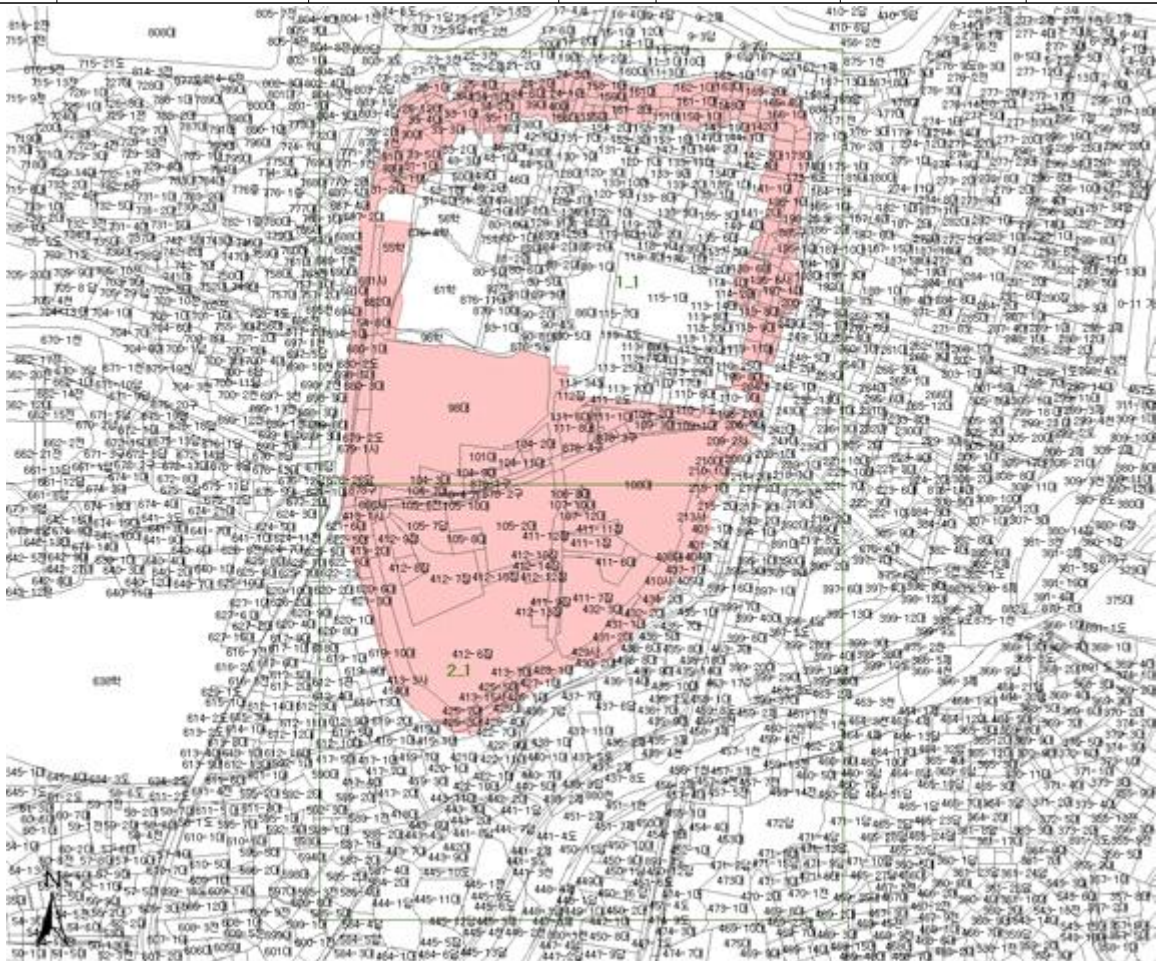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93필지 / 23,596.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구분
1	홍성읍 오관리	122-1	대	317.0	317.0	개인
2	홍성읍 오관리	122-2	대	55.0	55.0	개인
3	홍성읍 오관리	120-3	대	1,765.0	1,765.0	국유지
4	홍성읍 오관리	123	대	145.0	145.0	개인
5	홍성읍 오관리	120-5	대	198.0	198.0	개인
6	홍성읍 오관리	120-1	대	298.0	298.0	개인
7	홍성읍 오관리	133-10	대	281.0	281.0	개인
8	홍성읍 오관리	133-9	대	625.0	625.0	개인
9	홍성읍 오관리	133-8	대	704.0	704.0	개인
10	홍성읍 오관리	119-2	대	331.0	331.0	개인
11	홍성읍 오관리	119-3	대	290.0	290.0	개인
12	홍성읍 오관리	119-4	대	72.0	72.0	군유지
13	홍성읍 오관리	133-6	대	136.0	136.0	개인
14	홍성읍 오관리	129-3	대	43.0	43.0	국유지
15	홍성읍 오관리	118-1	대	233.0	233.0	개인
16	홍성읍 오관리	118-2	대	252.0	252.0	개인
17	홍성읍 오관리	133-16	대	13.0	13.0	개인
18	홍성읍 오관리	133-14	대	224.0	224.0	개인
19	홍성읍 오관리	133-13	대	145.0	145.0	개인
20	홍성읍 오관리	133-3	대	322.0	322.0	개인
21	홍성읍 오관리	136	대	191.0	191.0	개인
22	홍성읍 오관리	133-17	대	91.0	91.0	개인
23	홍성읍 오관리	135-7	대	122.0	122.0	개인
24	홍성읍 오관리	133-1	대	208.0	208.0	개인
25	홍성읍 오관리	133-2	대	291.0	291.0	개인
26	홍성읍 오관리	133-11	대	231.0	231.0	개인
27	홍성읍 오관리	133-12	대	116.0	116.0	개인
28	홍성읍 오관리	133-15	대	115.0	115.0	개인
29	홍성읍 오관리	411-2	도	44,157.0	617.9	국유지
30	홍성읍 오관리	47-2	대	89.0	89.0	개인
31	홍성읍 오관리	47-1	대	105.0	105.0	개인
32	홍성읍 오관리	45-3	대	11.0	11.0	군유지
33	홍성읍 오관리	45-5	대	83.0	83.0	개인
34	홍성읍 오관리	44-4	대	30.0	30.0	군유지
35	홍성읍 오관리	46	대	1,073.0	1,073.0	개인
36	홍성읍 오관리	46-3	대	59.0	59.0	개인
37	홍성읍 오관리	43	대	403.0	403.0	개인
38	홍성읍 오관리	42-3	대	31.0	31.0	군유지
39	홍성읍 오관리	42-2	대	59.0	59.0	개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구분
40	홍성읍 오관리	48-1	대	223.0	223.0	개인
41	홍성읍 오관리	48-2	대	248.0	248.0	개인
42	홍성읍 오관리	48-3	대	221.0	221.0	개인
43	홍성읍 오관리	49	대	136.0	136.0	개인
44	홍성읍 오관리	26	대	142.0	142.0	개인
45	홍성읍 오관리	26-1	대	18.0	18.0	군유지
46	홍성읍 오관리	26-2	도	68.0	68.0	군유지
47	홍성읍 오관리	165-5	대	86.0	86.0	군유지
48	홍성읍 오관리	55	학	2,694.0	764.0	시, 도유지
49	홍성읍 오관리	25-7	채	3.0	3.0	국유지
50	홍성읍 오관리	110-9	대	498.0	351.7	법인
51	홍성읍 오관리	110-5	대	66.0	37.7	군유지
52	홍성읍 오관리	115-7	대	221.0	221.0	법인
53	홍성읍 오관리	115-1	대	5,279.0	5,279.0	법인
54	홍성읍 오관리	113-17	대	278.0	278.0	개인
55	홍성읍 오관리	113-3	대	142.0	142.0	개인
56	홍성읍 오관리	138-7	대	17.0	17.0	군유지
57	홍성읍 오관리	139-1	대	139.0	139.0	개인
58	홍성읍 오관리	139-2	대	33.0	33.0	군유지
59	홍성읍 오관리	140-4	대	442.0	442.0	개인
60	홍성읍 오관리	140-5	대	89.0	89.0	개인
61	홍성읍 오관리	140-7	대	13.0	13.0	군유지
62	홍성읍 오관리	141-2	대	331.0	331.0	개인
63	홍성읍 오관리	141-3	대	192.0	192.0	개인
64	홍성읍 오관리	113-14	대	145.0	112.2	군유지
65	홍성읍 오관리	114-3	대	30.0	30.0	군유지
66	홍성읍 오관리	114-2	대	188.0	77.0	군유지
67	홍성읍 오관리	138-9	대	20.0	20.0	군유지
68	홍성읍 오관리	138-8	대	26.0	16.0	군유지
69	홍성읍 오관리	138-2	대	109.0	109.0	군유지
70	홍성읍 오관리	138-6	대	410.0	36.7	군유지
71	홍성읍 오관리	138-16	대	17.0	17.0	국유지
72	홍성읍 오관리	138-14	도	23.0	6.7	국유지
73	홍성읍 오관리	140-6	대	13.0	13.0	군유지
74	홍성읍 오관리	33-2	대	836	836	개인
75	홍성읍 오관리	35-2	대	139	139	개인
76	홍성읍 오관리	36	대	274	836	개인
77	홍성읍 오관리	38	대	516	139	개인
78	홍성읍 오관리	142-2	대	213	112.2	개인
79	홍성읍 오관리	142-4	대	292	30.0	개인
80	홍성읍 오관리	113-102	대	99	77.0	개인
81	홍성읍 오관리	113-35	대	198	20.0	개인
82	홍성읍 오관리	113-36	대	165	16.0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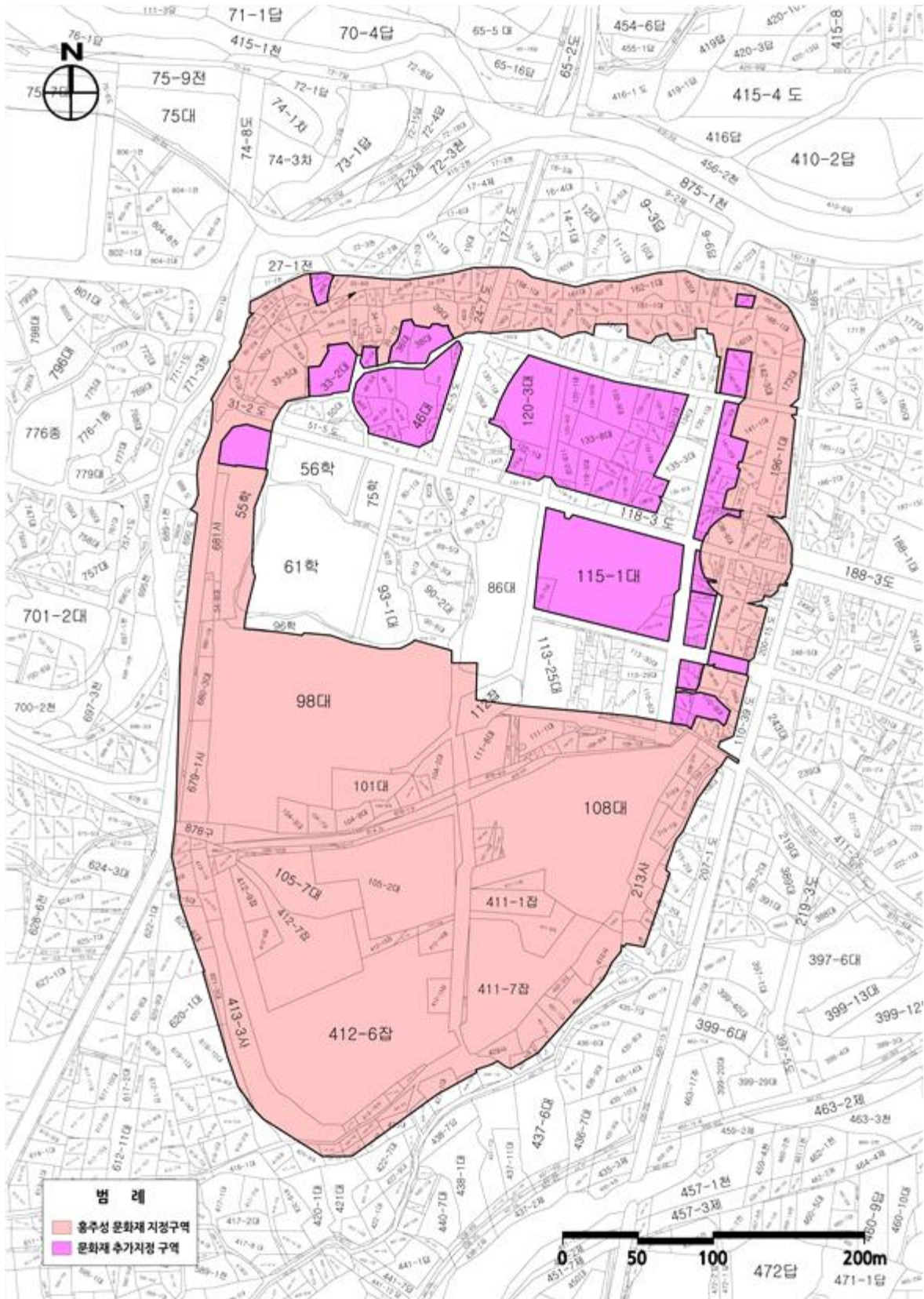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구분
83	홍성읍 오관리	113-40	대	17	109.0	개인
84	홍성읍 오관리	113-38	대	33	36.7	개인
85	홍성읍 오관리	113-37	대	60	17.0	개인
86	홍성읍 오관리	113-44	대	20	6.7	개인
87	홍성읍 오관리	113-42	대	63	13.0	개인
88	홍성읍 오관리	113-41	대	13	13	개인
89	홍성읍 오관리	110-23	대	17	17	군유지
90	홍성읍 오관리	110-25	대	160	160	개인
91	홍성읍 오관리	110-36	대	83	83	개인
92	홍성읍 오관리	110-33	대	10	10	개인
93	홍성읍 오관리	110-11	대	102	102	개인
계				23,596.9	23,5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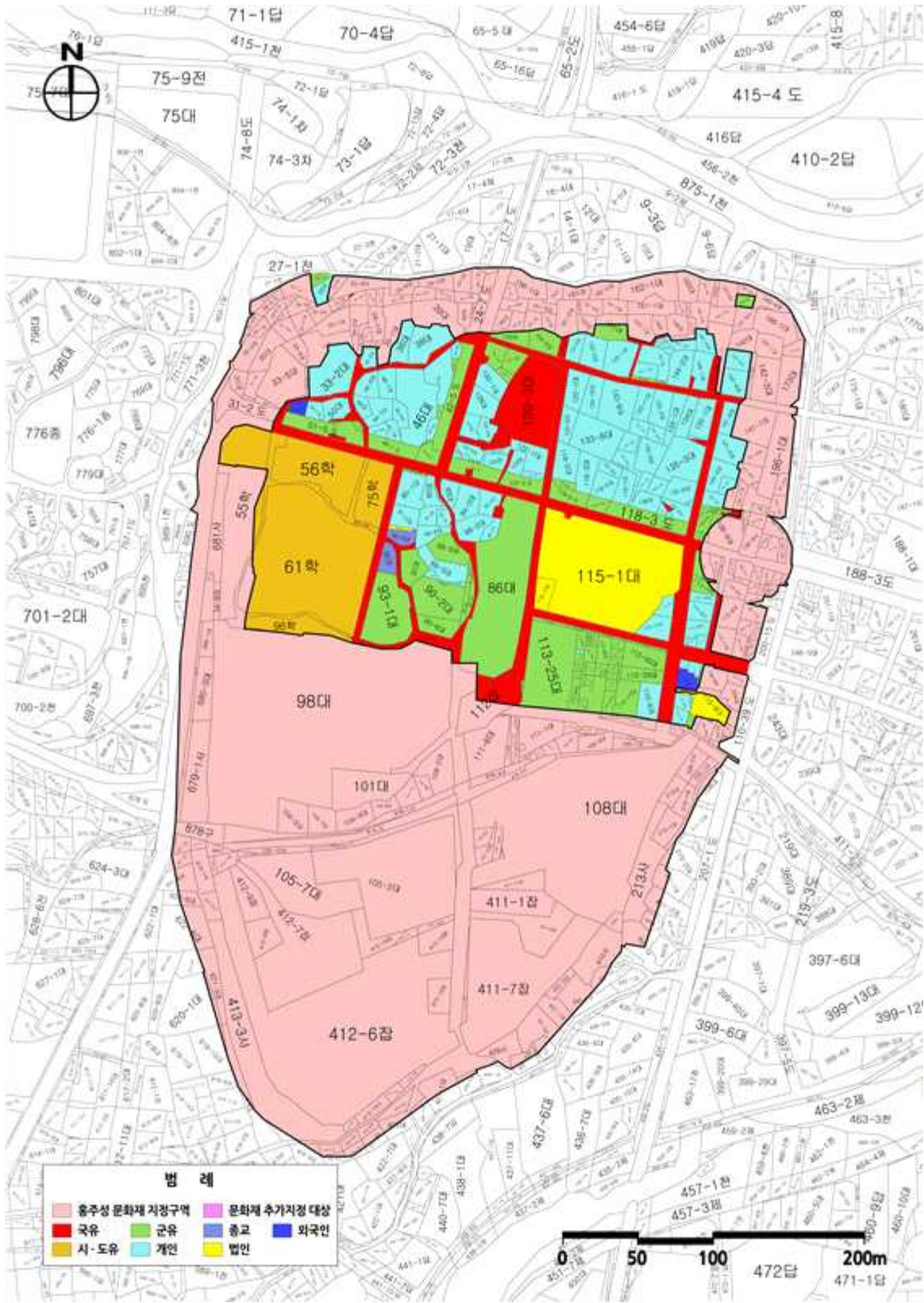
▲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 지정구역 고시 현황



홍주읍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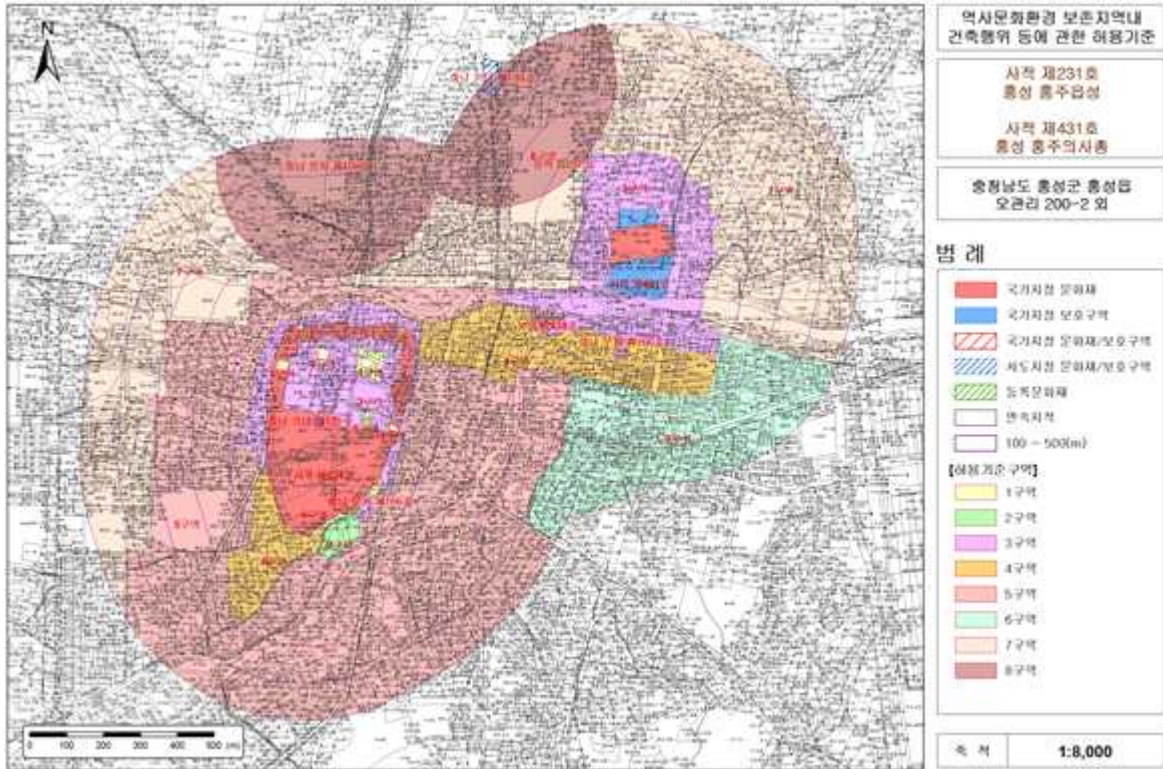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 추가지정구역도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 추가지정구역 범위 토지 소유현황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홍주읍성의 내부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으나, 지정이 될시, 연접지에 대한 경관보호를 위한 제어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본 도면은 설계변경과 치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환성 유역에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복제 및 타분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7구역	○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및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5호 홍주향교, 문화재자료 제159호 광경사지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60호 대교리 석불입상)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악취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배출하는 행위는 개별심 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성내지역 관아 건물추정지는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¹⁾

1) 수립방향

- 기 수립된 홍주읍성 복원기본계획(2004년 수립)이 10년 동안 추진되면서 수행 실적이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홍주읍성을 둘러싼 여러 당면 여건들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존 계획의 관점을 재고하여 수립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역사성 회복 우선 고려

- 홍주읍성은 역사적으로 내포지방이라 불리웠던 충남서해안 연안지역의 중심지로 현재 홍성군 구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충남도청사가 입지하게 된 내포시와도 역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이다.
- 따라서, 역사도시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보존과 원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홍주읍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도시차원에서의 사업추진보다 철저한 고증내용을 토대로 한 역사성 회복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계획수립의 기초 재설정

- 기 수립된 홍주읍성 복원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이 도심문화재들이 지니고 있던 문화재정비사업의 규제중심적 기초를 따르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그간 변화한 사회 전반의 역사도시, 도시재생,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 등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존 사업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 실현가능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재검토

- 공공시설의 자체이전계획, 단기간에 집중되는 소요사업비의 확보 등, 기 수립계획에서 실제 실현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시의성과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한다.
- 또한,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기존 사업계획 수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 및 변경안을 검토한다.

■ 우선추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전체 사업을 여건변화에 맞춘 단기사업과 향후 추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실현 가능한 우선추진 사업을 선정하여 실행 가능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우선추진 사업은 각 사업의 전체 규모와 추진 절차 등은 물론 재원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 홍성 홍주읍성 정비기본계획, 홍성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5.

2) 수립목표

- 기존 계획의 기조인 전체복원을 재검토하며 역사성 회복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다음의 세부 목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역사성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 도출

- 홍주읍성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검토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순차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한 많은 사업에서 사업비 확보, 공감대의 형성 등 다양한 당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업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도출하여 실행계획으로 제시토록 한다.

■ 우선순위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우선순위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5년 이내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청인 홍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홍주읍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교감과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한다.

■ 장기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전망제시

- 이번 계획은 기존 수립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 수립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계획안 중 장기적으로 계승해야할 사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중장기적인 사업들의 경우 역사성회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거시적 관점의 사업성격 검토와 이에 맞춘 추진방향의 재검토는 물론 향후 사업의 전망과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한다.

3) 종합정비계획

- 홍성 홍주읍성은 2004년 읍성전체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한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성내 주민의 전체 이주 및 KT사옥의 이전을 전제로 한 성내 모든 관아시설의 복원계획을 담은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 그러나 읍성전체의 원형복원 계획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과 변화된 문화재청의 문화재복원 정책방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 따라서 이번 변경계획은 2004년 수립된 계획안이 안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간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고, 도심재생사업은 물론 지역발전계획에서 문화재 지역이 지닌 특수성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존의 관점에서 대안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홍성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계획을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단기사업에는 기본적인 계획의 바탕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개년 간 추진할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중장기 사업에는 단기사업을 바탕으로 향후에 보다 정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배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우선, 단기사업은 현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매입된 문화재구역 내 성벽정비, 북문지와 서문지의 학술조사 및 복원, 현존성벽의 해체보수 및 여장설치 등 장기사업의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재 홍주읍성 주변지역은 사적지정의 특성상 성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어 관련 민원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더해 최근 내포 신도시의 건설과 도청의 이전으로 군청인근의 도심인구가 유출되는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단기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문화재지정구역내 사유지 매입으로 판단된다. 현재 문화재지정구역 중 사유지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곳은 성벽이 있었던 곳으로, 향후 성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매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읍성 내의 객사지, 전영동헌지, 향청지 등의 주요시설을 포함한 문화재지정구역의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사유지 매입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매입의 연차적인 진행에 맞춰 매입된 토지를 발굴조사하여 잔존유적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확인된 유적은 표시정비, 혹은 복원정비 등을 통해 원형 성벽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문지의 복원은 향후 도청이 위치한 내포시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문루의 추정복원까지 포함하도록 기본 방향을 검토하였다.
- 각 문지의 경우 이번 연구를 통해 각각의 고증자료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복원안을 제시하였으나, 추가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된다면 각 성문의 규모와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문지를 보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뿐만 아니라, 현존 약 810m의 성벽은 유지관리를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구간에서 성벽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연차적인 해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한 해체보수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벽이

비교적 구조적으로 안정된 남문(홍화문)을 중심으로 좌우구간에 추가로 여장을 설치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단기 사업의 추진은 현재의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읍성은 성곽으로 둘러 쌓인 영역 전체가 역사적 장소로 인식되어 그 가치가 인정되는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주읍성의 문화재 지정구역에는 객사지, 전영동헌지, 향청지 등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홍주읍성의 역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문화재추가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계획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향후 문화재구역 조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 또한 홍주읍성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비방안 중 경관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정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검토한 결과, 성내 지역의 현존 시설들에 대한 외관정비 및 한옥마을 조성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성내지역의 경관회복과 탐방객들을 위한 기본시설 또한 함께 검토하였다.
- 중장기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기사업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이므로, 성 내부지역에 대한 문화재추가지정 및 토지매입, 객사지, 전영동헌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세부 학술연구와 복원계획안 작성 등이 검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군청사와 의회청사, 홍주초등학교, KT사옥 홍성지점 등의 이전도 함께 검토되어 대안이 제시되었다.
- 중장기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사업이 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현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심재생사업에 홍주읍성과 연계된 사업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홍주읍성의 사업계획 중 도시계획분야와 관련된 계획들은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문화유적은 물론 성내 주요 건물지를 관통하는 몇몇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맞춰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각 세부 사업은 분야별 사업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한다.



9. 종합의견

- 본 건은 홍성 홍주읍성의 관아터와 체성부 중 누락된 필지를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 지정구역 중 체성벽 구간 범위는 지번 분할시 누락된 것과 지정 범위에서 빠진 도로 등에 해당하므로 추가지정이 타당함.
- 읍성내부 공해시설로서 고지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사, 향청, 동헌 유지는 향후 지정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발굴조사를 거쳐 점유지역의 범위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이에 성벽구간 내 지번 분할로 인하여 누락된 범위 8필지(1,470.4㎡)는 추가지정하고, 조양문 주변 34필지(3,238.6㎡), 객사지 29필지(8,431.9㎡), 향청지 18필지(4,536㎡), 전영동헌지 4필지(5,920㎡)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용인 보정동 고분군 편의시설 공사 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용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편의시설 공사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용인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편의시설 공사 추진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받고자 부의함
-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 2009.06.24.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편의시설 공사(안) 적정성 검토>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가) 건축물 신축 : 제1종 근린생활시설(관리실 및 공용화장실)
 - 건축면적/연면적 : 50.5㎡/50.5㎡(관리실 16.34㎡, 화장실34.16㎡)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2.9m(경사지붕)
 - 구조 : 철골구조
 - 나) 편의시설 설치
 - 주차장(총12면(장애인 2면 포함) 포장 : 황토경화포장 436㎡, 잔디블럭포장 125㎡
 - 장애인 보행로 설치(램프) : 길이(70m), 폭 1.5m
 - 자연석 배수로 50m, 자연석 석축(H=1.0m) 13m, 역L형옹벽((H=1.0m) 63m, 가로등 5개소, 음수대 1개소
 - 다) 녹지조성
 - 잔디식재 25㎡, 패랭이꽃 122㎡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20.09./문화재위원 ○○○)

- 주차장, 인도 등의 포장재료와 형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화장실은 유적지와 어울리도록 무광택으로 하고 색은 투톤정도로 채도만 달리하여 단순화함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5. 공주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내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방문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 1990.10.26.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11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3) 신청내용
 - 건축면적 859.62㎡, 지상1층, 최고높이 6.4m
 - 위치 : 현 매표소
 - 노출콘크리트, 탄화목, 커튼월 마감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석장리 유적은 현재 관련 박물관, 기념관이 건립되어 유적 홍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매표소로 이용되는 유적 진입공간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유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관련 건물들이 있는 상황으로 유적 보존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6. 공주 공산성 내(은개골) 화장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2021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공주 공산성」 내(은개골) 화장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산성과 옥녀봉성 사이 골짜기인 은개골에 조성된 역사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산성과 은개골 사이의 탐방로를 정비하려는 기본계획을 검토 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년 4차 위원회('21.04.14.) 부결 : 화장실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화장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35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설치 : 폭 3.4m × 길이 7m × 높이 3.3m
(당초 - 금강 및 공산성 쪽 사면 하단, 변경 - 은개길 마을 쪽 고개 아래)
 - 탐방로 정비 : 식생매트재설치 102.6m, 목재계단설치 19.62m, 로프난간설치 320.4m
- (4) 신청인 의견
 - 은개골 역사공원 내에 현재 화장실이 없고, 공산성과 은개골을 연결하는 기존 탐방로에 계단이 부족하고 난간이 없으며 일부 훼손되어 있어 위험하므로,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21-05-016

1.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관계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득한 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 받은 사항을 보고함
- '21년 4차 위원회('21.04.13.)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협의 결과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 보고 후 시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 1985.11.0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남종면 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46 외 40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4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4구역(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구분	'19년 8차 위원회 (조건부 허가)	'21년 4차 위원회 (조건부 가결안)	금회 관계전문가 협의 결과(반영안)	비고
건축부지	33,600㎡	35,415㎡	33,287㎡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8,061.72㎡	7,195.89㎡	7,654.18㎡	
연 면 적	25,390.81㎡	105,822.65㎡	105,809.23㎡	

구분	'19년 8차 위원회 (조건부 허가)	'21년 4차 위원회 (조건부 가결안)	금회 관계전문가 협의 결과(반영안)	비고
규모	지상2~6층(44개동)	지하3층~지상22층 (지상 최저 6층)(9개동)	지하3층~지상22층 (지상 최저12층)(9개동)	
세대수	총355세대	총628세대	총624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0.05m	69.9m	69.9m	

라. 참고자료

(1) 관계전문가 협의(자문의견)('21.04.28./문화재위원 ○○○, ○○○)

- 문화재 인접동 규모 조정
 - 104동 : ‘ㄴ’형의 평면조합을 ‘一’형으로 수정하여 통경축 확보할 것,
5호 조합을 2호 조합으로 조정하여 문화재 방향으로 완충구역
추가 확보할 것
 - 105동 : 5호 조합을 4호 조합으로 조정하여 문화재 방형으로 완충구역
추가 확보할 것
- 도시계획도로 후퇴배치
 - 문화재 인접동 규모 조정으로 확보된 완충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문화재로부터 이격하여 조성할 것
- 단지 중앙부 발굴유적 보존 공원의 성격 재검토
 - 기부채납부지에 해당하는 발굴유적 보존 공원을단지 내 휴게공간(선큰
등)으로 대체하는 대신
 - 문화재방향 완충구역으로 기부채납면적을 집중시킴으로써, 문화재 방향
완충구역을 최대한 확보할 것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접수 10명

2.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3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4.28.(수) 14:00~17: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
- 참석위원 : 이재운, 김건수, 유재춘, 이순희, 이승용, 이영식, 진상철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등 현상변경 허가 심의 30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5건, 부결 17건, 보류 6건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5-3(답), 15-5(대), 15-6(전)(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금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건축</td> <td>주택1</td> <td>89.14 / 5.75</td> </tr> <tr> <td>주택2</td> <td>89.14 / 6.1</td> </tr> <tr> <td>주택3</td> <td>89.14 / 5.75</td> </tr> <tr> <td>주택4</td> <td>89.14 / 5.75</td> </tr> <tr> <td>주택5</td> <td>89.14 / 5.75</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토목 (부지 구성)</td> <td>석축</td> <td>(H0.5~1.5m) L=26m</td> </tr> <tr> <td>보강토</td> <td>(H0.3~0.8m) L=163m</td> </tr> <tr> <td>콘크리트포장</td> <td>(t=0.2) A=434m²</td> </tr> <tr> <td>우수관로</td> <td>(D=300) L=352m</td> </tr> <tr> <td>집수정 및 우수받이</td> <td>31개소</td> </tr> <tr> <td></td> <td>진입로 개설</td> <td>(L=15m) 기존 12m 포장도로</td> </tr> </tbody> </table>	구분		금회	건축	주택1	89.14 / 5.75	주택2	89.14 / 6.1	주택3	89.14 / 5.75	주택4	89.14 / 5.75	주택5	89.14 / 5.75	토목 (부지 구성)	석축	(H0.5~1.5m) L=26m	보강토	(H0.3~0.8m) L=163m	콘크리트포장	(t=0.2) A=434m ²	우수관로	(D=300) L=352m	집수정 및 우수받이	31개소		진입로 개설	(L=15m) 기존 12m 포장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
구분		금회																												
건축	주택1	89.14 / 5.75																												
	주택2	89.14 / 6.1																												
	주택3	89.14 / 5.75																												
	주택4	89.14 / 5.75																												
	주택5	89.14 / 5.75																												
토목 (부지 구성)	석축	(H0.5~1.5m) L=26m																												
	보강토	(H0.3~0.8m) L=163m																												
	콘크리트포장	(t=0.2) A=434m ²																												
	우수관로	(D=300) L=352m																												
	집수정 및 우수받이	31개소																												
	진입로 개설	(L=15m) 기존 12m 포장도로																												

건 명	내 용	결 과																				
2. 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물 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9번지 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3 421 1110 680"> <thead> <tr> <th>구분</th> <th>기존(철거예정)</th> <th>신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면적</td> <td>53.89㎡</td> <td>50.49㎡</td> <td>△3.4㎡</td> </tr> <tr> <td>높이</td> <td>4.98m(1층)</td> <td>5.99m(1층)</td> <td>+1.01m</td> </tr> <tr> <td>구조</td> <td>목구조, 조적조</td> <td>한식목구조</td> <td></td> </tr> <tr> <td>지붕</td> <td>우직각지붕 (시멘트기와)</td> <td>우직각지붕 (한식 토기와)</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철거예정)	신축	비고	면적	53.89㎡	50.49㎡	△3.4㎡	높이	4.98m(1층)	5.99m(1층)	+1.01m	구조	목구조, 조적조	한식목구조		지붕	우직각지붕 (시멘트기와)	우직각지붕 (한식 토기와)		○ 원안가결
구분	기존(철거예정)	신축	비고																			
면적	53.89㎡	50.49㎡	△3.4㎡																			
높이	4.98m(1층)	5.99m(1층)	+1.01m																			
구조	목구조, 조적조	한식목구조																				
지붕	우직각지붕 (시멘트기와)	우직각지붕 (한식 토기와)																				
3. 고양 행주산성 주변 무장애 생태·역사탐방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행주산성 무장애 주변 생태 탐방로(무장애 동선) 설치 : 750.0m(길이), 3.5m(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4. 수원 화성 주변 주거복합건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1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8, 9구역, 사업시행 전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득할 것)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6,404.0㎡ - 건축면적/연면적 : 3,834.63㎡/43,778.62㎡ - 건물규모 : 지하3층~지상 15층 · 101동(48세대) : 9층(32.85m) · 102동(98세대) : 15층(50.59m) · 103동(98세대) : 15층(50.59m) - 최고높이 50.59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5. 서울 남현동 요지 주변 업무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4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78.7㎡ - 건축면적(연면적) : 239.13㎡(1,560.44㎡) - 층수(높이) : 지하1층, 지상 8층(26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 공주 공산성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46-2, 46-16(세계유산구역 아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5m 이격/5구역) ○ 신청내용 - 규모 : 대지면적 881㎡, 건축면적 565.5474㎡, 연면적 5,881.4930㎡ - 건축물 : 건축높이 39.9m(허용높이 32m 이하)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40세대),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지상12층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7. 익산 왕궁리 유적 주변 자전거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148-11 등 33필지(세계유산 완충구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과 연결/2, 4,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 사업부지면적 : 4,341㎡ - 사업 연장 및 폭원 : L=1.2km, B=3.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8. 파주 삼릉 주변 전통한옥 단지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3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1,517㎡ - 건축면적 : 1,758.96㎡ - 연면적 : 1,758.96㎡ - 최고높이 : 5.66m - 건축규모 : 지상1층, 18세대 - 구조 : 한식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궁능본부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시행
9.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93 임, 62-336임(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9.2m 이격/1, 2구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지상 1~2층 8동, 옹벽(0~3m) 669.0m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195㎡ - 건축면적 : 544.76㎡ - 연면적 : 559.72㎡ - 최고높이 : (1구역)1층/4.8m, (2구역)2층/7.5m - 건축규모 : 8세대 - 옹벽 : H=0~3m/669m - 절토/성토량 : 945㎡/4,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0.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54-14 외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건축 14,708㎡, 도로 2,652㎡ - 건축면적(연면적) : 4,074.05㎡(4,074.05㎡) - 최고높이(층수) : 5.8m(지상1층) - 건축규모 : 주택 41동 RC조 - 절성토량 : 절토 8,063.34㎡, 성토 4,80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 궁능본부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시행

건 명	내 용	결 과																							
11.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현 김포공원묘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5,004㎡ - 연면적 : 264,975.66㎡ - 용적율 : (1단지) 215.41%, (2단지) 215.76% - 최고높이 : (1단지) 54.3m~45.9m, (2단지) 54.3m~51.5m - 세대수 : 1,617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2.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96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3, 4 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6 801 1107 128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금회 신청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부지면적</td> <td>38,325㎡(도로4,962㎡,공원10,845㎡)</td> </tr> <tr> <td>건축면적</td> <td>4,704.26㎡</td> </tr> <tr> <td>연면적</td> <td>45,012.02㎡</td> </tr> <tr> <td>세대수</td> <td>385세대</td> </tr> <tr> <td>건축규모</td> <td>지하2층~지상20층</td> </tr> <tr> <td rowspan="2">최고높이</td> <td>3구역</td> <td>최고높이 49.65m</td> </tr> <tr> <td>4구역</td> <td>최고높이 63.9m</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도로Level: +15.4</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단지내 Level: +24.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단지내 Level: +2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 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작은도서관, 기계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구 분	금회 신청사항	부지면적	38,325㎡(도로4,962㎡,공원10,845㎡)	건축면적	4,704.26㎡	연면적	45,012.02㎡	세대수	385세대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최고높이	3구역	최고높이 49.65m	4구역	최고높이 63.9m	도로Level: +15.4		단지내 Level: +24.0		단지내 Level: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구 분	금회 신청사항																								
부지면적	38,325㎡(도로4,962㎡,공원10,845㎡)																								
건축면적	4,704.26㎡																								
연면적	45,012.02㎡																								
세대수	385세대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최고높이	3구역	최고높이 49.65m																							
	4구역	최고높이 63.9m																							
도로Level: +15.4																									
단지내 Level: +24.0																									
단지내 Level: +28.0																									
13.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36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8개동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 설명자료의 건축물 8개동은 부지 조성을 위한 예시자료이며 향후 단독주택 신축 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예정 - 대지면적: 4,955㎡, 건축부지면적: 2,974㎡, 도로편입면적: 1,981㎡ - 보강토옹벽(H=0~4.9m, L=385.5m), 역L형옹벽(H=0~4.5m, L=195.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14.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46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및 높이: 전통목구조(한식토기와잇기), 6m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대지면적 : 705㎡ - 건축면적·연면적 : 98.53㎡ - 건폐율·용적율: 13.98% - 건물높이 : 6.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5. 경주 나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21-3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6 763 1107 113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data-bbox="456 763 592 808">구분</th> <th data-bbox="592 763 884 808">최초 허가('20.6.9.)</th> <th data-bbox="884 763 1107 808">금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6 808 592 1003">건축구조</td> <td data-bbox="592 808 884 1003">시멘트 벽돌조, 평스라브, 일부 기와잇기</td> <td data-bbox="884 808 1107 1003">철근콘크리트조 + 한식목구조 혼용 공법, 맞배지붕, 기와잇기</td> </tr> <tr> <td data-bbox="456 1003 592 1048">건축규모</td> <td data-bbox="592 1003 884 1048">지상 1층, 1동</td> <td data-bbox="884 1003 1107 1048">지상 1층, 1동</td> </tr> <tr> <td data-bbox="456 1048 592 1093">연면적</td> <td data-bbox="592 1048 884 1093">98.28㎡</td> <td data-bbox="884 1048 1107 1093">97.2㎡</td> </tr> <tr> <td data-bbox="456 1093 592 1137">최고높이</td> <td data-bbox="592 1093 884 1137">5.2m</td> <td data-bbox="884 1093 1107 1137">6.84m</td> </tr> </tbody> </table> <p data-bbox="456 1149 1107 1256">*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영향성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건축신고-103('00.6.9.))</p> 	구분	최초 허가('20.6.9.)	금회	건축구조	시멘트 벽돌조, 평스라브, 일부 기와잇기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목구조 혼용 공법, 맞배지붕, 기와잇기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지상 1층, 1동	연면적	98.28㎡	97.2㎡	최고높이	5.2m	6.8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구분	최초 허가('20.6.9.)	금회															
건축구조	시멘트 벽돌조, 평스라브, 일부 기와잇기	철근콘크리트조 + 한식목구조 혼용 공법, 맞배지붕, 기와잇기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지상 1층, 1동															
연면적	98.28㎡	97.2㎡															
최고높이	5.2m	6.84m															
16. 경주 나정 주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42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및 높이 철근콘크리트구조(한식골기와) / 7.15m - 건축규모 지상 1층, 1동 - 건축면적 155.80㎡ / 연면적: 136.80㎡ - 건폐율 19.67% / 용적율 : 17.27% - Con'c 포장 : T=20cm, 수량=654.0㎡ - 우수받이 : 510×410×940, 수량=6개소 - PE관 : D300mm, 수량=6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17. 경주 서악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7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구조 및 규모 : 목구조(한식토기와) / 1층, 6.9m · 대지면적 : 740㎡ / 건축면적·연면적: 99.45㎡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쌓기 : H=0.5-1m, L=65m · 성토 : H=평균 0.5m, 총 242㎡ · 절토 : H=평균 0.3m, 총 40㎡ · 콘크리트포장 : A=33㎡ · 콘크리트 + 아스콘덧씌우기 A : 130㎡ · 배수계획 : 이중벽PE관 D150-86m, 이중벽 PE관 D300-51m, 집수정 3개소, 우수받이 5개, 배수암거 1개소(4×1.5, L=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8. 관문성 주변 제2종 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3-8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54 1025 1110 1995"> <thead> <tr> <th data-bbox="454 1025 571 1111">구분</th> <th data-bbox="571 1025 810 1111">기 허가('20.5.1.)</th> <th data-bbox="810 1025 1110 1111">1차 변경허가 신청('21.1.06.) 및 금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1111 571 1155">대지면적</td> <td data-bbox="571 1111 810 1155">1,764㎡</td> <td data-bbox="810 1111 1110 1155">1,804㎡</td> </tr> <tr> <td data-bbox="454 1155 571 1240">건축구조</td> <td data-bbox="571 1155 810 1240">철골조/평지붕 (일부경사)</td> <td data-bbox="810 1155 1110 1240">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td> </tr> <tr> <td data-bbox="454 1240 571 1285">건축규모</td> <td data-bbox="571 1240 810 1285">지상 2층, 2동</td> <td data-bbox="810 1240 1110 1285">지상 2층, 1동</td> </tr> <tr> <td data-bbox="454 1285 571 1330">최고높이</td> <td data-bbox="571 1285 810 1330">9.5m</td> <td data-bbox="810 1285 1110 1330">9.17m</td> </tr> <tr> <td data-bbox="454 1330 571 1415">연면적</td> <td data-bbox="571 1330 810 1415">392.5㎡(1층 246.9㎡, 2층 146.5㎡)</td> <td data-bbox="810 1330 1110 1415">472.89㎡(1층 351.5㎡, 2층 121.39㎡)</td> </tr> <tr> <td data-bbox="454 1415 571 1491">용도</td> <td data-bbox="571 1415 810 1491">단독주택(다가구주택)</td> <td data-bbox="810 1415 1110 1491">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td> </tr> <tr> <td data-bbox="454 1491 571 1995">토목 등</td> <td data-bbox="571 1491 810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토사량 55㎡, 절토량 60㎡(H=3.5m), 성토량 115㎡(H=6.5m) · 석축 : (H=0~2.9m) 31m, (H=2~2.9m) 23m · L형 옹벽 : (H=4.9m) 46m </td> <td data-bbox="810 1491 1110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성토량 450㎡ · 석축 : (H=0.9~1.5m) 15m · L형 옹벽 : (H=1.0~4.5m) 100m * 금회 하천부분의 석축을 옹벽으로 변경 · 메쉬웬스(L=168.0m, H=1.2m) · 콘크리트 포장(T=20cm, A=212.0㎡) * 금회 2층 평면 및 입면 일부 변경 </td> </tr> </tbody> </table>	구분	기 허가('20.5.1.)	1차 변경허가 신청('21.1.06.) 및 금회	대지면적	1,764㎡	1,804㎡	건축구조	철골조/평지붕 (일부경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 2층, 2동	지상 2층, 1동	최고높이	9.5m	9.17m	연면적	392.5㎡(1층 246.9㎡, 2층 146.5㎡)	472.89㎡(1층 351.5㎡, 2층 121.39㎡)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토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토사량 55㎡, 절토량 60㎡(H=3.5m), 성토량 115㎡(H=6.5m) · 석축 : (H=0~2.9m) 31m, (H=2~2.9m) 23m · L형 옹벽 : (H=4.9m) 4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성토량 450㎡ · 석축 : (H=0.9~1.5m) 15m · L형 옹벽 : (H=1.0~4.5m) 100m * 금회 하천부분의 석축을 옹벽으로 변경 · 메쉬웬스(L=168.0m, H=1.2m) · 콘크리트 포장(T=20cm, A=212.0㎡) * 금회 2층 평면 및 입면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구분	기 허가('20.5.1.)	1차 변경허가 신청('21.1.06.) 및 금회																								
대지면적	1,764㎡	1,804㎡																								
건축구조	철골조/평지붕 (일부경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 2층, 2동	지상 2층, 1동																								
최고높이	9.5m	9.17m																								
연면적	392.5㎡(1층 246.9㎡, 2층 146.5㎡)	472.89㎡(1층 351.5㎡, 2층 121.39㎡)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토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토사량 55㎡, 절토량 60㎡(H=3.5m), 성토량 115㎡(H=6.5m) · 석축 : (H=0~2.9m) 31m, (H=2~2.9m) 23m · L형 옹벽 : (H=4.9m) 4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 성토량 450㎡ · 석축 : (H=0.9~1.5m) 15m · L형 옹벽 : (H=1.0~4.5m) 100m * 금회 하천부분의 석축을 옹벽으로 변경 · 메쉬웬스(L=168.0m, H=1.2m) · 콘크리트 포장(T=20cm, A=212.0㎡) * 금회 2층 평면 및 입면 일부 변경 																								

건 명	내 용	결 과																					
<p>19. 광주 조선백자요지 주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p>	<p>○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무갑리 54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54 383 1109 918"> <thead> <tr> <th data-bbox="454 383 571 427">신청인</th> <th data-bbox="571 383 837 427">A</th> <th data-bbox="837 383 1109 427">B</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4 427 571 551">신청면적</td> <td data-bbox="571 427 837 551">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td> <td data-bbox="837 427 1109 551">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td> </tr> <tr> <td data-bbox="454 551 571 595">건축면적</td> <td data-bbox="571 551 837 595">155㎡</td> <td data-bbox="837 551 1109 595">155㎡</td> </tr> <tr> <td data-bbox="454 595 571 640">연면적</td> <td data-bbox="571 595 837 640">155㎡</td> <td data-bbox="837 595 1109 640">155㎡</td> </tr> <tr> <td data-bbox="454 640 571 763">최고높이</td> <td data-bbox="571 640 837 763">7.94m (지상1층, 경사지붕)</td> <td data-bbox="837 640 1109 763">7.94m (지상1층, 경사지붕)</td> </tr> <tr> <td data-bbox="454 763 571 808">구조</td> <td data-bbox="571 763 837 808">일반철골조</td> <td data-bbox="837 763 1109 808">일반철골조</td> </tr> <tr> <td data-bbox="454 808 571 918">구조물 설치</td> <td colspan="2" data-bbox="571 808 1109 918">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td> </tr> </tbody> </table>	신청인	A	B	신청면적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건축면적	155㎡	155㎡	연면적	155㎡	155㎡	최고높이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구조물 설치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p>○ 보류</p> <p>- 주변 현상변경 현황 자료보완 후 재검토</p>
신청인	A	B																					
신청면적	○ 총 797㎡ - 부지 : 784㎡ - 도로 : 13㎡	○ 총 859㎡ - 부지 : 785㎡ - 도로 : 74㎡																					
건축면적	155㎡	155㎡																					
연면적	155㎡	155㎡																					
최고높이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7.94m (지상1층, 경사지붕)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구조물 설치	- L형옹벽(H=1.0m) : 19m - 석축쌓기(H=0.5~1.2m) : 47.2m - 웬스설치(H=1.0m) : 142m - 아스콘포장(T=325mm) : 1,293㎡																						
<p>20. 연천 당포성 주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사무소) 부지 조성</p>	<p>○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7, 771번지(문화재보호구역 연접/2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998㎡(건축부지 557㎡, 도로부지 441㎡) - 건축면적/연면적 : 49.68㎡/49.68㎡ - 건물규모 : 지상1층(1동) - 최고높이 : 4.6m(경사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보강토 옹벽(H=0.2~1.0m) 22㎡, 자연석쌓기(H=1.9m)이하 164.6㎡, 콘크리트 포장(T=20cm) 427.5㎡, 성토 828.2㎡ 등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p>21. 남한산성 주변 가설건축물(유리온실) 설치</p>	<p>○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6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5m 이격/2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57㎡ - 온실 설치면적 : 25.74㎡(3.9m×6.6m) - 최고높이 : 2.5m(경사 유리지붕) - 구조 : 파이프조 + 유리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건 명	내 용	결 과																								
22. 강화산성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p>○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27-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8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54 421 1109 851"> <thead> <tr> <th>구분</th> <th>최초허가 ('16.10.31)</th> <th>금회 신청</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m²)</td> <td>338</td> <td>338</td> </tr> <tr> <td>용도</td> <td>단독주택</td> <td>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td> </tr> <tr> <td>건축면적(m²)</td> <td>89.19</td> <td>92.25(증3.06)</td> </tr> <tr> <td>연면적(m²)</td> <td>89.19</td> <td>174.75(증85.56)</td> </tr> <tr> <td>건축규모</td> <td>지상 1층(총1동)</td> <td>지상 2층(1동)</td> </tr> <tr> <td>최고높이(m)</td> <td>5.4(경사지붕 4/10)</td> <td>6.0(증0.6)(경사지붕)</td> </tr> <tr> <td>구조</td> <td>경량철골구조</td> <td>좌동</td> </tr> </tbody> </table>	구분	최초허가 ('16.10.31)	금회 신청	신청면적(m ²)	338	338	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건축면적(m ²)	89.19	92.25(증3.06)	연면적(m ²)	89.19	174.75(증85.56)	건축규모	지상 1층(총1동)	지상 2층(1동)	최고높이(m)	5.4(경사지붕 4/10)	6.0(증0.6)(경사지붕)	구조	경량철골구조	좌동	<p>○ 조건부가결</p> <p>-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p>
구분	최초허가 ('16.10.31)	금회 신청																								
신청면적(m ²)	338	338																								
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건축면적(m ²)	89.19	92.25(증3.06)																								
연면적(m ²)	89.19	174.75(증85.56)																								
건축규모	지상 1층(총1동)	지상 2층(1동)																								
최고높이(m)	5.4(경사지붕 4/10)	6.0(증0.6)(경사지붕)																								
구조	경량철골구조	좌동																								
23.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p>○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59-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8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95.25m²/162.0m² - 규모/최고높이 : 지상2층(1동)/8.0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24. 단양 수양개 유적 주변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p>○ 위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93-22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1층, 4m×8m×높이 4m(옥상 난간 포함) - 외관 : 나무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소재 사용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25. 아차산 일대 보루군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	<p>○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4-19(문화재 구역과 연접/1구역)</p> <p>○ 사업내용 :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3단형(5.8m×3m)</p>	<p>○ 부결</p> <p>-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26. 서울 한양도성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p>○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27-96(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2m 이격)</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1.7m² - 건축면적(연면적) : 24.88m²(83.29m²) - 규모(높이) : 지상4층(13.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p>○ 보류</p> <p>- 설계보완 후 재검토</p>																								
27. 서울 의릉 주변 성북구-동대문구 간 산책로 연결	<p>○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8-10 일대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크계단(폭: 2~3m 길이: 약 100m) 및 안전난간 설치, 수목식재 등 	<p>○ 보류</p> <p>- 현지조사 후 재검토</p>																								

건 명	내 용	결 과
28.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농업용 창고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585-21, 585-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198㎡(5.5m×4m), 지상 1층, 경량 철골조, 최고 높이 6.1m - 건물주변 마당 정비(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9. 남원 만인의총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725-22 일원(문화 재보호구역으로부터 1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도로 개설 : L=217m, B=2.5m / 칼라 아스콘 포장(506㎡) -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한 지면 성토 : H=약 1.2m, 288㎡ - 도로 경계석 설치 : L=221m, 수목보호시설 설치 : 34개소 - 법면 조경석 쌓기(A=200㎡), 꽃잔디 1,200본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30. 고령 주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02-14 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8m 이격/6구역, 공통사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실): 1,609.0㎡, 건축면적: 517.47㎡, 연면적 : 5,750.19㎡ - 건폐율: 32.16% 용적율: 346.85% - 최고높이: 48.8m,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수 : 아파트 42세대, 오피스텔 14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라.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접수 10명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사적 「대구 진천동 입석」 내에 고사목 제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5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대구 진천동 입석	대구시 달서구	○○○	<고사목 제거>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470-38 번지 외(매장문화재유존지역)(문화재 구역) ○ 사업내용 : 고사목(소나무) 1주 제거 ○ 허가조건 -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조사는 관계부서와 협의 후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1.04.29.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	<봉축탑 설치 및 점등식 봉행 행사>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시설물 설치기간 및 봉행 행사일 · 봉축탑 설치 : '21.4.15.~5.15. · 점등식 봉행 행사 : '21.4.24. - 시설물 설치 현황 · 봉축탑 설치 : 3층(가로 9m×세로 9m×높이 10m) · 봉행 행사 : 텐트 2개(가로 5m×세로 5m×높이 4m), 의자 90개	허가	'21.04.1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	<p><비봉리 패총 전시관 누수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4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지붕 위 방수공사(금속판 방수 공사) - 건축규모 및 구조 : 1동/ 철근 콘크리트 및 경량철구조/최고높이 11.6m(높이 변화 없음) - 대지면적 : 4,207㎡, - 건축면적 : 224.75㎡ - 연 면 적 : 1437.5㎡ 	허가	'21.04.13.
사적 통영 삼도수군통 제영	경남 통영시	○○○	<p><임시 경관조명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 - 규모 : 나비 조형물(W6m×D4m×H3.7m), 전구 조형물 설치(W45m×D1m×H2.5m/10W 전구 70여개 구성) - 설치 기간 : 2021.5.1.~2021.5.9.(행사일 5.7~5.8.) ※ 문화재청 2021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허가조건 - 안전관리대책 및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 할 것 	조건부 허가	'21.04.29.
사적 성주 성산동 고분군	경북 성주시	○○○	<p><제41호분 복원정비를 위한 시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895-1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미정비 고분에 대해 시굴조사 - 규모: 가로 11.3m, 세로 10.5m, 높이 1.9m ○ 허가조건 - 시굴조사 후 복원정비시 설계검토를 받을 것 	조건부 허가	'21.04.29.
사적 관문성	울산시 북구	○○○	<p><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 81-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720㎡ - 규모 : 18㎡/1개소 	허가	'21.05.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청주 정북동 토성	충북 청주시	○○○	<p><보호구역 내 전력지중화 및 배수로 준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88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관로 신설(L=120m), 전기맨홀 신설 1개소(0.6m×0.6m, 굴착 0.3m³) - 지중화 굴착 : 0.8m(폭) × 550.0m(길이) × 0.5m(깊이) = 220.0m³ - 배수로 준설 : 0.8m(폭) × 380.0m(길이) × 0.2m(깊이) = 60.8m³ ○ 허가기간 : 2021. 4. 12. ~ 2022. 4. 11. 까지 ○ 허가조건 : 굴착 시 관계공무원 입회 	조건부 허가	'21.04.12.
사적 청주 정북동 토성	충북 청주시	○○○	<p><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380-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막(컨테이너 3m×6m, 높이 2.6m) 설치 ○ 허가기간 : 2021. 4. 12. ~ 2023. 4. 11. 까지(2년) ○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막 설치는 허가일로 부터 2년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2)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은 불가합니다. 3) 농막 외관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 패널 등 설치를 권장합니다. 4)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 성토, 다락 설치, 테크, 난간, 천막, 파고라 등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며, 농막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조건부 허가	'21.04.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북 진천군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493(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농막(컨테이너 3m×6m) 설치 ○ 허가기간 : 2021. 4. 12. ~ 2023. 4. 11. 까지(2년) ○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막 컨테이너 설치는 허가일로 부터 2년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2) 농막 컨테이너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은 불가합니다. 3) 농막 컨테이너 외관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 패널 등 설치를 권장합니다. 4) 농막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농지 성토, 다락 설치, 데크, 난간, 천막, 파고라 등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며, 농막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조건부 허가	'21.04.12.
사적 아산 맹씨 행단	충남 아산시	○○○	<p><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210-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3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770㎡ - 건축면적 : 90.3㎡ - 규모(최고높이) : 1층(5.1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허가	'21.04.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충주 누암리 고분군	충북 충주시	○○○	<p><가설건축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누암리 345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컨테이너(3m×4m, 높이 2.6m) 설치 ○ 허가기간 : 2021. 4. 12. ~ 2023. 4. 11. 까지(2년) ○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컨테이너 설치는 허가일로 부터 2년 까지 임시로 허가하며, 허가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2) 컨테이너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주거 목적은 불가합니다. 3) 컨테이너 외관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무 패널 등 설치를 권장합니다. 4)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농지 성토, 다락 설치, 데크, 난간, 천막, 파고라 등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며, 컨테이너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조건부 허가	'21.04.12.
사적 강릉 굴산사지	강원도 강릉시	○○○	<p><마을소득사업 소매점 및 편의시설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평로 119(문화재구역으로부터 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368.74㎡(증 51.87㎡) - 건축면적 : 281.08㎡(증 42.81㎡) - 규모(최고높이) : 2층(8.0m/변경없음) - 구조 : 철근콘크리트+일반철골+목구조 	허가	'21.04.16.
사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완도군	○○○	<p><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주택 1동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층, 연면적 99.45㎡, 최고높이 5.34m, 경사지붕 	허가	'21.05.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장성 입암서원	전남 장성군	○○○	<p><탐방로 정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재난간 설치(16.5m) - 탐방로 돌갈기(57m/W1000) - 돌계단 설치(26m/W1500) - 돌배수로 설치(48m/W1000~2000) 	허가	'21.05.09.
사적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	<p><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완도군 장좌리 145(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 1동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 : 건축면적 42.97㎡, 목조 - 신축건축물 : 주택, 지상 1층, 건축면적 73.26㎡, 최고높이 5.045m,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허가	'21.05.09.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9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720㎡ - 도로면적 : 278㎡ / 도로길이 : 46M / 도로폭 : 6M 	허가	'21.04.13.
사적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벌채 및 운재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산 12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8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벌, 경제림조성(편백, 소나무 등),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 16.3ha - 운재로 4개소 1.2k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가까운 지역(30m 이상)은 소나무 식재 - 나머지 지역은 편백나무 이외에 혼효림 조성 - 사업은 단계적·연도별로 나누어 실시 	조건부 허가	'21.04.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군	○○○	<p><상수도 긴급하자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6-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제수변실 보수공사 - 제수변실 방수공사 시행을 위한 터파기 작업 시행(1m×1m×1m) 	허가	'21.04.15.
사적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서동연꽃축제 행사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개최용 임시시설물 설치(무대, 행사부스, 경관시설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철저 준수,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 사고예방 철저, 행사 후 주변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21.04.15.
사적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수목 식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남지 탐방로 주변 고사수목 제거 및 수목(처진개벚나무) 식재 - 90m 구간 5m 간격으로 약 18주 식재 	허가	'21.04.16.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	<p><보부상 공문제 행사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개최용 주무대, 전시관설치 등(캐노피 12개)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철저 준수,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 사고예방 철저, 행사 후 주변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21.04.15.
사적 부여 군수리 사지	충남 부여군	○○○	<p><태양광발전설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기정로 94번길 20-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로 8,035×세로 1,874×높이 2,394 - 설치용량 : 가정용 3kw / 모듈 8장 	허가	'21.04.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부여 정암리 와요지	충남 부여군	○○○	<p><사료창고 신축 및 무허가시설 양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656-3(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축사(1,900㎡)가 조성되어 있는 사업부지 내 가축용 창고를 증축 - 건축연면적 : 사료창고 신축 235㎡, 화장실 6㎡ 양성화 - 건축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높이 : 7.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하고자 하는 창고의 최고높이를 기존 시설(축사)의 차양높이 수준(6m 이하)으로 낮추어 조성 	조건부 허가	'21.04.29.
사적 부여 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	<p><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7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농막 설치 6m×3m 1동 	허가	'21.04.29.
사적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p><조사범위 확장(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51번지 등 14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면적 변경 : 5,737 -> 5,936㎡ - 변경사유 : 송산리 29호분의 정확한 위치, 규모 등 파악을 위한 조사범위 확장 	허가	'21.04.29.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	<p><행사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75번지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공주 석장리 온택트 구석기축제 - 축제기간 '21. 5. 5(수) ~ 5. 8(토) - 대형천막(20m×20m) 1식 - 운영부스 몽골텐트(5m×5m) 5개 - 야간경관조명(유등, 토피어리, LED 경관조명 등) 1식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철저 준수,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 사고예방 철저, 행사 후 주변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21.04.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	<p><곤충사육사 신축 및 영농부지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534-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4,628㎡(변동없음) - 건축면적/연면적 : 362㎡/362㎡(변동없음) - 규모 : 지상1층(1동)(변동없음) - 최고높이 : 8.2m(경사지붕)(변동없음) - 구조 : 일반철골구조(변동없음) - 절토량/성토량 : 2,274㎡/2,249㎡(추가) - 식생블럭(H=0~4m) 쌓기 184m(추가), 자연석(H=0.5~1.0m) 쌓기 35m(추가) 등 	허가	'21.04.15.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야영장시설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70-3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청면적 : 4,990㎡(변동없음) 나. 시설물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영장관리동 신축 1동(지붕형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연면적 : 199.8㎡/199.8㎡ - 최고높이 : 6.0m(당초 : 경사지붕 → 변경 : 평지붕) - 건물구조 : 철골조 2) 야영장 시설 설치(변동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트테크 설치 : 3×3m(8개소), 5×5m(3개소) - 야외취사장 2개소,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 10ton) 1개소 - 잡석포장(T=200mm) : 1,100㎡. 주차 15대 	허가	'21.04.16.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p><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87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457㎡ - 건축면적/연면적 : 1,378.4㎡/13,459.63㎡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 6층(총 1동) - 최고높이 : 24.9m(평지붕)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	'21.05.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34-20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30㎡ - 건축면적/연면적 : 48.12㎡/48.12㎡ - 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4.5m (평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옹벽(H=0.5~3.0m) 설치 : 43.8m 	허가	'21.04.20.
사적 강화 초지진	인천시 강화군	○○○	<p><토지 형질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80(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높이 : 1.0m - 성토면적 : 2,007㎡ - 신청사유 : 우량농지 조성 	허가	'21.04.22.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농막(컨테이너)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2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8㎡ - 설치동수 : 1동 - 설치규격 : 3m×6m×2.6m(H) 	허가	'21.04.22.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6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0m 이격/7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551.0㎡ - 건축면적/연면적 : 288.8㎡/288.8㎡ - 건축규모 : 지상1층(총 3동) - 최고높이 : 5.2~5.22m - 구조 :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 옹벽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 옹벽(H0~3.5m) 설치 29.8m · 석축찰쌓기(H0~4.8m) 설치 82.9m · 보강토 옹벽쌓기(H0~4.8m) 설치 153.6m - 절토량/성토량 : 3,781.0㎡/680.3㎡ 등 	허가	'21.04.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 신축(3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53 외 5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2,211㎡(진입도로 포함) - 건축면적/연면적 : 298.08㎡(3개동) /298.08㎡(3개동) - 규모/높이 : 지상1층(총3동)/5.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 용벽(H0~2.4m) 설치 : 12m - 보강토 용벽(H0~2.0m) 설치 : 223.3m 	허가	'21.04.28.
사적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p><단독주택(4동)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9번지 외 1필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변경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면적: 1,557㎡ - 건축면적/연면적 : 388.95㎡/388.95㎡ · 1동,2동,3동 면적 : 각 99.95㎡, 4동 면적 89.10㎡ - 규모 /최고높이 : 지상 1층 (4개동) /5.5m(경사지붕) - 구조 : 경량목구조 - 보강토용벽 설치(0~2.3m) : 195.7m 	허가	'21.05.04.
사적 연천 호로그루	경기도 연천군	○○○	<p><보호구역 내 시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71 외 7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굴조사 면적 : 11,280㎡ 	허가	'21.04.23.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407(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 /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630㎡ - 자연석쌓기(H=3.0m) : 18m - 보강토용벽 쌓기(H=0.8~3.5m) : 56m 	허가	'21.04.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p><토지 형질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22-70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259.0㎡ - 건축면적/연면적 : 349.14㎡/713.22㎡ - 규모 : 지상 2층(차고 : 지하 1층)/최고높이 : 9.27m(차고 3.0m) - 구조 : 일반목구조(차고: 철근콘크리트조) - 옹벽(0~3.4m) 설치 : 63.1m(153.68㎡) - 절토량/성토량 : 43.51㎡/761.87㎡ 	허가	'21.04.28.
사적 파주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	<p><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387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3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5,183㎡ - 건축면적/연면적 : 675.25㎡/675.25㎡ - 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2개동)/8.0m - 구조 : 일반철골조 - 보강토옹벽(H 0~1.0m) 설치 : 119.5m 	허가	'21.04.30.
사적 화성 당성	경기도 화성시	○○○	<p><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92-2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93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300㎡ - 건축면적/연면적 : 57.0㎡/57.0㎡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1층(1동)/5.1m(경사지붕)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허가	'21.05.04.
사적 김포 덕포진	경기도 김포시	○○○	<p><주택단지(한옥)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95-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면적 : 19,141.0㎡(도로면적 2,861㎡ 포함) - 건축면적 / 연면적 : 3,469.2㎡(총42동(1동당 82.6㎡)) /3,469.2㎡(총42동(1동당 82.6㎡)) - 건축규모 / 최고높이 : 지상1층(총42동) / 5.9m(경사지붕) - 건축구조 : 목구조 	허가	'21.05.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화성태안3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16-6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0m 이격/6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18㎡ - 건축면적/연면적 : 167.61㎡/410.4㎡ - 건물규모 : 3층(최고13.4m), RC조 	허가	'21.04.20.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화성태안3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64-1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5m 이격/6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53㎡ - 건축면적/연면적 : 119.60㎡/147.58㎡ - 건물규모 : 2층(최고9.4m), RC조 	허가	'21.04.20.
사적 구리 명빈묘	경기도 구리시	○○○	<p><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153-15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0m 이격/3구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굴착 및 케이싱 설치 - 굴착깊이: 470m 	허가	'21.04.22.
사적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	<p><남양주시청 내 어린이집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시청1청사(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3m 이격/5구역) * 3m 이상의 옹벽, 석축 발생 개별심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22,915㎡ - 최고높이 : 9.05m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층 / 1개동 	허가	'21.04.22.
사적 고양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	<p><노후 시설물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64(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건물 2동에 대한 시설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동 1동 지붕(약 286.056㎡) · 업무동 1동 벽면(약 84㎡) - 보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재질변경(아스팔트 싱글→컬러강판) · 벽면 재질변경(적벽돌→컬러강판) · 참고 : 기존 색상 유지(적갈색) 	허가	'21.04.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고양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97(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2m 이격 /4구역) * 3m 이상의 용벽, 석축 발생 개별심의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958㎡ - 건축면적/연면적 : 950.74㎡/3,383.33㎡ - 건축규모 : B1층~4층 철골조(최고 22.35m) - 용벽계획 : L36.31m, H2.5m 	허가	'21.04.30.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화랑정 도색, 수목가지 정비, 수중펌프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920번지 1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정 난간 도색, 마루 샌딩 및 오일 스테인칠(117.8㎡), 창호지 보수(16짝 /11.8㎡) - 소나무 전정(24주), 느티나무 전정(55주), 관목전정 2회(1,000㎡) - 집수정 정비 및 스프링클러 설치, 동력 분전함 및 수위조절용 송수신기 설치 	허가	'21.04.13.
사적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문화재 방재용 드론 시스템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915, 916-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드론 스테이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조립식(기성제품), 1동 - 건축용도: 드론 스테이션(가설건축물) - 대지면적: 1,597㎡ - 연면적: 8.01㎡(2.42평) - 최고높이: 2.70m - 굴착깊이: 30cm 	허가	'21.04.13.
사적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경북 경주시	○○○	<p><경주 베이스볼 파크 조명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손곡동 519-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2m 이격 /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탑(25m) 6기, LED 투광등(1KW~1.2KW) 74개 	허가	'21.04.1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보문동 사지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보문동 468-3 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8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50㎡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106.3㎡/135.94㎡ · 최고높이 : 7.32m(경사지붕)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 33m · 되메우기 : 18m · 성토고 : 0.5~2.2m, 성토량 : 853㎡ · 보강토옹벽(H=0.5~2.2m) : 73m · 수로관(벤치플룸관) : L=68m ○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높이 변경 : 7.57m(+0.25m) 	허가	'21.04.13.
사적 경주 신문왕릉	경북 경주시	○○○	<p><2021년 배반동 경관녹지 조성(4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34-2, 342-1, 342-2, 335-1, 335-2, 335-7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 성토 후 수목식재로 녹지공간 조성 - 면적 : A=6,929㎡ - 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및 지장물공 : 흙쌓기 3,408㎡, 잡목제거 693㎡ - 경관녹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공 : 마사토포장 69㎡, 야자매트 105㎡ · 식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목 산철쭉 300주, 영산홍 230주 · 기타 : 잔디(1/2줄떼) 6,234㎡, 마운딩 조성 214㎡ ※ 기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전체면적 : A = 21,100㎡ · 2018년 1차 사업(완료) : 4,400㎡ · 2019년 2차 사업(완료) : 3,106㎡ · 2020년 3차 사업(완료) : 4,342㎡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조건부 허가	'21.04.1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경주 동공과 월지	경북 경주시	○○○	<p><학교시설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71-1번지 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 : 철골구조, 평지붕 - 최고높이 : 16.0m, 증축부분높이 : 12.6m - 건축규모 : 지상3층 - 건축면적(증축) : 45.95㎡(연면적 증축 합계 437.85㎡) - 건축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시굴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1.04.14.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봉황대 뮤직스퀘어 행사 무대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무대설치(연 15회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 메인 스피커 12개 - 조명 : 레이어(4m×6m×6m) - 무대 : 약 15평(10.8m×4.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를 최우선 고려할 것 	조건부 허가	'21.04.13.
사적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p><제2회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도시원에 활성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49(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0월 중 PA system 10kw(스피커12개, 300kg) ·· '21.10월 중(10일) PA system 5kw(스피커 6개, 100kg) · 무대 : 10평 규모(8100m×5400m, 높이 900m, 400kg) ·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차량(1톤 화물트럭 2WD, 차량크기 5,175×1,740×1,970mm) 	조건부 허가	'21.04.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화면(HD급 LED 4mm 120'(단면),방수,방진) · 중계 : 카메라 1대 - 부스 · 텐트 : MQ텐트 15동(5m×5m 6동, 3m×3m 9동) 내외 · 좌석 : 플라스틱 의자 200개 설치 - 조형물 및 화분 · 설계도면 첨부 · 굴착행위 없음, 단순전시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허가조건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를 최우선 고려할 것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도 서귀포시	○○○	<p><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33-3번지선(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설치 개소 수 : 2개소 - 설치 시설물 : 차량철주 1본(267mm × 8m), 보행철주 1본(125mm × 4m) - 설치 면적 : 18.9m² - 기초콘크리트 · 차량철주 기초(깊이 1,900mm, 가로 1,200mm, 세로 1,200mm) · 보행철주 기초(깊이 1,300mm, 가로 1,200mm, 세로 1,200mm) 	허가	'21.05.04.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제주도 서귀포시	○○○	<p><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번지 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설치 시설물 : 차량철주 1본(250mm × 높이 8m, 부착대 6m) - 설치 면적 : 5.76m² - 기초콘크리트 · 차량철주 기초(깊이 1.8m, 가로 1.8m, 세로 1.8m) 	허가	'21.05.04.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접수 10명